

ISSN 3022-7569

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24년 3월)

연구논문

최천식 덤핑방지 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 유무에 관한 연구

한낙현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무역의 통관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상필 국제법을 수용한 국내법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만 온라인 해외직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장효은·손명희 주요국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제1권 제1호·통권 제1호(2024년 3월)

Vol. 1 No.1 March 2024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목차

■ 발간사

이찬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원장

■ 연구논문

최천식	덤핑방지 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 유무에 관한 연구	1
한낙현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무역의 통관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51
한상필	국제법을 수용한 국내법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87
김상만	온라인 해외직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127
장효은·손명희	주요국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147

■ 부록

「관세무역연구」 투고 안내

Contents

■ PREFACE

Chan-Kie Lee The Chairman of KCTDI

■ ARTICLES

| **Chen-Sik Choi** |

A Study on the Disposition of Anti-Dumping Tariffs Regulations 1

| **Nak-Hyun Han** |

A Study on Improvement of Clearance System for Digital Trad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51

| **Sang-Pil Han**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Domestic Law that Accepts International Law 87

| **Sang-Man Kim** |

A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Online Overseas Direct Purchase 127

| **Hyo-Eun Jang·Myeong-Hee Son**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Duty Exemption and Customs Procedures Simplification
for the Consignments below De Minimis Thresholds 147

■ APPENDIX

Submission Guidelines

발 간 사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어느덧 2024년 새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서서히 피어오르는 꽃봉오리들을 보면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기운이 완연한 봄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새로운 계절에 즈음하여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학술지 『관세무역연구』를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관세무역연구』는 관세와 무역 분야의 다양한 실무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아우르는 연구를 발굴하여,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창간한 전문 학술지입니다.

앞으로 『관세무역연구』가 관세·무역 분야 학술 연구를 선도하고 학술 교류의 큰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창간호에는 관세·무역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들의 논문 5편을 수록하였습니다. 각각의 논문들은 관련 분야의 현안을 고찰하였으며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수한 논문을 집필하여 창간호를 빛내주신 연구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원은 1964년 창립한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축적한 연구 지식을 바탕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관세무역연구』도 관세·무역에 관한 학술 연구 분야에서 그 존재를 인정받고 빛을 발하는 학술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창간호를 시발점으로 하여 『관세무역연구』가 관세와 무역분야의 연구를 더욱 촉진하면서, 학술적 지식에 더해 실용성을 갖춘 전문지로 발전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크게 인정받는 학술지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선진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권위있는 학술지와 견주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학문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한 『관세무역연구』가 이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31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원장 이 찬 기

덤핑방지 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 유무에 관한 연구

최천식*

목 차

- | | |
|-----------------------------|----------------------|
| I. 서론 | VI. 보론 : 2심 판결 관련 |
| II.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 내용과 처분성 논의현황 | VII. 입법적 제안 : 관세법 개정 |
| III. 대상판결 소개 | VIII. 결론 |
| IV. 외국수출자의 소송적격성 문제 | 참고문헌 |
| V.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 인정 문제 | |

WTO협정이 허용하는 3대 무역구제제도로서 덤핑방지관세제도와 상계관세제도 및 세이프가드가 있다. 덤핑방지관세제도는 국내 제조업체의 덤핑피해조사신청에 따라 무역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 3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수행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외국수출자의 덤핑사실 확인 및 국내기업의 실질적 피해를 조사·판정하고, 기획재정부는 덤핑물품을 수출한 외국생산자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부여를 골자로 하는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을 제정·공포하며, 관세청은 동 규칙에 따라 덤핑수입물품에 합당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덤핑물품을 수출한 외국 생산자는 덤핑방지관세율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수입국 정부기관 중 어느 기관을 소송당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학계 및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계속 논란이 돼 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수입자)이 아닌, 외국 수출자에게도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았다.

관세법과 관세법시행령 및 관세법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 의한다면 외국 수출자는 세관장의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외국 수출자는 거래하고 있는 수입자를 소송당사자로 내세워 간접적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관장과 수입자를 소송당사자로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세관장은 무역위원회가 수행한 덤핑판정 및 그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 부여 등에 대한 업무는 전혀 관여

* 관세인재개발원 전문교수, 국제통상학 박사, E-Mail: choics000@hanmail.net

하지 않아 소송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고, 더욱이 무역위원회가 기업정보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세관장의 자료제출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자 역시 외국 수출자로부터 덤핑관련 가격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이들 자료는 대부분 영업비밀에 속하므로 동 자료 입수가 매우 힘들다. 소송은 당사자간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으로 구성되는데 주장만 난무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한계점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에 대한 '처분성 긍정설'과 '처분성 부정설'이 대립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처분성 긍정성을 지지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는 국제통상에서 내재되는 '상호주의'(principle of reciprocity) 및 WTO 반덤핑협정의 적극적 이행을 기반으로 하여 덤핑피소율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대법원 판례와 같이 외국 법원도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과 미시적으로는 수입자와 세관장을 소송당사자로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연구자가 세관에서 덤핑업무실무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두루 제시하였다.

아울러 보론을 통해 과세당국이 덤핑방지관세의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은 무역위원회의 준수법적 기관성격과 광범위한 재량 부여 등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대한 불복제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에 대한 처분성 부여 및 행정심판전치주의 예외 인정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에 대한 입법적 제안을 하였다.

| 주제어 WTO 반덤핑협정, 덤핑방지관세부과시행규칙, 처분성, 자기책임원칙, 상호주의, 입증책임

I. 서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 재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 대법원 역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행정소송법의 처분 개념을 강화상 행정행위로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그런데 일부 법규명령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을 갖는 법집행행위의 개념에 속하는지가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법원이 1996. 9. 20. ‘두밀분교폐지조례’에 대한 판결²⁾을 통해 과거 의례적 논의에 머물렀던 이른바 ‘처분적 명령’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하였는데(김중권, 2006),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이 없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 판결 이후 대법원은 2003. 10. 9. 2003무23 판결에서 특정 ‘고시’(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처분성을 연이어 인정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2005. 9. 1. 2004구합5911 판결(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정보용지와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사건)을 통해 법규명령의 전형(典刑)적인 ‘시행규칙’까지도 처분성을 인정하였다.³⁾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 학계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성 인정 추세는 대법원 2022. 12. 1. 2019두48905 판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에 대한 처분성을 불인정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갔다.⁴⁾

덤핑방지관세부과절차는 ①국내 제조업체의 덤핑조사 신청 ②무역위원회의 조사 및 최종판정 ③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부과시행규칙」⁵⁾제정·공포 ④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

1)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 ①항고소송 ②당사자소송 ③민중소송 ④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 이 중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3) 법원이 전향적으로 처분성 확대를 도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서울행정법원 2007. 12. 24. 2006구합29782, 서울고등법원 2008. 9. 5. 2008누3618

5) 정식명칭은 「(특정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이다.

과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수출입당사자인 외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는 이러한 부과절차 또는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권리구제수단으로 수입국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방법과 수출국 정부를 앞세워 WTO DSB(Dispute Settlement Body)에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 수출자가 수입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외국 수출자는 수입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격성), 둘째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공포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다.(처분성)

첫째 당사자의 적격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9. 1. 30. WTO 반덤핑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私人(외국 수출자)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⁶⁾ 그 당시 대법원은 처분성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원고적격만 부정하였다.

둘째,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2. 12. 1. 2019두48905 판결 이전의 하급심 판결 대부분은 기획재정부의 부과규칙이 처분적 법규명령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거나 처분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해왔다. 반면, 그 외의 행정부의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법원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의료법시행규칙이나 내신성적 산정에 관한 시행규칙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⁷⁾

이와 같이 행정부가 발동하는 각종 시행규칙의 처분성을 두고 딱히 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으나 2022. 12. 1. 대법원은 2019두48905 판결을 통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재정부령의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에 대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함으로써 행정부의 대부분의 시행규칙에 대해 처분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⁸⁾ 반면 하급심인 1심과 2심은 동 부과규칙이 처분성 법규명령으로 보아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동 부과규칙에 실제적 법령위반이 있다고 보아 2019. 7. 3. 원고인 일본 수출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⁹⁾

6) 대법원 2009. 1. 30. 2008두17936

7) 대법원 1994. 9. 10. 94두33, 2007. 4. 12. 2005두15168 등

8)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그런데 WTO DSB 결정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WTO는 2019. 9. 30. WTO DSB 정례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DS504)에 대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던 것이다.¹⁰⁾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쟁점 대부분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패널은 일본이 제기한 13개의 청구를 15개의 쟁점으로 정리하였고, 결과적 청구에 관한 2개의 쟁점을 제외한 13개의 쟁점 중 7개를 각하하고 3개를 기각하였다. 패널이 인용한 3개의 쟁점도 2개는 절차에 관한 것이었고, 실체적 쟁점은 1개에 불과하였다. WTO 상소기구 또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패널의 결론을 유지·지지하였다.

하급심과 WTO 결정이 상이하게 나온 상황에서 대법원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 간 하급심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덤핑관세부과규칙에 대해 처분적 법규명령으로 보아 각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해 오던 관행을 폐기하고, 동 규칙에 처분성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 이후 무려 2년이 지난 2022. 12. 1. 각하 판결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른바 ‘처분적 법규명령’은 형식적으로 법규명령이나 실질적으로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행정행위에 해당되어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성격을 가졌다. 이에 따라 처분적 법규명령이 규범통제의 대상¹¹⁾이 되어야 한다는 ‘처분성 부정설’과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처분성 긍정설’이 대립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우선 ‘처분성 부정설’을 지지하는 연구논문로서 김중권의 “이른바 처분적 시행규칙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2006), 정하중의 “집행적 법규명령과 처분적 법규명령의 개념”(2006), 박설아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시행규칙의 처분성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2023) 등이 있다. 반면 ‘처분성 긍정설’을 지지하는 연구논문으로 권순일의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의 처분성 재론”(2007), 김영심의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소고”(2023), 정세정의 “우리 법원에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연구”(2023) 등이 있다.

9) 다른 덤핑방지관세부과사건의 법원 판결에서는 본안 심리는 하였지만 행정부의 결정 존중과 국내산업의 전반적인 피해의 우선 고려 등을 전제로 하여 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0) 한국과 일본 간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한 반덤핑 분쟁은 일본이 이를 WTO에 제소한지 3년 6개월 만에 최종 확정되었다.
 11) ‘처분성 부정설’은 법규명령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논문들은 주로 강학상 법원리 내지 관세법과 WTO 반덤핑협정 및 행정소송법 등의 法源에 대한 규정취지 해석 및 외국 법원사례 등에서 주장하는 설에 대한 논거를 찾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들은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점과 국제통상규범에 내재되어 있는 원칙과 부조화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입법적 제안에 대해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정·공포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의 대법원 판결(대상판결)을 계기로 하여 II절에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의 내용과 처분성 논의현황을 살펴보고 III절에서 대상판결 및 하급심의 판결취지를 알아보고 IV절과 V절은 각각 외국 수출자의 소송적격성 문제와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 인정 문제를 실무적 차원 및 국제통상 흐름에서 정립하고 VI절은 보론으로 2심판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VII절은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로 하여 관세법 개정이라는 입법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 내용과 처분성 논의현황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및 절차

전 세계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FTA체제로 관세장벽이 없어지고 국제교역량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불공정한 국제교역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국내산업이 공정한 무역환경 속에서 다른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무역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인 덤핑방지관세제도와 상계관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WTO협정에서도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제도 및 상계관세제도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교통량이 증가하면 교통사고도 같이 증가하듯이 FTA체결로 교역규모가 증가하면 무역의 지뢰밭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무역구제제도는 외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 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입된 물품 또는 급격한 수입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추가관세부과제도를 말한다.¹²⁾ 또한 반드시 불공정무역행위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외국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급증으로 국내경쟁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고사 위기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세이프가드제도도 이러한 무역구제제도의 하나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상계관세, 보복관세 등과 함께 대표적인 탄력관세에 속한다. 탄력관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국내산업 보호, 물가수급조정, 국제수지 개선 등 긴급한 경제상황의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는 관세를 말한다(김기인 외 1명, 2015).

‘덤핑(dumping)’은 수출자가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인 ‘정상가격(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 덤핑을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다. ①수입국시장에서 경쟁기업을 무너뜨려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약탈적 덤핑(predatory dumping)이 있고 ②새로운 시장접근을 위해 수출 초기에 시장개척 차원에서 행하는 시장확장적 덤핑(market expansion dumping)이 있으며 ③재고 처분(inventory disposal) 목적의 덤핑이 있다(정재호, 2014). WTO반덤핑협정은 덤핑을 통해 수입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경쟁업체를 제거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방지하는 첫 번째와 관련되어 있지만 수입국은 덤핑 원인에 대해서는 따지고 않고 협정을 적용한다.¹⁴⁾

반덤핑조사는 외국기업이 물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국 시장에서 수출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과 관련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이다. 반덤핑조사는 수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조사가 아니라 수출국의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다. 특정기업의 덤핑행위

12) 1904년 캐나다에서 미국산 철도레일 수입급증을 막고 자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덤핑 방지관세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1963년 부당염가판매방지관세제도를 기원으로 1986년에 처음 입법되었다.

13) 덤핑은 원가 이하의 판매를 의미하는 경제학상 부당 염매와는 다른 개념이다.

14) 덤핑방지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덤핑물품의 국내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가능하게 하지만 반면 동 물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후방연관산업에 악영향을 가져와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가 문제가 되어 일단 조사가 되면 수출국에서 동종물품을 생산하여 수입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기업이 조사대상이 된다. 덤핑행위는 국제무역의 정당한 흐름을 왜곡하는 불공정무역이기 때문에 덤핑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교역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것이 반덤핑조사의 목적이다.¹⁵⁾

덤핑방지관세에 대해서는 WTO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이 적용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존재 및 실질적 산업피해 등을 조사·판정하고¹⁶⁾ 기획재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내용을 결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인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을 제정·시행하며, 관세청은 수입되는 덤핑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징수한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①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사실 즉 덤핑이 있을 것 ②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을 것 ③덤핑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한다.¹⁷⁾

①과 관련하여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것을 '덤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의미한다. 즉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의 시장가격보다 낮을 때 존재하는 것이다.

②와 관련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덤핑물품의 수입물품 영향(물량효과), 둘째 덤핑수입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가격효과) 셋째, 국내산업에 미치는 결과적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③과 관련하여 덤핑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WTO 반덤핑협정¹⁸⁾ 제3.5조는 인과관계의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각국의 실무관행은 덤핑수입이 피해의 중요하거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하나의 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증명된다고 보고 있다(안민호 외1명, 2011).

15)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상계관세제도와 달리 국가의 개입이 없고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대부분 생산자 이익보다 소비자의 이익이 훨씬 크며 수출자는 판매지역에 따른 가격탄력성이나 차별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상관행에서도 재고처리를 위한 염가판매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연 덤핑이 비난받아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

16) 반덤핑조사는 크게 덤핑마진조사(해외현지실사)와 산업피해조사(국내현지실사)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덤핑마진조사는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산업피해조사는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7) 관세법 제51조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로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8) 정식명은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다.

수입국 정부가 결정한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의 절차적·실체적 적법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외국 수출자는 우선 자국 정부를 앞세워 수입국 정부를 상대로 하여 WTO DSB에 제기할 수 있다.¹⁹⁾ 제소국은 자국기업의 수출피해와 경제상황 및 피제소국과 정치적, 외교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덤핑은 원칙적으로 기업 간에 발생하는 私人的 문제²⁰⁾이므로 WTO가 직접 기업규제를 할 수 없다. 다만 기업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만을 쟁점으로 다룬다. 그리고 WTO은 각국별로 입장이나 각 분쟁의 고유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반덤핑규정에 대한 문언 중심으로 법안이나 규정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법규명령과 처분성의 관계

덤핑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공포하는 법규명령이다.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범을 말하며²¹⁾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한 직접적·구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인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법규명령과 행정행위는 모두 전통적인 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 행정권에 의해 발하여지는 대외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정하중, 2006).

그러나 법규명령은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인 반면, 행정행위는 개별적·구체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²²⁾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그의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행위를 매개로 함이 보통이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19) 원래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자 또는 덤핑물품을 수입한 수입자가 제기하여야 하나, WTO는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소송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
 20) 덤핑방지관세는 사인과 사인간의 갈등에서 출발하여 정부가 개입되지만 상계관세는 처음부터 수출국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 갈등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양자간 차이가 있다.
 21) ‘법규명령’이라는 용어는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음에도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고 행정규칙에는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다.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적 법규명령’이라고 한다.
 22) ‘일반적’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개별적이란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규율의 수범자에 관련된 인적(人的) 징표이다. ‘추상적’이란 불특정한 사안을 의미하는 반면 ‘구체적’이란 특정한 사안을 의미하므로 이들은 규율의 대상, 즉 사안(事案)에 관련된 징표이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²³⁾

그런데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발전함에 따라 법규명령이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정형적 형태인 법률뿐만 아니라 처분적·집행적 법률과 같은 비정형적 형태의 법률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정형적 형태의 법률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형적 형태의 법률은 ①처분적 법규명령과 ②집행적 법규명령이 있다.²⁴⁾

①처분적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상황에 기인하여 제정되고 목적과 수단과의 일정한 관계로 특징되는 규율”을 의미하며, 개별인적(個別的) 또는 개별사건적(個別事件的) 규율이 해당된다. 처분적 법규명령은 형식상 법규명령이지만 실질적으로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처분적 법규명령은 원래 처분으로 발급되어야 하나, 입법자의 착오에 의하여 법규명령 형식으로 발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집행적 법규명령은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한다(정하중, 2006). 집행적 법규명령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법규명령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규범통제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법규’란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의미하는데 다수설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일방적으로 변동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파악하고 있다(서원우, 1986). 이에 따라 법규 개념은 법규의 효력적 요소와 그 효력의 발현 양태(樣態)적 요소로 구성할 수 있다(정연부, 2019).

효력적 요소와 관련하여 법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일방적으로 변동시킨다는 관점에서 ‘구속력’을 인접 개념으로 도출할 수 있다. ‘행정입법’이란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법조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이러한 작용의 결과로 정립된 규범을 말

23) 대법원 1987. 3. 24. 86누656 등

24) 대법원 1992. 3. 10. 91누12639, 1991. 8. 27. 91누1738 등

한다(김남철, 2018). 법규는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며 그 구속력의 발현 양태는 일반적·추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효력의 발현 양태적 요소와 관련하여 법규는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처분성’을 인접 개념으로 도출할 수 있다. 법규의 효력 발현 양태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이나,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일 수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법규성의 발현 양태가 개별적·구체적인 행정작용이라면 그 행정작용이 직접 국민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게 되고 이에 대해 해당 행정작용을 직접 대상으로 삼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²⁵⁾

반면, 법규성의 발현 양태가 일반적·추상적일 경우 개별적·구체적 행정작용을 매개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게 되고 이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행정작용의 위법성 여부를 다루는 소송에서 일반적·추상적 행정작용(행정입법)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²⁶⁾ 이와 같이 법규성의 발현 양태가 일반적·추상적인지 아니면 개별적·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 처분성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3. 법규명령 처분성을 확장하는 추세

처분에 대한 판례의 기본 입장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 이해하여 학문적 행정행위개념에 충실하였으나²⁷⁾ 점차 행정행위 개념을 상대화하여 처분성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이광운,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 효과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²⁸⁾

그 외에도 대법원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2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26)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27) 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누44 판결 ;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

2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1991. 8. 13. 선고 90누9414 판결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²⁹⁾

이러한 판례태도는 원칙적으로는 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는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직접성’이 인정되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광윤, 2011).

대법원은 처분적 법규명령에 해당된다고 본 대표적 사례로 가평군 소재 두밀분교의 폐교 조례 사건이 있다. 본 사건은 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두밀분교는 폐교되고 두밀분교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은 상색초등학교에 편입된 사건이다.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의회에 “상색초등학교 두밀분교장”란을 삭제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 경기도의회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자 경기도 교육감은 조례안을 공포하였다. 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소송법 상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³⁰⁾

29)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883 ;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등 다수

3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III. 대상판결 소개

1. 사실관계

국내 공기압 밸브 생산자인 A사와 B사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3. 12. 23. 무역위원회에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³¹⁾. 무역위원회는 약 1년에 걸쳐 반덤핑조사를 한 결과, 2015. 1. 21. 일본 업체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11.66% ~ 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2015. 8. 19.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과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³²⁾ 일본 수출자(원고)는 기획재정부의 부과규칙이 관세법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8.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본정부도 한국정부의 결정에 반발하여 2016. 3. 15. WTO DSB에 제소하였다.

2. 우리나라 법원 판결과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결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동 부과규칙이 처분성 법규명령으로 보아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동 시행규칙에 실제적 법령위반이 있다고 보아 2019. 7. 3. 원고인 일본 수출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쟁점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충족 여부였는데 피고(기획재정부)는 본 사건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되는지의 소송제기요건을 쟁점화 하지 않았다.

행정소송은 당사자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들이 변론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나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은 본안을 판단하기 앞서 이 사건 부과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31) 반덤핑조사 당시 공기압밸브 국내시장 규모는 '13년 기준 약 647억원으로 이 중 국내생산품은 148억원(23%), 이 중 덤핑물품은 472억원(73%)이었다.

32) 규칙 제2조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3조와 제4조 및 별표2는 원고 및 원고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를 공급자의 하나로 정하여 그가 공급하는 부과대상물품에 대해 11.6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 12. 1. 대법원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대상으로 하는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기획재정부령)에 대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결하였다.

그러나 WTO는 우리나라 대법원 각하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9. 9. 30. DSB 정례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분쟁(DS504)에 대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쟁점 대부분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³³⁾ 패널은 일본이 제기한 13개의 청구를 15개의 쟁점으로 정리하였고, 결과적 청구에 관한 2개의 쟁점을 제외한 13개의 쟁점 중 7개를 각하하고 3개를 기각하였다. 패널이 인용한 3개의 쟁점도 2개는 절차에 관한 것이었고, 실체적 쟁점은 1개에 불과하였다. WTO 상소기구 또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패널의 결론을 유지·지지하였다. 이에 한국은 덤핑방지관세를 유지하면서 가격효과 분석을 보완하는 등 WTO 판정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고 일본이 이행분쟁을 회부하지 않아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3. 서울행정법원(2017. 9. 1. 2015구합76360) 판결요지³⁴⁾

이 사건 처분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먼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WTO반덤핑협정 제13조는 반덤핑조치 및 그에 관한 최종판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가 당해 판정 또는 검토를 담당할 당국과 독립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피고는 국내 신청인 조사 및 판단 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요내용의 상당부분을 생략하였고 그 밖에 다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³⁵⁾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게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³⁶⁾

33) 한국과 일본 간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한 반덤핑 분쟁은 일본이 이를 WTO에 제소한지 3년 6개월 만에 최종 확정되었다.

34) 심급별 판결요지만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35) 법원은 정부에게 비공개본 등의 문서제출을 명했고 정부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WTO반덤핑협정 제6.5조 등을 근거로 하여 일체의 비공개본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36) 서울행정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전제로 하여 가격, 수량, 점유율 등 모든 수치가 생략되고 전년 대비 증감률만이 기재된 조사보고서 공개본 등 정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4. 서울고등법원(2019. 7. 3. 2017누73251) 판결요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시행규칙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³⁷⁾

①이 사건물품의 물량 증가는 덤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재고정책 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물량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②이 사건물품의 수입가격이 하락한 것은 환율변동에 기인한 것이므로 덤핑으로 인한 가격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③반덤핑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2개 동종업체는 피해조사기간 동안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보였으나, 국내산업으로 간주된 신청인들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④덤핑 외의 다른 요인(가격 이외의 요소에 따른 경쟁, 국내소비 증가, 재고정책 변경, 환율변동)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덤핑과 국내산업의 피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³⁸⁾

5. 대법원(2022. 12. 1. 2019두48905) 판결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³⁹⁾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37) 박설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시행규칙의 처분성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논문에서 2심 판결요지를 잘 정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38) 서울고등법원도 서울행정법원과 같이 동일한 결론을 내렸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덤핑과 국내산업의 피해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실제 판단까지 나아간 점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차이가 있다.

39)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판결 등 참조

①이 사건 시행규칙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한 조세법령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시행규칙에서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이 사건 시행규칙은 수입된 덤핑물품에 관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③이 사건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세부과처분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원고와 같이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외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이 그 효력 범위 밖에 있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2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IV. 외국 수출자의 소송적격성 문제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라는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격은 행정소송법 제1조를 통해 ‘국민’임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논란될 수 있다. 문언상 국민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WTO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WTO DSB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인(私人)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반덤핑부과처분이 WTO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⁴⁰⁾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해결방법(화해, 중재, 소송 등)과 법원 선택 그리고 준거법 등 외국적 요소로 인해 복잡한 절차가 발생한다. 일방 당사자의 자국법 적용을 고집할 경우 상대방의 수용성이 떨어지므로 거래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국제법의 법리 및 국제기구가 지향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WTO의 3가지 기본원칙으로 ①최혜국대우원칙 ②내국민대우원칙 ③수량제한폐지원칙이 있다.

①최혜국대우원칙은 WTO회원국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할 때 상대국의 부의 정도나 힘의 강약에 상관없이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공급되는 동일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내국민대우원칙은 수입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규제와 관련하여 국내 동종제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⁴¹⁾ 최혜국대우원칙이 국경통관에서 의무차별대우에 대한 요구라면, 내국민대우원칙은 국내거래에서 의무차별대우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③수량제한폐지원칙은 무역에 있어서는 관세이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수량제한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관세부과 또는 수입수량을 제한함으로써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WTO의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 및 FTA에 숨겨진 대원칙은 ‘비차별’(non-discrimination)과 ‘상호주의’(Principle of Reciprocity)다. 예컨대 어느 한 나라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상대국가에서도 그 나라에게 이와 유사

4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41) 내국민대우원칙은 GATT 제3조, GATS 제17조, TRIP 제3조 등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한다는 WTO의 대관행이다. WTO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FTA 역시 자국의 이해중심으로 한 상호주의원칙에 철저히 따른다.

이러한 국제통상법에 내재된 기본원칙을 고려해 볼 때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조항을 단지 국내법 시각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국제통상법 시각으로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 이때의 분쟁준거법으로 수입국의 내국법 중심으로 해석할 경우 상대국가의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및 국제통상규범을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무역분쟁이 가장 많은 덤핑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국가간의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소송당사자 적격을 외국인까지 확대⁴²⁾함으로써 외국물품과 국내물품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수입국 정부를 상대로 수입국 법원에 행정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사자 적격성을 개방해야 한다.

WTO 통계에 의하면, 1995 ~ 2022년 기간 동안 한국이 타국을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제도와 관련하여 총 167건을 제소하여 12위를 차지한 반면, 타국으로부터 피소당한 건수는 487건으로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개방·확대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수입국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수입국 소송을 통해 입는 혜택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WTO회원국 중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함으로써 상대방 국가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⁴³⁾

이 외에도 국제법인 WTO반덤핑협정 제13조에는 “각 회원국은 특히 최종판정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의 신속한 검토 및 판정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절차를 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정에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대상은 최종판정으로 ‘최종판정’ 개념은 수입물품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어야만 비로소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덤핑물품이 수입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규칙까지 내포하고 있는

42) 한 국가가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하여 간섭(intervention)하면 안 된다는 국제관습법상 ‘주권평등원칙’도 있지만 덤핑문제는 외국과 무역거래라는 외국적 요소가 있고 심지어 무역분쟁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국내문제’라고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3)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도 그 회원국에 상호주의 혜택을 배제하면 될 것이다.

점 그리고 최종판정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수입국 정부와 외국 수출자이며 단지 수입자는 수입 후에 따른 잠재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외국의 수출자는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 만일 외국의 수출자에게 소송당사자의 적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동 협정 제13조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의 경우 상무부(DOC)에서 덤핑조사와 덤핑 판정 및 덤핑방지관세율을 확정하고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덤핑물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해 예비 및 최종 판정을 담당하며,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덤핑수출자는 이러한 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얼마든지 제소를 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2013. 1. 23. 미국 상무부는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으로 수출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한국 회사는 판정에 불복하여 미국 정부를 당사자로 하여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한 적이 있다. 이에 국제무역법원은 상무부가 관세법 등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였고 또한 반덤핑법은 미국 상무부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가격책정에 대한 주관적인 사유까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월 한국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본안심사에서 비록 한국회사가 패소하였지만 국제무역법원은 한국회사를 소송당사자 지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EU의 경우 유럽연합운영조약 제207조에 따라 제3국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포함한 공동 통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덤핑 피해조사와 산정에 대한 판단은 EU기관인 각료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며 회원국은 EU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제정한 시행규칙(regulation) 형태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데 이에 불복하는 자는 유럽연합운영조약 제263조에 따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준거법이 WTO반덤핑협정이고 동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만일 원고가 분쟁해결 준거법을 관세법으로 하였다면 외국 수출자를 당사자 지위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WTO반덤핑협정 제18.4조에서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 또는 특별한 성격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도 WTO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규정과 WTO반덤핑협정 규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⁴⁴⁾ 관세법이 WTO반덤핑협정의 규정을 미처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WTO반덤핑협정은 그러한 법적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협정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원고가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준거법으로 WTO반덤핑협정을 선택한다면 원고의 적격이 될 수 없고 만일 관세법을 선택하였다면 원고의 적격을 부여한다면 이를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은 관세법상의 처분이기도 하지만 WTO반덤핑협정 규정에 따른 처분이기도 하다. 즉 부과규칙의 준거법은 관세법과 WTO반덤핑협정이요 부과요건이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만일 동 부과규칙이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WTO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면 취소 내지 무효사유가 된다.⁴⁵⁾ 외국 수출자의 입장에서서는 오히려 수입국의 자국법보다는 회원국에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다. 수입국이 WTO반덤핑협정을 일부 왜곡하여 자국에 유리하게 국내법으로 수용하거나 자국의 자의적인 관행을 제도화시켜 사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으나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려면 회원국 자격으로 수출국 정부가 해야 하므로 수출자가 직접 제소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어야 했다. 이 때 수출국 정부는 자국기업의 수출피해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경제상황 및 피제소국과 정치적, 외교적 사항 등 다양한 변수를 기업 입장이 아닌 국가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므로 덤핑수출자의 주장을 100% 반영하여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수출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수입국 정부를 피고로 하여 수입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44) 우리나라도 1994. 12. 16.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4년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수락하고 1994. 12. 31. 위 협정을 공포함으로써 WTO 회원국으로서 WTO반덤핑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45) 이러한 문제는 협정과 관세법 규정이 동일하므로 발생할 수 없다. 만일 관세법과 협정이 상충되더라도 반덤핑관세 적용분야에 관해서는 협정이 특별법적 지위에 있어 협정이 우선 적용된다.

대법원이 소송의 적격성을 굳이 따져 각하하려고 했다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했어야 했다. 관세법에 의한 처분은 관세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원 등의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사건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 법원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위배를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 참고로 WTO반덤핑협정 제13조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독립된 기관으로 법원, 중재, 행정재판소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서 오로지 사법부 소송만 분쟁해결수단으로 고집하지 않고 있다.

V.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 인정 문제

1.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과 관련된 판례

1) 2005년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 판결

사법부에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재정경제부령 제330호, 2003. 11. 7.) 사건이 최초이다. 이 사건에서 인도네시아 수출자는 한국 무역위원회의 단일 덤핑률 산정, 이용가능한 자료 사용 등의 위법을 다투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하급심은 동 시행규칙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⁴⁶⁾

재판 당시 피고 기획재정부는 시행규칙은 일반적·추상적 법령으로 규칙 시행만으로 수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규칙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보다 관세부과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 근원적인 수단이므로 항고소송은 분쟁해결을 위한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가 물품의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물품에 대해 부과되므로 ‘구체성’이 인정되고, 이는 대상물품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점, 관세법에서 조사대상 공급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잠정조치를 취하거나 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 등 공급자에게 협상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항고소송을 허용함으로써 조사대상물품 수입자가 개별적으로 관세부과취소소송을 제기

46) 서울행정법원 2005. 9. 1. 2004구합5911 판결.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6. 7. 14. 2005누21950 판결로 확정되었다.

하는 것과 비교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장점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⁴⁷⁾

2) 2008년 중국산 도자기질 판결

백상지 사건 이후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재정경제부령 제 509호, 2005. 12. 30.)이 문제된 사건에서 중국산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위원회의 국내산 업피해율 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하급심은 백상지 판결과 동일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도자기질 타일 사건에서는 원고적격을 둘러싼 쟁점이 있었다.

1심 법원은 외국수출자는 덤핑물품 공급자로서 관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에 의해 덤핑물품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독점수입상에 대해서는 외국 수출자와 계약에 따라 독점적인 수입 판매권을 가진 자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자로 볼 수 없고 덤핑방지관세 납부 또한 덤핑물품을 수입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이 적용됨으로 인한 것이지 시행규칙 자체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 적격을 부정하였다.⁴⁸⁾

반면, 2심 법원은 독점 수입상에 대해 시행규칙 제정 이전부터 대상물품을 수입하고 있었다면 시행규칙으로 인해 수입 시 추가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면서 비록 수입행위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시행규칙 이후의 신규 수입자와 달리 기존의 법률관계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판결하였다.⁴⁹⁾

하지만 대법원은 “WTO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인(私人)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⁵⁰⁾ 대법

47) 인도네시아가 WTO DSB에 제소한 결과, DSB는 인도네시아가 대부분 한국의 반덤핑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구체적인 조사절차와 관련한 쟁점에서는 한국이 패소하였다.

48) 서울행정법원 2007. 12. 24. 2006구합29782

49) 서울고등법원 2008. 9. 5. 2008누3618

원은 처분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면서 원고적격만 부정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¹⁾

2. 외국정부의 덤핑분쟁 해결사례

미국과 EU 등 주요선진국의 법원은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행한 덤핑방지관세조치에 대해 ‘각하’ 처리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한다. 미국 사례를 보면, 현대제철은 2016. 7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자 같은 해 10월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한 사례가 있다. 국제무역법원은 2018. 6. 28.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한 덤핑방지관세율(34.3%)을 재산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상무부의 판단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EU의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는 EU집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집행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외국 수출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자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사례를 보면 EU집행위원회는 1999년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고 2000년 7월 잠정관세를 부과한 후 같은 해 12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2003년 12월 중간 재심을 개시해 2005년 3월 확정관세율을 일부 수정한 후 반덤핑조치 자체는 계속 부과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내 수출업체 휴비스가 2005년 6월 덤핑방지관세율에 대해 이의가 있어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유럽사법재판소는 EU집행위원회의 재심과정에서 반덤핑마진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위법결정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여 정상가격을 새로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율을 하향조정하였다.⁵²⁾ 최근에도 EU집행위원회가 한국타이어애펜테크놀로지 중국공장이 EU로 수출한 타이어에 대해 결정한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 두고 유럽사법재판소는 2020. 5월 중국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를 부담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 폐기하고 판결한 바 있다.⁵³⁾

5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51) 정인섭,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박영사, 2018. 250면 ; WTO반덤핑협정에 따른 외국 사인(私人)의 제소권을 부인하였지만 처분성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평석하였다.

52) EBN 산업경제신문, “EU,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반덤핑 관세 낮춰”, 2009. 6. 2. 보도

53) THE GURU, “한국 타이어 중공장 유럽 관세부담 해결...유럽사법재판소 관세취소 판결”, 2020. 5. 9.자 보도

3.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에 관한 견해

1) 처분성 긍정설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은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덤핑수출자에게 의견청취기회 부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상 잠정조치 대상 또는 가격수정제의 등 협상 상대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덤핑방지관세는 덤핑물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구체성과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아가 WTO반덤핑협정 제13조는 회원국에 반덤핑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상 사법심사 대상은 관세법 제51조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 견해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로서는 권순일의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의 처분성 재론”, 김영심의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소고”, 정세정의 “우리 법원에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2) 처분성 부정설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은 일반적·추상적 법령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부과규칙에 따라 수입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기다려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은 덤핑방지관세의 과세 대상과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국내 수입자의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등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WTO반덤핑협정 제13조는 최종판정(반덤핑조치) 등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둘 것만을 요구할 뿐이고 그 이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선결문제로서 시행규칙의 위법성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WTO반덤핑협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심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동 견해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로서는 김중권의 “이른바 처분적 시행규칙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⁵⁴⁾ 정하중의 “집행적 법규명령과 처분적 법규명령의 개념”, 박설아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시행규칙의 처분성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등이 있다.

4. 처분성 부정설에 대한 반론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공포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은 처분적 법규명령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처분성 부정설이 가지고 있는 제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통해 처분성 긍정설이 법적·논리적 우위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대하여

처분성 부정설에 의하면,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과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물건, 세율과 같은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만으로 관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종국적으로 세관장의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라는 매개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덤핑방지관세와 일반적 관세와는 다른 독특한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 취하기 前과 後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물품과 공급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잠정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관세법 제54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덤핑확인이 확실한 경우 외국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해결 약속(즉시 수출가격 수정하거나 6개월 내 덤핑수출 중지할 것) 제의를 할 수 있다. 만일 약속제이가 수락되면 향후 수입될 물품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54) 김중권 교수는 소고(법률신문 2006. 7. 27.자)를 통해 덤핑방지관세부과시행규칙에 대한 처분성 인정으로 인해 현행의 공법질서 특히 규범체계로서 심각한 난맥상에 처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결론적으로 “법집행행위를 무색케 만드는 과도한 처분성인정은 규범통제의 항고소송화는 물론 행정법도그마틱의 논술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법원이 입법법원으로 오해되어선 아니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관계는 외국 수출자에게 담보제공이나 약속제의 등에서 협상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속제의는 수입국의 수입자는 개입 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FTA특혜관세를 포함하여 일반관세는 그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외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담보제공을 명하거나 약속제의 등을 전혀 협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덤핑방지관세와 일반관세는 차이가 있다. 덤핑방지관세효력은 전적으로 수입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통한 법집행행위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점에서 '직접성'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 취한 후를 살펴보면, 시행규칙에는 외국 수출자별로 각기 다른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관세는 원칙적으로 대물세이므로 외국 수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FTA특혜세율 조차도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 여부에 따라 그 세율이 결정될 뿐이며 수출자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반면,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외국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이 구체적으로 특정화되어 있다.

처분적 법규명령의 대표적 사례인 가평군 두밀분교폐교사건과 공기압 밸브의 덤핑방지관세부과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처분적 법규명령 대법원 판례 비교

구분	가평군 두밀분교 폐교사건	공기압 밸브 덤핑방지관세 부과사건
형식	조례(법규명령)	기획재정부령(법규명령)
내용	두밀분교장 삭제(특정)	특정 수출자별 차별적 관세율 부여
절차	교육감 → 도의회 → 분교장	무역위원회 → 기획재정부 → 세관장
당사자	행정청	세관장
기본권 ⁵⁵⁾	학생의 권익 침해	수출자의 권익 침해

법규명령이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반면, 행정행위는 개별적·구체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법규명령이 처분적 법규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법규명령이 담고 있는 실질적 내용이다. '일반적'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개별적'이란 특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추상적'이란 불특정한 사안(事案)을 의미하고 '구체적'이란 특정한 사안을 의미한다.

55) 헌법재판소 89헌마178, 1990. 10. 15.) :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두밀분교 폐교사건에 대해 일반적 또는 개별적 규율면에서 보면 전국에 소재하는 폐교 중 두밀분교라는 1개의 학교인 점에서 개별적이다. 공기압 밸브 덤프방지관세부과사건에서도 덤프물품을 수출한 특정의 외국 생산자인 점에서 이 역시 개별적이다. 참고로 일반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며 외국 수출자를 가려서 부과하지 않는다. FTA세율도 원산지에 따른 생산국만 차별할 뿐 그 생산국내 생산자에 대해 특정하여 특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체적 또는 추상적 측면에서 두 사건을 보면, 두밀분교 폐교사건은 동 개정조례를 통해 ‘폐교’라는 구체적 처분을 해야 하는 예정된 것으로 이는 폐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지 선언적 조항이 아닌 것이다. 그 결과 분교장의 집행적 폐교조치가 따르게 된다. 공기압 밸브 덤프방지관세부과사건도 덤프를 심할수록 고율의 덤프방지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으로 덤프정도에 비례한 구체적인 수치로 산출된 덤프방지관세율이 예정된 것이다. 그 결과 덤프물품이 수입되면 자동적으로 세관장의 덤프방지부과처분이 따를 뿐이다.

어떻게 보면 처분적 법규명령은 원래 처분으로 발급되어야 하나, 입법자의 착오로 법규명령 형식으로 발급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덤프방지관세부과규칙은 특정수출자별로 특정의 덤프방지관세율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특정 덤프사실에 대한 법집행이고 직접적·구체적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동 부과규칙은 행위형식을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행위로 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WTO반덤핑협정 제13조⁵⁶⁾는 최종판정 등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둘 것만을 요구할 뿐이고 그 이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관장의 덤프방지관세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선결문제로서 시행규칙의 위법성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WTO반덤핑협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심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한 논리에 대하여

WTO설립협정 부속서를 구성하는 21개 협정 가운데 반덤핑협정을 비롯한 11개의 협정에서 각 회원국에게 일정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WTO 회원국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대한 국내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56) 자기나라의 국내법이 반덤핑조치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각 회원국은 특히 최종판정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의 신속한 검토 및 제11조의 의미내의 판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절차를 유지한다.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WTO반덤핑협정 제13조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신설되었는데 다른 조항에 비해 논의가 적었다.

협상 과정에서 쟁점은 협정문에 사법심사를 강제할지 여부였는데 회원국의 헌법 개정 등을 고려하여 회원국에 위임하자는 EU와 독립기관에 의한 심사를 강제해야 한다는 미국이 대립했고 미국의 입장으로 독립기관에 의한 사법심사가 명시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WTO 차원에서 반덤핑협정 제13조가 심판대상이 되어 심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정세정, 2023). 다만, 반덤핑협정 제13조는 회원국에 대해 국내법과 제반절차가 반덤핑협정과 합치된 상태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당국이 취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만을 요구할 뿐 세부사항은 정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심종선, 2015).

WTO 반덤핑협정 제13조에서 규정된 검토(review)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서 ① 최종판정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의 신속한 검토(the prompt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s relating to final determination) ②제11조의 의미내의 판정 검토(the reviews of determination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이다.

①의 검토는 ‘최종판정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와 그 행정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이다.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부과시행규칙,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는 ‘관련한(relating to)’ 문구가 상당히 광범위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행정적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정세정, 2023).

즉,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부과시행규칙도 최종판정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의 대상판결과 같이 오로지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만이 사법심사 대상으로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WTO 반덤핑협정 제13조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태국과 필리핀간 담배관세분쟁사건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태국 조세법원법(Act of the Tax Court)은 관세와 관련된 행정조치는 내부 불복절차를 완료해야 비로소 조세법원의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수입자는 관세국 산하 상소위원회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조세법원에 청구할 수 있었다. 태국 관세법은 관세평가통지서가 발행되고 관세국 산하 상호

위원회가 해당결정을 검토한 이후에야 수입자가 관세 관련담보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WTO 패널은 이의신청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은 GATT 제10조제3항(b)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⁵⁷⁾ GATT 제10조제3항(b)은 관세 관련조치에 관해 적시에(timely) 그리고 효과적인(effective) 권리구제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 입장이 오로지 세관장의 부과처분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수출자는 부과처분에 대한 장기간의 구제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잠정조치에 따른 피해와 가격경쟁력 저하 등 피해를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⁵⁸⁾ 수출자는 론스타 사건⁵⁹⁾과 같이 관세부과처분과 별개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법원은 협정의 'timely'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⁶⁰⁾

②의 검토는 제11조의 의미(meaning) 즉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제11조는 덤핑방지관세와 가격약속의 존속기간 및 검토에 대한 규정이다. 이 중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s)은 제8조에 따라 당국이 수출자로부터 가격을 수정하거나 해당지역에 대한 덤핑가격으로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만족스럽고 자발적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존속기간은 그 약속이 지속되는 기간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가격약속은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가 한다는 것이며 수입국 정부는 수출자가 제대로 가격약속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국과 수출자 간에 합의된 가격약속에 관련된 분쟁을 사법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과 같이 수입자만 소송당사자 적격으로 인정한다면 가격약속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또한 가격약속 제의 내지 통제할 권한도 없는 수입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공격이나 방어를 할 수 없다.

57) Panel Report, *Thailand-Cigarettes (philippines)*, WTO Doc, WT/DS371/R (adopted on 2011.7.15.)

58) 법조계에서 오래된 격언으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말이 있는데 재판의 최종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 사이 피해자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때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 재판 승소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 없다는 의미다.

59) 론스타가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천억 원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한 사건이다.

60) 과세처분 전에 청문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취지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가격약속내용과 증거자료를 받아 세관장과 공방하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출자가 내수가격과 수출가격 및 가격약속내용에 관련된 정보는 영업비밀 내지 비공개라는 이유로 수입자의 요청에 거부할 경우 사법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입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WTO반덤핑협정은 수출자에게 이해당사자로서 반덤핑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반덤핑협정 제6.2조에는 “반덤핑 조사의 전 과정을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11조에서는 ‘이해당사자(interested parties)’를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 외국의 생산자, 수입자 또는 이러한 물품의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업자 협회 혹은 사업자 협회로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자도 수입자와 마찬가지로 절차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부여받고 있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수출자를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에 관해 사법심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⁶¹⁾

3) 수입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처분이 발생하여야만 비로소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는 논리에 대하여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세관장과 수입자의 당사자변론주의에 따른 공방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법원 또한 어떠한 판결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본다. 일단 소송당사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한 수입자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세관장이 된다.

우선 세관장의 입장이다. 반덤핑조사는 무역위원회에서 하고 덤핑방지관세율은 기획재정부가 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집행은 세관장이 한다. 세관장은 그 수입물품이 덤핑관세부과대상인지 그리고 얼마의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한다.⁶²⁾ 그리고 세관장은 무역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조사·판정한 덤핑방지관세부과시행규칙에 대한 정보는 전

61) 미국은 19 U.S. Code §1516a(1), §1677(9)에 외국 수출자를 포함한 ‘interested party’로 규정하고 있고, EU는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263에 ‘any natural or legal person’으로 규정하고 있다.

62)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품목번호는 HS 8481.20에 분류되나 무역위원회의 회의록에서는 8481.80의 기타 세번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세관장은 품목번호를 조작하여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품목분류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사업무가 세관장의 고유업무이다.

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무역위원회가 덤핑판정안 내용이 적법·타당함을 제3의 기관인 세관장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무역위원회 또는 기획재정부가 당사자로 되어야 함에도 반덤핑조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세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대상판결의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무역위원회에게 비공개본 등의 문서제출을 명했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WTO반덤핑협정 제6.5조 등을 근거로 하여 일체의 비공개본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같이 과세당국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인 무역위원회는 과세당국이 아니며 별개의 독립기관이다. 따라서 세관장이 소송당사자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1심과 같이 비공개본 자료를 위 조항을 이유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세관장에게 패소 판결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음으로 수입자의 입장이다. 세관장의 입장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 수입자는 무역거래한 외국 수출자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 얼마만큼의 덤핑을 하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정보는 외국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영업비밀에 속한다. 수입자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수출자에게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수출자는 순순히 응할 리가 없다. 그렇다고 법원이 외국 수출자에게 직접 문서제출명령을 내릴 수 없다. 더욱이 법원이 외국 수출자가 제기한 소송을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하여 본안심사를 아예 받지 못하게 하였다면 수출자는 이에 대한 불만으로 소극적 내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다. 결국 수입자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소송비용까지 책임진다면 이는 매우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법원에서도 부실한 제출자료로 인해 객관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소송당사자는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한다. 입증책임은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하나 무역위원회가 비공개사유로, 수출자는 영업비밀 사유로 자료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본안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대상판결의 1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심은 피고의 소극적인 자료제출로 인해 처분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입증책임에 따라 피고를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만일 수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수입자 역시 수출자로부터 입증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결국 입증책임에 따른 패소를 면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상대적으로 입증

자료를 많이 제출한 당사자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 단지 충분한 입증자료 없이 단지 주장책임만을 가지고 승패소를 가리게 된다면 이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외에도 특정의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1개 업체이지만 이를 수입하는 업체는 1개 업체가 될 수도 있지만 다수의 업체가 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은 다수의 업체는 각각 불복청구를 해야 하며 그리고 수입신고 건별⁶³⁾로 일일이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체는 각기 입증책임을 위해 외국 수출자에게 자료협조요청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해 동일 사안으로 수입업체별로 그리고 건별로 대량의 불복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원이 2005년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 사건에서 실시한 “조사대상물품 수입자들이 개별적으로 관세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비교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장점이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결국 처분성 부정설은 대량의 불필요한 소송절차와 이에 따른 소모적인 과도한 비용 발생을 야기한다.

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허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 정부가 WTO협정 이행여부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개인과 기업에게 행정입법을 다투려면 먼저 그 행정입법에 의한 불리한 개별처분을 받든가 아니면 행정입법을 위반하여 제재처분 또는 형사소추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박정훈, 2004).

예컨대 우리나라 반도체업체의 반도체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덤핑판정사건에서 만약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그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한 후에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라고 한다면 국내 반도체산업이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입는 손해는 매우 클 것이다(권순일, 2007).

63) 관세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B/L건별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4) 수입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이 재량 여지가 없는 집행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에 대하여

이 논리도 덤핑방지관세대상과 품목분류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된 물품은 공기압 전송용 밸브로서 품목번호는 HS 8481.20에 분류된다. 그런데 수입자가 덤핑방지관세대상물품을 HS 8481.20으로 신고하지 않고 8481.80(기타 세번) 등 다양한 품목번호로 신고하면⁶⁴⁾ 덤핑방지관세는 면제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물품을 다른 품목번호로 위장하더라도 여전히 덤핑방지관세는 부과된다.⁶⁵⁾

세관장은 수입자가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신고를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것인지를 관세심사를 통해 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즉 수입자가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물품을 HS 8481.20호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다른 품목번호로 신고한 경우 세관장은 품목번호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덤핑방지관세부과를 면제해 주지 않으며 반대로 미국 등 다른 나라 제조자가 생산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단지 품목번호가 같다는 이유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물품으로 밝혀진다면 그 물품은 어떠한 품목분류를 하든 상관없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품목번호는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이 점에서 세관장은 수입자가 품목분류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에 따른 과세재량권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집행기관으로서 수입자가 덤핑물품을 다른 품목번호로 둔갑시켜 수입신고하고 있는지의 심사업무만 충실히 수행할 뿐이다.

64) 무역위원회는 회의록을 통해 8481.80의 기타 세번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65) 본 연구자가 2013년 관세청 세원심사과에 근무할 때 무역위원회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다. 그 당시 우리 품목분류담당팀에서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가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품목번호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한 바 있다.

5) 덤핑관세부과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수입자이며 시행 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아 그 효력 범위 밖에 있는 수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논리에 대하여

약속제의를 사례로 들어 살펴본다. 수출자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54조에 따라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서로 덤핑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없이 조사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자는 덤핑방지관세부과를 면제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에 약속제의를 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덤핑물품을 수입한 다수의 수입자에게 일일이 약속제의를 하지 않는다. 수출가격 수정이나 덤핑수출 중지는 오로지 외국 수출자의 소관이다.

덤핑방지관세와 더불어 보복관세나 상계관세 부과는 고율의 관세로 인해 수출자로 하여금 앞으로 수출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또는 수출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등 수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FTA특혜세율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역전환효과, 무역굴절효과, 무역감소효과, 무역위축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효과는 직접적인 피해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여러 논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선주연 외 3명, 2014).

반덤핑조사가 빈번하게 개시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반덤핑조사의 개시 자체가 무역구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단순한 조사 개시만으로도 수출자에게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조사개시가 반덤핑조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사실상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무역위원회, 2014). 이러한 반덤핑조사와 덤핑판정 및 약속제의절차 및 효과를 보더라도 덤핑관세부과시행규칙은 수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처분성 부정설에서 주장한 “수출자의 수출물량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폄하할 것이 아니다.

덤핑부과시행규칙 시행 전에 덤핑수출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약속제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수출자로서 수입국 정부와 협상대상자이다. 수출자 본인의 협상력 또는 개선의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철폐할 수 있다. 수입자는 그러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으며 그런 권한 조차도 없다. 단지 덤핑방지관세부과시

행규칙 시행 이후 동 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수동적인 지위에 놓여 있을 뿐이다.

수입자가 덤핑방지관세부과시행규칙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에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자국에 판매한 정상가격과 수출한 가격을 알아야 하고 이들 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입자는 그러한 통제를 할 수 없다. 더욱이 수입자는 외국 수출자의 자회사라면 지배받는 종속관계에 놓여 있어 우월적인 지위에 놓인 본사를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VI. 결론 : 2심 판결 관련

1. 사법심사의 실질적 대상범위에 대하여

WTO반덤핑협정은 무역구제조치의 운용을 위한 전체적인 골격만 제시할 뿐 조사개시 등 조사절차상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이재민, 2006). 사실 관계 중심으로 사안별로 이루어지는 반덤핑조사의 특성상 각 조사단계에 있어 조사당국에 부여되는 재량권 범위는 실로 상당하다(정재호 외 1명, 2013). 협정은 덤핑과 산업피해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요인들에 의한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안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다른 요인들에 의한 영향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덤핑에 의한 피해를 인정할 것인지는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정재호 외 1명, 2013).

반덤핑협정에서 덤핑이 이루어진 사실과 함께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는지가 입증되는지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가 중요한 쟁점이다. 무역구제제도의 적용은 국제통상법 분야에서 법이론과 경제학적 논리가 긴밀하게 교차되는 영역이다. 특히 인과관계 분석은 법적 해석과 경제학적 분석간 괴리가 크게 표출되며 나아가 국제정치학 논리가 개입되면서 현재까지의 제도운용 관행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안덕근, 2009).

무역구제에 관한 인과관계 입증은 국제통상규범으로 채택한 최초 규정은 케네디라운드 반덤핑협정 제3조이다. 동 조항에서 “산업피해에 대한 덤핑수출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주요 원인(principal cause)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동경라운드에서 인과관계 부분이 대폭 수정되어 덤핑수입이 산업피해에 주요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단순히 원인요소로만 명문화하였고 그 흐름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WTO 패널 역시 *EC-Bed Linen* 사건에서 덤핑수입이 산업피해의 주요원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⁶⁶⁾

반덤핑부과조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덤핑사실은 존재하지만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없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 이외의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면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덤핑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는 수입국의 조사당국이 관련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국 조사당국은 이러한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하는데 자국의 국내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수출기업에 불리한 쪽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재량권 행사가 설사 일방 이해당사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반덤핑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여전히 협정과 합치하는 것으로 본다. 극단적으로 관련 증거와 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조사당국이라면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시된 증거와 자료로부터 그러한 결정을 내릴 합리적 근거만 있다면 행정부의 결정을 용인하여야 한다고 본다.

WTO에서는 2017. 4. 12.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보고서를 WTO회원국에 공개하였다.⁶⁷⁾ WTO패널은 주요 쟁점 13개 중 10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덤핑으로 인하여 ①수입량 증가 ②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③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다만,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 일부 절차적 사항 등 3개에서는 협정 불합치라고 판정하였다.

반면 대상판결 2심에서는 수입물량 증감폭, 시장점유율, 수출자의 재고관리정책변경, 환율변화, 국내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등 지표 상호간 상관관계 내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66) European Communities Anti-Dumping on Imports of Cotten Type Bed Linen India ;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WT/DS141/RW, 6.231 문단

67) WTO DSB DS504.(2019. 9. 30. 채택)

분석하면서 덤핑수입물량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에 미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물론 WTO가 지적한 바와 같이 2심도 가격압박 관련 일부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⁶⁸⁾ 그러나 WTO는 2심 판결과 달리 ①수입량 증가 ②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③각종 산업지표 악화 등이 발생했다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방식이 WTO협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예컨대 2심은 13년 덤핑물품 수입증가는 한국 자회사의 재고정책 변화에 따른 재고확충 목적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며 수입된 이후 실제 판매된 물량은 수입증가분 만큼 많지는 않다고 판결하였으나 WTO DSB는 반덤핑협정⁶⁹⁾ 상 수입물량 증가에 대한 검토는 수입물량의 절대적 및 상대적 증가 여부 자체만을 검토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수입목적이나 수입 후 실제 판매여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 무역위원회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덤핑판정여부를 결정짓는 분석기법 중 인과관계 분석기법은 일원적 기법과 이원적 기법이 있다. 일원적 기법은 덤핑 수입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덤핑수입이 산업피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비교분석이 해당된다.⁷⁰⁾ 반면 이원적 기법은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동 덤핑수입이 동종산업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추세분석기법⁷¹⁾이 해당된다. 2심은 이원적 분석방법인 추세분석에만 치중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다양한 인과관계 분석기법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일원적 분석기법인 COMPAS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68) WTO 패널은 무역위원회의 덤핑물품 가격효과 분석에 흠결이 있어 인과관계 판정을 훼손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일본은 무역위원회가 모델별 가격비교 시 덤핑물품의 개별 거래가격과 동종물품의 평균가격을 비교하면서 가격비교성(price comparability)을 적절히 담보하지 못하였고,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에 비하여 고가판매(overselling)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69) 협정 3.1조(a) 및 3.2조는 덤핑수입물량의 증가여부를 '수입물량'으로 판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절대적 혹은 생산이나 소비와 비교하여 상대적 덤핑수입이 증가하였는지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협정은 덤핑물품 판매가 아닌 '수입'(dumped imports)이 소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는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70) 일반적으로 덤핑수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적 상황에서의 국내산업의 상태와 덤핑수입이 존재하는 현실상황에서의 국내산업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존재를 확인하는 기법이다.

71) 추세분석기법은 덤핑수입의 수입물량, 수입가격 등 해당물품과 관련된 덤핑지표와 국내산업의 이윤, 판매량, 시장점유율 등 국내산업피해지표의 추세를 비교하여 덤핑지표와 산업피해지표의 일치여부에 따라 인과관계 존재여부를 입증하는 기법이다.

WTO DSB는 반덤핑협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조사당국의 검토(examination)는 국내 산업에 대한 덤핑 수입품의 영향과 관련된 지표들을 단순히 평가(evaluate)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통하여 그 영향을 확립(determine)할 필요는 없다는 전제⁷²⁾하에서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의 자금조달능력’ 및 ‘덤핑 마진의 크기’에 대한 검토도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외에도 WTO 패널은 *Mexico -Corn Syrup* 사건⁷³⁾에서 조사신청서가 협정 제3조에 열거된 모든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정 제5.2조 문안대로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Thailand H-Beams* 사건(DS122)에서도 반덤핑 조사관련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나 반드시 이러한 증거에 대한 분석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무역위원회와 법원 및 WTO DSB의 관점에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 덤핑사실과 국내산업의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로 분석한 반면, 무역위원회와 WTO DSB는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수입물량 연도별 추세와 국내 생산업체의 판매량 추세 등의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상당 부분 상관관계⁷⁴⁾가 있으면 이를 인정하였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처분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결과는 판단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⁷⁵⁾ 요컨대 대법원은 요건재량에 대한 사법심사는 판단 기준 또는 절차상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판단대상으로 하고 판단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설아, 2023).

72) WTO 패널보고서 para. 7.179

73) WT/DT132/R *Mexico-AntiDumping Investigation of High Fructose Corn Syrup(HFCS) from the United States.*

74) 두 가지 사실 중 한쪽에서 원인이 발생하여 다른 한쪽에 결과가 생겨난 경우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한쪽에 이끌려 다른 한쪽도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지 않은 경우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경계점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국 당국이 수입물량의 급격한 증가(원인)와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감소(결과) 사이에서 이것이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WTO반덤핑협정은 양자 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이를 인과관계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요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WTO반덤핑협정 역시 회원국 간 자국중심 및 의견대립 등으로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매우 많다. 이러한 법적 공백이나 회색지대(gray area)에서 덤핑방지관세부과요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WTO DSB의 덤핑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개입수준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백상지 반덤핑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사건이 있었다. WTO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대부분 한국의 반덤핑조치가 반덤핑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구체적인 조사절차와 관련한 쟁점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 한국을 패소케 하였다.

이 외 *Argentina -Ceramic Tiles* 사건을 보면, 이탈리아 수출업체가 가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제소국 아르헨티나당국은 합리적 설명 없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정보를 사용한 것은 반덤핑협정 제6.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동 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에도 아르헨티나당국이 즉시 통보하지 않았고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⁷⁶⁾

이와 같이 WTO DSB 역시 절차나 형식 중심으로 심사하고 덤핑판정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은 대체로 수입국 정부의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무역위원회가 WTO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한 절차나 형식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중심으로 사법심사를 하고 덤핑판정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심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만일 금번 공기압 밸브사건과 같이 법원이 덤핑판정에 대한 실질적 사법심사를 깊숙이 하여 정부를 패소케 한 상황에서 WTO DSB가 법원 판결과 다르게 수입국 정부에게 승소 판정할 경우 법원이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외면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 덤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하급심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측 정부에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대법원은 입증책임에 대한 법률요건분류설⁷⁷⁾에 입각하여 일반적으로 세급

76) WT/DS189/R Paras.6.66-67.

77) 법률요건분류설은 각 당사자는 자기에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배시키는 것이다.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⁷⁸⁾

그러나 관세덤핑방지관세는 기본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등 일반적인 관세 내지 무역구제수단의 또 다른 큰 축인 상계관세에 비해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덤핑방지관세는 당초 외국 수출자와 국내 제조업체라는 私人間の 갈등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관세는 수입자(私人)와 수입국 과세당국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상계관세도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개입이라는 문제로 수입자(私人)와 수입국 과세당국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덤핑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업체와 외국 수출자는 협상이나 중재, 분쟁제소 내지 심지어 카르텔 형성 등을 통해 私人間에 해결할 문제이다. 그러나 국내 생산업체는 그러한 절차나 방법을 통하더라도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 마지막 카드로 ‘공정무역환경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수입국 정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수입국 정부는 독립적으로 산업피해에 관한 조사와 판정을 하는 제3자적 내지 준사법적 기관으로(권순일, 2007) 외국 수출자와 국내 제조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덤핑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덤핑판정을 사용하는 대표적 기법으로 제로잉(zeroing)⁷⁹⁾,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ing Situation)⁸⁰⁾,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⁸¹⁾이 있다. 수입국 정부는 이러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외국 수출자를 압박함으로써 최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다소 외국 수출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된다.

외국 수출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간 확보한 자료 중 외국 수출자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만 가지고 덤핑판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수입국 조사당국은 덤핑판정을 위해 독자적·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나 정보를 수집할 의무도 없다. 그리고 포괄적인 조사와 구체적인 자료 확보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다. 따라서 덤핑판정에 적용된 근거자료가 부실한 상황에서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에 따라 자국의 업체에 유리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미국 상무부도 개괄적인 시장왜곡에 대한 언급만 제시하지 구체적으로 해당물품에 대해

78) 대법원 1989. 1. 24. 88누5624 ; 2002. 11. 13. 2002두6392 판결 등 다수

79) 덤핑마진 계산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0'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WTO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은 제로인 적용해야 하는 논리로 과속운전자의 예로 비유하면서 운전자가 어느 구간에서 속도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간에서의 평균해 보면 규정 속도를 지켰다고 항변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80) 특정국가의 시장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하여 덤핑판정시 해당 시장자료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81) 조사대상기업이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부정확한 자료 제출 시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판정하는 방법이다.

어떠한 가격 및 비용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이재민, 2018).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법원이 제3자적·준사법적 성격이 있는 수입국 조사당국이 외국 수출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채택하여 불공정하게 판정하였다거나 덤핑판정에 대해 객관적 자료에 입각하지 않아 입증책임이 부실하였다거나 하여 외국 수출자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은 덤핑판정에 대한 수입국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및 자국 중심의 무역이익을 보호하는 글로벌 통상흐름에 부합되지 않는다.

WTO반덤핑협정 제2.4조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 가격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정하여 공정한 비교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가격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누가 증명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증문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백상지에 대한 WTO 분쟁사례에서 논의되었다.

동 사건에서 인도네시아는 조사대상기업인 Pindo Deli와 Indah Kiat가 CMI라는 국내판매기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수판매를 하기 때문에 내수판매에는 CMI가 제공하는 판매서비스 비용이 정상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 수출은 CMI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출하므로 수출가격과 내수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 이를 차감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반덤핑협정 제2.4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WTO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2.4조에 관한 *prima facie case*⁸²⁾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실제로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한국정부의 덤핑조사 과정 및 WTO 패널 심리 중 CMI가 Pindo Deli와 Indah Kiat 물품의 인도네시아 내수판매를 위해 소요된 비용이 있었다는 점만 반복할 뿐 이로 인해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음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WTO 패널은 국내 판매에 판매회사가 개입되었다 하여 수출가격과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간주될 수 없으며 차이의 존재와 그로 인한 가격 비교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입증에 실패하였으므로 *prima facie case*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

82) "*prima facie*"는 "첫번째 모습으로, 첫 인상으로"라는 뜻으로 언뜻 보기에 증거가 확실하여 반증이 없으면 승소가 될 사건 또는 반증이 없는 한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사건을 말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나 미국 상무부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덤핑여부에 대한 판정 기관에 속하며 과세관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2017년 한국 산 OCTG⁸³⁾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1차 연례재심에서, 미국 제소기업이 한국의 수출기업의 정상가격 산정시 한국기업이 제공한 생산원가 자료 중 '특별시장상황(PMS)'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생산원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제소기업인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PMS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PMS 존재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제소기업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무역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 상무부는 제소기업과 피제소기업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등 당사자 변론주의에 따라 덤핑여부를 준사법기관의 입장에서 판정한 바 있다.⁸⁴⁾

이처럼 덤핑관세부과시행규칙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일반적인 관세부과에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론과 같이 일방적으로 덤핑판정여부를 주업무로 하는 무역위원회나 상무부까지 확대·적용된다고 선언할 것은 아니다. 관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이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 영향을 미쳐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무역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검토할 뿐이지 무역위원회가 국내수입자 또는 외국수출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무역위원회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입증책임문제는 WTO반덤핑협정에 규정한 각 조항의 취지 및 소송과정에서 외국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내 제조자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경험칙을 통해 밝혀진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도에 따라 입증책임을 외국 수출자와 국내 제조자 및 수입국 정부에게 적절하게 분배 내지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덤핑조사 개시 전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소기업이 덤핑존재 입증이 필요하고 조사 개시 후에는 피제소기업이 덤핑부존재 입증하는 방식으로 입증책임을 분배할 수도 있다.

83) 원유나 천연가스 채취 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

84) 미국 상무부는 PMS의 누적적인 영향(cumulative effect)이 있다고 하여 제소기업의 손을 들어 주었다.

VI. 입법적 제안 : 관세법 개정

1. 덤핑판정과 덤핑방지관세부과시행규칙을 ‘처분’으로 인정

WTO반덤핑협정 제13조에서는 회원국이 시행하고 있는 자국법에 최종판정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의 신속한 검토와 제11조의 의미 내의 판정을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judicial), 중재(arbitral),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tribunal)와 절차(procedure)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사법, 중재, 행정심판소와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행연구논문에서 “덤핑방지관세부과시행규칙의 처분성에 관한 논란은 기본적으로 국내 통상법이 덤핑관련 무역분쟁에 관하여 통상규제시스템은 미국 통상법과 유사하게 갖추어 놓고도 통상당국의 조치에 대한 국내 사법통제시스템은 정비하여 놓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권순일, 2007). 따라서 지금이라도 관세법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3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처분성 ②청구대상자 ③청구내용이다. 관세법 개정을 통해 ①처분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즉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조약에 따른 처분(무역위원회 위원장의 덤핑판정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하는 덤핑방지관세부과시행규칙을 포함한다)”으로 하여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⁸⁵⁾

85) ①처분성 범위를 확대 개정하면 ②청구대상자와 ③청구내용은 별도의 개정이 필요 없다.

법의 기본원칙 중에는 자기책임 원칙이 있다. 이것은 자기 결정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지배하고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덤핑방지관세제도에 적용해 보면, 반덤핑 판정과 관련해서는 무역위원회가 책임지고,⁸⁶⁾ 덤핑방지관세율 제정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책임지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품목분류와 관련해서는 세관장이 책임지는 것이다. 즉 각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그 기관을 소송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책임원칙은 덤핑수출자와 수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덤핑을 야기하는 자는 외국 수출자이지 국내 수입자는 아니다. GATT 제6조 제1항에서도 덤핑행위에 대해서는 비난받아야 한다(condemn)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난받아야 할 자를 응당 소송상대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덤핑행위에 개입하지 않는 제3자인 수입자가 수출자의 덤핑행위를 대변 또는 방어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수입자는 덤핑방지관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품목번호를 조작하거나 우회수입한 행위 등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된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 예외로 인정

관세법 제120조 제2항은 “제1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 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세법에 의한 처분이나 조약에 의한 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야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WTO반덤핑협정 제13조에서는 회원국이 시행하고 있는 자국법에 최종판정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의 신속한 검토와 제11조의 의미 내의 판정을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 중재, 행정심판소와 절차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덤핑방지관세부과시행규칙은 관세법에 의한 처분이기도 하지만 WTO반덤핑협정에 의한 처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WTO반덤핑협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협정은 분쟁해결기관으로 사법기관, 중재기관, 행정심판소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86) 서울행정법원 2002. 11. 15. 2002구합29838 판결은 전남서남부채소농업협동조합이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피해조사 불개시처분취소소송에서 중국산 냉동마늘 등에 대한 셰이프가드조치 연장을 위한 피해조사신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한 조사불개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주목할 점은 중재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재’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 해결을 위탁 받은 제3자인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주장 및 제출된 증거에 기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결론을 내리는 분쟁해결절차이다.

WTO반덤핑협정이 다양한 권리구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외국 수출자가 법원, 조세심판원, 중재 중 적기에(timely)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권리구제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법 제120조 제2항 개정을 통해 “다만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행정심판을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 역시 법원 입장과 같이 ‘처분성 부정설’에 입각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의 제정·공포는 세관장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⁸⁷⁾ 조세심판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안심사 대상으로 삼아 부당한 반덤핑조치에 대한 수출입자의 억울한 피해를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

VIII. 결 론

대법원은 2022. 12. 1. 대상판결을 통해 법규명령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추상적 성격에 착안하여 법규명령인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본 판결로 인해 외국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에 앞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 심리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고 되었다. 결국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대해 본안심리를 받기 위해서는 덤핑물품을 수입한 수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은 다음에 비로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원 입장은 법적 및 실무적 관점에서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대상판결과 원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에서는 본안심사에 대한 개입정도 문제(실질적 문제)이고 대상판결에서는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 부여에 대한 인정여부(형식적 문제)이다.

첫째 원심과 관련된 본안심사의 개입정도를 살펴보면, 덤핑방지관세부과제도는 불공정행위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동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87) 조세심판원 2018관0079, 2018. 9. 4.

려는데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한 추세에서는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제3자는 대표적으로 수입국 법원과 WTO DSB이다. 그리고 양자 간에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결정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덤핑문제는 원칙적으로 덤핑수출자와 덤핑으로 인해 피해 보는 국내 제조업체간의 갈등에서 출발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 청취와 입증자료 제출요청 등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최종 덤핑판정을 결정하는 준사법기관적 역할을 수행한다. 덤핑판정 시 자국업체의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한 고도의 정략적 판단과 이를 위한 상당한 재량권을 발동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최대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덤핑방지관세부과절차에 관련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 심사하되,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실질적 부과요건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한 한 WTO DSB에 맡겨두는 것이다. 수입국 법원은 이원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WTO 간 판정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만일 대상판결의 원심과 같이 WTO 판정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무역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둘째, 대상판결과 관련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처분성 여부를 살펴보면, 동 규칙은 보통의 일반적·추상성 행정규칙과는 달리 외국의 덤핑수출자별로 구체적인 덤핑방지관세율을 부여하거나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출자를 협상당사자로 하여 약속제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잠정조치 등의 수입규제를 하거나 심지어 보복조치⁸⁸⁾를 할 수 있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점에서 '처분성 법규명령'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형식을 '법규명령'에서 '행정행위'로 바꿀 필요도 있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관세는 수입국 정부가 가진 고유한 과세주권이기도 하지만 FTA특혜 관세 등 특정의 관세는 상호주의 및 WTO 내국민대우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중한 세율 책정과 적법한 부과절차가 요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출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보복관세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간 무역이익의 균형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88) WTO DSB가 결정한 판정내용을 피제소국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소국은 DSB에 승인요청을 통해 피제소국에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외국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입국 정부의 반덤핑관세부과조치가 오·남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입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본안 심리도 받지 못하고 즉시 '각하' 처리 당하게 되면 억울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호주의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22. 8.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타국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조치를 받은 건수가 1995~2020년 동안에는 평균 17.7건, 2010~2020년 18.7건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반덤핑조치 부과 건수의 약 31%를 차지하는 중국 다음가는 순위다.

대법원이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본안 심리가 가능하도록 대상판결을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에 대한 처분성을 관세법 개정을 통한 입법화로 이를 명확히 함으로서 이제는 법원의 해석 의존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김기인, 신태욱. (2015).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김남철. (2018). 「행정법강론」. 박영사.
- 김영심. (2007).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소고. *행정법연구*, 18, 635-647.
- 권순일. (2007).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의 처분성 재론. *행정판례연구*Ⅷ, 12, 191-209.
- 김현준. (2018). 행정입법의 법규성과 규범통제. *공법연구*, 47(2), 1-29.
- 무역위원회. (2014). 반덤핑조사 관련 WTO 분쟁사례분석. 연구용역.
- 박설아. (2023).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시행규칙의 처분성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대법원판례해설*, 134.
- 박정훈. (2004).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법연구*, 11, 125-174.
- 심종선. (2015). 「WTO 반덤핑협정 해설」. 법률출판사.
- 안덕근. (2009). 무역구제조사상 국내산업피해 관련 인과관계 분석. *통상법률*, 86, 125-156.
- 안민호·이장완. (2011). 피해판정요소와 덤핑 이외 기타요인에 관한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의 시사점. *국제경제법연구*, 9(2), 217-270.
- 이광윤. (2011).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의 확대와 관련된 여러 문제. *사법*, 1(18), 179-211.
- 이재민. (2018). 반덤핑조사에서의 PMS 판정. *국제통상연구*, 23(4), 127-168.
- 정세정. (2023). 우리 법원에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21(3), 7-33.
- 정연부. (2019). 사법적 통제를 위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성격에 대한 논의체계 검토. *공법연구*, 48(1), 421-446.
- 정재호, 이재민. (2013).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홍정선. (2011a). 「행정법원론」. 박영사.
- 홍정선. (2011b). 「행정법특강」. 박영사.
- 최진수. (2013).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공법연구*, 41(3), 497-526.
- Panel Report. (2011). Thailand-Cigarettes (philippines). WTO Doc, WT/DS371/R.
- 법률신문. (2006.07). “이른바 처분적 시행규칙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https://www.lawtimes.co.kr/news/104791>)
- 법률신문. (2006.08). “집행적 법규명령과 처분적 법규명령의 개념”. (<https://www.lawtimes.co.kr/opinion/21581>)

ABSTRACT

A Study on the Disposition of Anti-Dumping Tariffs Regulations

Chen-Sik Choi

The three major trade relief systems allowed by the WTO agreement are the anti-dumping tariff system, countervailing tariff system, and safeguards. The anti-dumping tariff system will be carried out by three organizations, the Trade Commissio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Korea Customs Service, in response to the application of domestic manufacturers to investigate dumping damage. The Trade Commission will investigate and determine the dumping of foreign exporters and the real damage to domestic companies, whil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ill enact and promulgate anti-dumping tariff imposition rules aimed at granting anti-dumping tariff rates to foreign producers who have exported dumping goods, and the Korea Customs Service will impose anti-dumping tariffs appropriate for dumping imported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Foreign producers who have exported dumping goods have objections to the anti-dumping tariff rate and if they want to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they will consider which of the government agencies of the importing country will be the parties to the lawsuit. Academia and courts have also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on this point, which has continued to be controversial. In addition, it has not been established whether to grant the status of a litigation party to foreign exporters who are not Korean nationals(importers).

In principle, legal decree such as the Customs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nd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Customs Act have no disposition and thus a lawsuit cannot be file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 a foreign exporter can only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after the customs authorities has the final disposition to impose anti-dumping tariffs. At this time, the foreign exporter has no choice but to indirectly participate in the lawsuit with the importer who is trading as a party to the lawsuit. In this way, when the customs authorities and the importer are parties to the lawsuit, various problems arise. The customs authorities is not involved in the dumping judgment performed by the Trade Commission and the subsequent imposition of the anti-dumping tariff rate, so the customs authorities cannot actively

engage in litigation, and the Trade Commission can passively respond to the request of the customs authorities for data submission due to the obligation to maintain confidentiality of corporate information. Importers also need to receive dumping-related price information from foreign exporters, but most of these data belong to trade secrets, so it is very difficult to obtain this data. The lawsuit consists of the responsibility for assertion and the burden of proof between the parties, and only the claims are scattered, and they face a limitation without data to prove this.

As a result, the 'disposition positive' and the 'disposition negative' theory on anti-dumping customs imposition rules were opposed. This paper supports the positive disposition of disposition, and on the macroscopically,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herent i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sincere implementation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Korea, which ranks second in the world after China in dumping complaint rates, presented a wide range of problems based on the experience of working as a dumping practitioner at customs.

In addi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ourt's position that the tax authorities should prove the facts of the taxation requirements for anti-dumping tariffs through the theory is problematic in the nature of the quasi-judicial institution of the Trade Commission and the granting of broad discretion. Finally, in order to clarify the objection system to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tariffs and strengthe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a legislative proposal was made to amend the Customs Act, which calls for granting disposition to the anti-dumping tariff imposition rules and recognizing exceptions to administrative trial prepositionalism.

| **Keywords** WTO Anti-Dumping Agreement, Anti-Dumping Customs Imposition Enforcement Rules, Disposition, Self-Responsibility Principles, Proof of Evidence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무역의 통관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낙현*

목 차

- | | |
|----------------------------------|----------------------------|
| I. 서론 | IV. 디지털 무역 통관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II. 디지털 전환의 개요와 통관제도의 선행연구
분석 | V. 결론 |
| III. 무역원활화와 디지털 통관시스템 전환 | 참고문헌 |

COVID-19로 인해 세계경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신기술이 출현하면서 무역의 양상마저 변화하고 있는데, 상품과 서비스 교역 위주의 무역환경이 인터넷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제품과 서비스, 데이터의 국경간 거래로 확대되고 있다. COVID-19 이후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다품종 소량 방식의 전자상거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무역에 있어 통관제도를 악용한 밀수, 관세포탈,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의 위법적 통관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무역 통관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한 후 국내 디지털 무역 통관체제의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 주제어 디지털 전환, 무역 원활화, 디지털 무역, 통관제도

I. 서론

글로벌 통상의 시장 자유화와 공급망 세계화 패러다임이 쇠퇴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세계화(digital globalization)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김호철, 2023). 인터넷으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모바일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익숙해졌고, 기업들도 고객의 관심과 수요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호철, 2023). 제조 현장에서는 반복적이고 힘든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고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AI), 클라우드 등 기술로 시스템을 혁신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 DX)이 주목받고 있다.

DX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DX는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의 확대를 촉진시켜 디지털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기회도 확대시킬 것이다. 반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험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무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해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WEF)은 국가 간 무역을 효율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게 만드는 디지털 기술혁신을 'TradeTech'라고 명명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와 함께 이를 확산하기 위한 협상 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WEF, 2020 ; WTO and WEF, 2022). 또한 WTO 등은 무역거래 디지털 전환(DX in trade)을 협상목표로 설정하고 더욱이 협상 패키지와 참가국을 재구성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김호철, 2023).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첫째, 전자거래 문서에 대한 법적 인정(legal recognition)이다. 무역협정에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등 국제적 지침을 명시하여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계약 등에 대한 각국 제도를 조화시켜야 한다. 둘째, 국경을 이동하는 사람과 물품에 대한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이다. 기업이나 정부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신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제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역협정을 통해 UNCITRAL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디지털 신원 정보를 공유하는 글로벌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셋째, 무역거래 문서와 통관 플랫폼의 상호운용(global interoperability) 확보이다. 무역협정을 통해 유엔무역원활화와 전자상거래 센터(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Centre des Nations Unies pour la facilitation du commerce et les transactions électroniques : UN/CEFACT) 및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 WCO)가 개발한 데이터 의미사전 보급과 공통 문서표준 개발, 각국의 통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상호운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정책과 규범의 디지털화이다. 무역협정을 활용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책과 규칙들을 컴퓨터가 자동 인식 가능하도록 디지털화하면 무역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다.¹⁾

또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확산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발맞추어 디지털 무역 물품통관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무역 수출기업 ‘무역금융 신청용’ 수출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은 물론 전용시스템을 통한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디지털 무역거래 수출편의 제고로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 물품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었던 합산과세 기준을 개선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자동검증 서비스 시행 등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선량한 국민의 소비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해외직구를 악용하는 시도는 철저히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종욱, 2023). 아울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 및 테러 대응 역량 강화, 식약처 등 관련부처와 적발정보 공유·협업검사 확대를 통해 생활밀접물품 및 위해성분 함유 식품 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로 국민 생활 안전 침해물품의 반입차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1) WTO and WEF의 5가지 제안① Global data transmission and liability frameworks, ② Global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documents, ③ Global digital identity of persons and objects, ④ Global interoperability of data models for trade, documents and platforms, ⑤ Global trade rules access and computational law 중 글로벌 데이터 전송(global data transmission)의 경우 각 국간 데이터 규제조화,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역거래 절차와는 내용이 다소 상이하고 데이터 신뢰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제외하였다(WTO and WEF, 2022).

본 연구에서는 I. 서론에 이어, II.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의의와 디지털 무역의 의의를 고찰하고 또한 통관제도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있다. III.은 무역원활화에 따른 디지털통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IV.는 우리나라의 디지털통관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V.는 본 연구를 정리·요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무역의 원활화에 따른 통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 하나의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디지털 전환의 개요와 통관제도의 선행연구 분석

1. 디지털 전환의 개요

1) DX의 의의

DX의 정의에 대한 무수한 학문적, 비즈니스적인 해석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고, 수행 방법 또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방법론이 소개 및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수한 정의를 요약해 보면, DX은 ‘디지털 관련 모든 것(All things about Digital)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동인으로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전략,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기반 경영전략 및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헌, 2022). 그러면 DX의 출현 및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다. 우리 생활에 인터넷 통신이 등장하면서 DX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박성순·조광섭, 2021). 1단계(Phase 1)는 2000년대 초반까지 ‘정보의 디지털화(Digitization)’를 목적으로 컴퓨터 시스템(대용량, 네트워크, 개인 PC 등)에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단계(Phase 2)는 2010년대 초반까지 운영 혁신 및 효율화를 목적으로 ‘업무 프로세스, 주문·생산 방식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3단계(Phase 3)는 2010년대 초반 이후, 디지털화된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클라우드, AI·데이터분석 등)과 고객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속 환경의 다변화, 인터넷상의 대중 커뮤니케이션 그룹의 다변화

(예: 모바일 디바이스 대중화, SNS 환경 등)에 따른 비즈니스 혁신의 시기인 “DX”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표 1〉 디지털화, 디지털화, DX의 비교표

Phase	Phase1	Phase2	Phase3
구분	Digitization	Digitalization	DX
시기	-2000년(PC중심)	-2010(웹/인터넷 중심)	-2011년(모바일/클라우드 중심, 2015년부터 DX용어 본격사용)
목적	정보의 디지털화(데이터화/정보화)	IT기술을 활용한 프로세스 중심의 운용혁신(업무 효율화, 비용절감)	디지털기술 중심의 비즈니스혁신 (매출 증대, 신규 고객/매출확보)
Enabler	개인pc/대용량컴퓨터시스템/pc통신	정보기술(IT)	디지털 기술
변화내용	정보의 유형 (아날로그→디지털 정보로 전환)	업무처리방식(업무 프로세스의 IT화, 주문/생산방식의 디지털화)	비즈니스모델(제품의 서비스화, 제품+서비스결합, 신규 서비스)
예시	-PC+O/A SW(한글, MS오피스 등) PC통신+메일 -서버(유닉스/메인프레임 등)	-Enterprise S/W(ERP/SCM 등) 기반 업무혁신, 공장자동화 등 -비용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전환: 고가 서버(유닉스/메인프레임)→ 저가서버(x86)	-언택트 비즈니스(온라인쇼핑, 화상교육 등) -AI기술 접목(AI 컨택센터, 안면인식 등) -공유/중개 플랫폼(Uber, Airbnb, 배달의 민족 등) -가상화(가상화폐, 사이버 아바타 등)

자료 : Bloomberg, 2018.

이러한 디지털 단계의 구분을 통하여 볼 때, DX은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 방식(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휴식하는 방식, 구매 및 서비스 방식 등)에 대한 변천 과정의 특징을 설명하는 용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이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문화 등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디지털 무역의 의의

DX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무역’이 전세계 무역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급속한 발전은 무역 환경의 디지털화를 야기했고, 이는 새로운 교역재와 거래수단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전통적인 무역보다 더욱더 다양한 주체가 국가 간 무역에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길도 열렸다. 이른바 디지털 무역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디지털 무역은 아직 국제적으로 정립된 하나의 정의가 없다. 다만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모든 국가 간의 교역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국제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은 전자상거래에서 출발했다. WTO가 1998년 전자상거래 (e-commerce)를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판매 또는 전달”(WTO, n.d.)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상거래 방식의 전자화에 초점을 둔 협의의 개념이었다. 협의의 전자상거래에서 주체는 기업들이었다. 기업이 주축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B2C 거래와, 기업이 기업에 판매하는 B2B 거래가 전자상거래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효영·황세희, 2021).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간 교역을 이루는 주체와 그 거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전자상거래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인 디지털 무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가 간 교역의 주체는 기업을 넘어 정부와 소비자로 확장되며 새로운 무역시장을 열며 C2B, C2C, G2C, G2B 거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교역제도 등장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나 정부가 취합한 공공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비롯해 의료 서비스나 교육 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서비스 상품들이 교역의 대상이 되었다(이한영, 2020).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디지털 무역을 “인터넷 상 소비재의 판매와 온라인 서비스의 공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 GVC)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이동, 스마트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무수한 여타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했다(USTR, 2017).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WTO가 함께 발표한 ‘디지털 무역 측정 핸드북’에서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로 주문되거나 디지털로 배달되는 모든 무역”으로 정의되었다(OECD, WTO and IMF, 2020). 이처럼 디지털 무역은 기존의 전자상거래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디지털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이러한 거래에서 따라오는 데이터와 지적재산권의 이동까지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다양한 무역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확장은 무역 협정에서 쓰이는 용어의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6년 한·미 FTA와 2015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장(chapter) 명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 ‘디지털 무역’이 장(chapter) 명으로 쓰이면서 ‘디지털 무역’이 무역협정에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 미국과 일본의 ‘미·일 디지털무역협정(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 USJDTA)’에서도 ‘전자상거래’가 아닌 광의의 ‘디지털 무역’이 쓰였다. 2020년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사이에서 체결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DEPA)는 디지털 무역을 넘어 ‘디지털경제협력협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그 범위를 한층 더 확장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 DPA)을 발효하였으며, 칠레, 싱가포르 등 다자국과 DEPA의 가입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디지털무역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전쟁이 데이터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을 정도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주요국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경제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뉴딜 등 DX 사업을 통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디지털무역제한지수(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 : DTRI)²⁾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64개국 중 15번째로 디지털무역정책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분야는 64개국 중 8번째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무역정책 개방도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아 데이터 이동을 포함한 디지털 무역환경이 폐쇄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희훈, 2022).

2. 통관제도의 선행연구 분석

통관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강효원(2016)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정보를 분석하여, 그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으며, 광병곤·송희영(2009)은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과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통관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광은현(2020)은 해외 국가의 간이통관절차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통관절차상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선행연구를 통한 해외직접구매 현황파악과 이와 관련된 정부의 통관제도 분석을 통해 해외 국가 통관절차를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김종권·유광현(2020)은 무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이러한 기술 적용에 따른 무역에의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블록체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무역

2) DTRI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디지털무역정책이 개방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에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통관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에 따른 효율성 제고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김종덕·김울성(2019)은 간이통관이 배제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신고 방법 개선, 물품신고서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신고항목 축소, 그리고 서류보관 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충호(2017)는 간이통관제도 중에서 이른바 ‘해외직구’라고 불리며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특송물품 통관제도에 한정하여 분석·검토하고 있으며, 라공우(2022)는 ASEAN 주요국과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를 살펴보고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와 표준 인증, 수입통관 관리 등의 내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수출물품 인증과 통관절차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손승표(2021)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보안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물류 경영 분야 중 가장 대표적인 운영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 실시간 관세 통관 분야 플랫폼 기반 거래 검증 및 물류행정 정보 공유와 관련된 SCM 운영관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송선욱(2020)은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상의 효과, 국제물류 분야와 통관 분야에서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사례를 확인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태진·김태환(2020)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수입의 형태와 방식에 따라 관세의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내외 관세 통관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원판례와 조세심판사례 등을 고찰하고 있으며, 엄도영(2022)은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에 수반되는 통관 및 안전·인증 관련 쟁점을 분석하며, 특히 피해 사례, 불법 사례, 국내 식품 기준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를 중심으로 통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이슈를 고찰하고 있으며, 이명구·이은재(2018)은 통관물류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외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세행정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상진·윤영삼(2009)은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통적 EDI방식과 인터넷 EDI방식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서비스 제고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립(2019)은 전자통관 서비스가 통관사용인인 관세사, 수출입업자 등에게 신뢰성과 만족도 그리고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수출입통관 시스템, 관세징수 시스템,

수출입화물관리 시스템, 관세환급시스템, 그리고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이 전자통관 신뢰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이들 요인이 사용자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지수(2021)는 수출입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확인하고, 통관단일창구에 관한 연구를 조직, 법적, 제도적 분야에서 다분화하여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를 연구하는 분석 틀을 고찰하고 있으며, 이은재·이지수(2020)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 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고찰하고 있으며, 조원길(2022a)은 무역구조의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에 따라 해외 주요관세당국이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세관 시스템과 연동하는 종합통관체제로 진행 중인 추세에 맞추어 국내 전자상거래통관체제의 문제점 파악과 재해석을 통해 향후 체제개편에 요구되는 방안을 고찰하고 있으며, 조원길(2022b)는 인도태평양지역 거대경제권 체제인 IPEF에서 논의하고 있는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인도-태평양지역 내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통관 애로사항 가운데 통관절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장우(2006)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B2C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제도 도입의 필요성, 주요 내용, 도입효과 등에 관한 탐색적 분석을 통하여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몇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장우(2009)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를 위하여 2005년 부터 도입하고 있는 특별통관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세행정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인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준호(2021)는 현재의 통관환경과 관세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관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사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철호·송인방(2022)은 주요 전자통관시스템의 최근 현황과 각 시스템이 추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시장 수출전략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UNI-PASS 수출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홍미선(2015)은 통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선행연구 정리

구분	연구자(년도)	연구 내용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분석	강효원(2016)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정보 분석(문헌분석)
	곽병곤·송희영(2009)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과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통관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문헌분석)
	라광우(2022)	수출물품 인증과 통관절차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유의점 분석(문헌분석)
	안태건·김태환(2020)	국내외 관세 통관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원판례와 조세심판사례 등을 고찰(문헌분석)
	엄도영(2022)	통관 및 안전·인증 관련 쟁점을 분석하며, 특히 피해 사례, 불법 사례, 국내 식품 기준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를 중심으로 통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이슈를 고찰(문헌분석)
	이상진·윤영삼(2009)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서비스 제고전략을 제시(문헌분석, 실증분석)
	이예림(2019)	전자통관 서비스가 통관사용자인 관세사, 수출입업자 등에게 신뢰성과 만족도 그리고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문헌분석, 실증분석)
	이지수(2021)	통관단일창구에 관한 연구를 조직, 법적, 제도적 분야에서 다분화하여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를 연구하는 분석 틀의 고찰(문헌분석, 실증분석)
	조원길(2022a)	국내 전자상거래통관체제의 문제점 파악과 재해석을 통해 향후 체제개편에 요구되는 방안의 고찰(문헌분석)
	조원길(2022b)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통관 애로사항 가운데 통관절차 해소 방안의 제시(문헌분석)
	최장우(2006)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발전방안의 제시(문헌분석)
	최장우(2009)	특별통관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세행정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방안의 모색(문헌분석)
	최준호(2021)	통관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사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문헌분석)
최철호·송인방(2022)	전자통관시스템의 최근 현황과 각 시스템이 추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시장 수출전략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UNI-PASS 수출활성화 방안의 도출(문헌분석)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분석	홍미선(2015)	통관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문헌분석, 실증분석)
	곽은현(2020)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통관절차상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문헌분석)
	김종덕·김울성(2019)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와 서류보관 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문헌분석)
4차 산업혁명(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분석	김종호(2017)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에 대한 분석·검토(문헌분석)
	김종권·유광현(2020)	수출입통관에 있어 블록체인의 기술의 적용에 따른 효율성 제고 가능성에 대한 분석(문헌분석, 실증분석)
	손승표(2021)	실시간 관세 통관 분야 플랫폼 기반 거래 검증 및 물류행정 정보 공유와 관련된 SCM 운영관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헌분석)
	송선욱(2020)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화 방안 제시(문헌분석)
	이명구·이은재(2018)	우리나라 관세행정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제시(문헌분석)
이은재·이지수(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고찰(문헌분석, 실증분석)	

자료 : 저자 작성.

선행연구의 분석형태를 보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시스템의 활성화에 관한 제도적·법적 고찰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입통관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그에 따른 효율성 방안과 시사점 등을

고찰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무역의 원활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디지털통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이점이 있다.

III. 무역원활화와 디지털 통관시스템 전환

1. 디지털 통관시스템의 서비스 시장 발전

싱가포르와 미국 당국은 통관 분야의 DX를 가장 먼저 추진했다. 그들이 구현한 시스템, 프로세스 및 절차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목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고객 지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Krotki and Störbrock, 2020). 동시에 디지털화는 전체 물류망을 따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운송관리시스템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프로세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기업이 일상 업무에서 디지털화 경험을 쌓을수록 통관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상호 작용 개선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당사자간의 상호작용



자료 : Krotki and Störbrock, 2020.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은 국경간 상품이동을 촉진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의미한다. 무역원활화 조치의 실행은 무역으로 인한 이익분배, 기업, 소비자, 관행 선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무역원활화는 무역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필수적 조치로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무역에 기여하고 있다. 무역비용에 더 큰 비용을 드는 중소기업에게 무역에 참여할 유인을 주고, 보다 많은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김민성, 2018).

GVC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인 통관절차로 인한 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국경 절차는 재고관리 비용을 낮추고, 특히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 첨단 제조업 제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근래의 국제 소포무역의 증가라는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핵심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무역원활화는 기업이 소비자 선호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 시간 민감형(time-sensitive) GVC 참여에 도움을 준다. 빠른 상품의 수송과 함께 소비자는 빠른 배송에 대한 비용의사가 높아지므로 소비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관세 당국이 관세수입을 쉽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김민성, 2018).

WTO·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 TFA)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WTO로 대표되던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정 발효 1년 경과 후 WTO 회원국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WTO, 2023). 더욱이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맞물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국에서 겪는 통관시스템의 서비스 관련 애로사항³⁾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TFA의 효율적인 이행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TFA는 WTO 설립 및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 통관시스템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협정 발효 1년 동안 개도국의 A/B/C 의무⁴⁾ 및 이행일 통보,

3) 관세청에 접수된 통관 애로 건수는 2014년 407건, 2015년 444건, 2016년 461건으로 증가하고 있음(김민성, 2018).

4)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자국의 상황에 따라 제1절(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출입 관련 규제와 정보의 공표 및 시행, 수출입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수수료의 합리화, 통과의 자유 보장, 수출입업자의 관련 법규제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관 협력 등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됨)의 조항을 발효 즉시 이행할 수

TFA 이행지원 신탁기금(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 : TFAF)⁵⁾의 설치 등 TFA의 이행은 WTO의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A/B/C 의무 미통보 국가나 결정하지 못한 항목이 많은 국가들의 통보를 독려하고, A의무로 통보된 조치들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통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정국 간에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인바,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DX를 활용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TFA는 다른 조항에서 특정 기술에 대해 유사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은 대부분의 조항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전자 시스템의 상호 연결에 의존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된다. 예컨대 위험 관리에 관한 제7.4조의 조항은 많은 국가에서 도착 전 절차를 위해 제출된 정보, 승인된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 문서의 전자 사본 가용성 등 다른 시스템과 공유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전자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코스타리카의 전자통관단일창구 시스템 채택이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제도가 실제로 무역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WTO, 2018).

전자통관단일창구시스템에 따라 수출이 처리된 기업의 해외 매수인 수는 22.4% 증가했으며 각 매수인에 대한 평균 수출은 43.5% 증가했다(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16).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통관을 위한 전자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면 경제에 상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7). 세관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처리할 수 있으면 수입과 수출 모두에서 국경 준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70%

있는 의무(A의무), 발효 후 이행까지 과도기간이 필요한 의무(B의무), 과도기간 및 지원이 필요한 의무(C의무)로 분류됨.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만을 보면 A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113개국, B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67개국, C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56개국이며, A의무 비중은 47.4%, B의무와 C의무의 비중은 각각 10.9%, 14.6%이며, 미결정이 27.1%임(김민성, 2018).

5) WTO는 개도국/최빈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지원을 위해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지원 신탁기금(TFAF)'을 설치, 운영 중이다.

이상 줄어든다. 이는 간단한 기술을 활용해도 무역 마찰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WTO, 2018).

한편 기술은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과 규정의 범위와 복잡성을 모두 처리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I는 기업이 규제 준수를 처리하도록 돕는 데 활용되고 있다(규제 기술은 “RegTech”라고도 함). 예컨대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규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고객에게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DLT)을 사용하면 통관단일창구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중복 프로세스를 제거하고, 통관 절차 및 통관을 가속화하고, 비용과 사기를 줄이고,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경 간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 당국 및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Ganne, 2018).

또한 전자통관단일창구 시스템과 전자 인증서를 채택하면 규정 준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컨대 디지털 기술은 제품이 GVC를 통과할 때 수출 시장에서 관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SPS 전자 인증서에 대한 예비 경험에 따르면 자동화된 인증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데이터 처리 및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수출이 증가하고 민간 부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전자 인증은 또한 위조 인증서 발생률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 거래 파트너 간의 신뢰와 가치 사슬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WTO, 2018).

3. 무역원활화 및 디지털 인프라

WTO, WCO 등은 무역 관련 절차, 특히 통관 절차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류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사업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분야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는 관세행정 운영을 자동화하기 위해 1980년대 초에 시작된 UNCTAD 관세 데이터 자동화 시스템(Automated System for Customs Data :

ASYCUDA)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자동화를 통해 재정 및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세당국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다. ASYCUDA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통관 운송 및 통관 절차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하는 데 기여했다(WTO, 2018).

세계은행(World Bank)도 WTO·TFA를 구현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무역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World Bank, n.d.).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 ITC)는 또한 관민 대화를 강화하고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무역활성화 개혁에 비즈니스 관점을 포함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무역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ITC, 2019). ITC의 개입 클러스터 중 국경 간 절차의 현대화 및 자동화는 향상된 투명성과 정보 및 문서에 대한 향상된 액세스를 통해 전자 거래자를 포함한 기업의 요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C는 또한 국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디지털 무역거래에 대한 물리적, 절차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WTO, 2018).

유엔 무역원활화 및 전자비즈니스 센터(UN/CEFACT)는 무역 관련 절차와 정보 흐름을 간소화, 표준화 및 조화시켜 국경 간 무역 및 전자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한 40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예컨대 권고 26(Recommendation 26)(The Commercial Use of Interchange Agreements for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국제 상업 거래를 위해 전자통관단일창구를 활용하는 상업 당사자 간의 교환협정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동일한 권고 사항에는 “국제 무역에서 교환 협정의 조화를 보장하고 선택적 사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승인된 버전을 개발”하기 위한 전자통관단일창구의 국제 상업적 사용을 위한 모델 교환 협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권고 사항 중 다수는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 표준이다(WTO, 2018).

또한, 무역 소포화로 인해 제기된 문제로 인해 세계관세기구(WCO)는 2016년 7월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설립하여 관세/세금 징수 메커니즘과 통제절차를 포함하여 저가 화물의 통관을 촉진하는 실용적인 솔루션에 대한 제안을 개발했다. 2017년 12월에 적절한 수입 징수를 보장하면서 그러한 화물의 통관을 간소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 권고 사항이 채택되었으며, 국경간의 신속한 소포 배송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가 개발되고 있다.

다른 프로젝트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ICT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교통 및 ICT 글로벌 관행은 정부가 인프라 대출, 기술 지원 및 자문 서비스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홍보하도록 돕는다(World Bank, 2016). 전체적으로 세계은행 프로젝트의 4분의 3 이상이 ICT 관련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ITU의 통신 개발 부문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기술 지원 제공과 통신, ICT 장비 및 네트워크의 생성, 개발 및 개선에 있어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ICT 인프라 프로그램의 또 다른 예이다(ITU, n.d.).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역 개발 은행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역 조직은 무역을 촉진하고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그 중 다수는 디지털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은 디지털 인프라 개발, 상호 운용성 촉진, 범용 광대역 액세스 달성을 핵심 초점 영역으로 식별한다. 미주개발은행(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 IADB)는 무역활성화 활동(예: 전자 단일창구 홍보 등)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WTO, 2018).

4.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제13호). 해외직구로 외국물품을 구매할 때도 관세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해외직구의 경우, 특송화물로 배송받거나 우편물로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⁶⁾ 이는 배송 속도를 높이고 화물을 추적하는 데에 용이하다.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나뉜다. <표 3>에 통관 방식이 요약되어 있다. 크게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목록통관 방법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해외직구 물품을 개인사용을 위해 구매하고,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 물품은 200달러 이하⁷⁾)인 경우에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목록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물품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 품목에 해당하면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다.⁸⁾ 즉,

6) 우편물은 간이 수입신고 또는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이 가능하다.

7)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8)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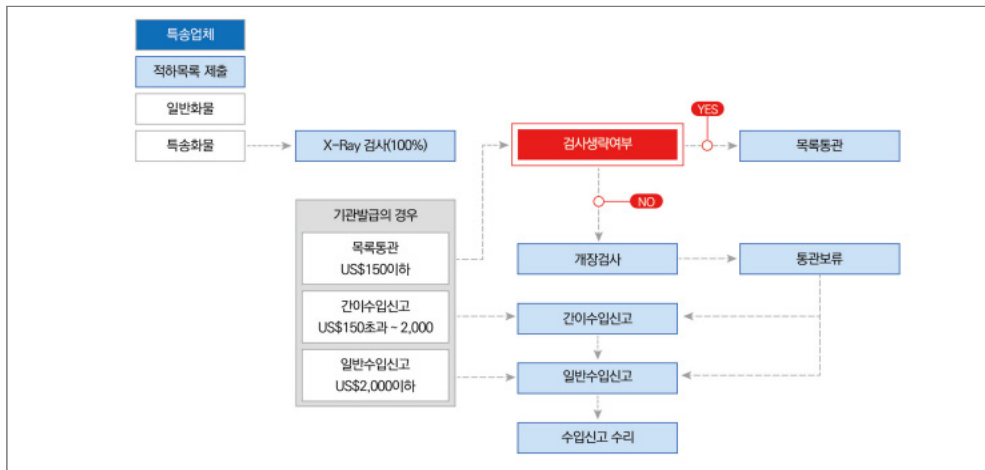
① 개인 자가사용⁹⁾ ②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③ 배제대상 제외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목록통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비과세, 절차의 간결성 등의 측면에서 국내 개인 소비자에게 장점이 있다. 목록통관이 가능한 대상이면 특송업체의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물품이 통관된다. 목록통관을 하면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고, 개인 특송 물품의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면 된다. 특송물품의 통관 절차는 아래의 <그림 2>과 같다.¹⁰⁾

〈표 3〉 해외물품 통관 방식

구분	내용	비고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있음
간이 수입신고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 수입신고 가능	일부 품목(예: 수입제한 품목)은 간이수입신고 불가능
일반 수입신고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함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

〈그림 2〉 특송물품 수입 통관 절차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

상 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식품류·주류·담배, 화장품 등이 있다(관세청, 2020).
 9) 물품별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예: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세금이 부과된다.
 10) 특송물품은 X-ray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검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

해외 구매 물품이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 물품이 통관된다. 개인 사용을 위한 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 발송 물품 여부 불문)에만 관세와 부과세가 면세된다. 이를 소액면세 제도라고 한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과세를 내야 한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간이 수입신고를 통해 제출된 물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의 정확도에 따라 세관장은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한다(엄도영, 2022). 그러나 수입제한 품목과 같은 간이신고 배제대상 품목은 간이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일반 수입신고는 앞서 설명한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거나 간이 수입신고 대상이 아닐 때 한다. 물품 가격이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가 넘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때는 과세가격×관세율에 따라 관세 부과 금액이 결정된다. 관세율은 관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FTA 협정 관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결정된다.¹¹⁾ 목록통관이나 소액면세 제도를 통해 면세통관 되는 물품이 과세통관 되는 물품보다 훨씬 더 많다.

2022년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통관 현황을 보면, 2022년 전자상거래물품은 목록통관 비중이 67%, EDI 수입신고(간이신고+일반수입신고) 비중이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건수는 전년대비 8.8% 증가, 금액은 1.4% 증가하였다. 2022년 전자상거래물품은 수입건수 기준 건강식품이 전체의 16%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1)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 거쳐야 하는 외국의 수입통관절차는 우리나라가 상대국과 체결한 FTA별로 상이하다. FTA별로 따라야 하는 수입통관절차(신고당사자, 신고방식, 소액면세 기준, 부가세 면세 조건, 소액면세 연간 한도, 소액면세 배제대상, 신고서식, 원산지 증명 방식,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는 KOTRA(20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현황

단위 : 천건, 천달러

	목록통관		EDI 수입신고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19,158	1,179,064	13,097	1,575,880	32,255	2,754,944
2019	25,549	1,291,953	17,439	1,851,258	42,988	3,143,211
2020	40,722	1,575,044	22,853	2,178,714	63,575	3,753,758
2021	58,553	1,975,198	29,827	2,683,159	88,380	6,458,358
2022	64,500	2,115,609	31,620	2,609,102	96,120	4,724,711

주 : EMS(전자상거래물품 포함)로 반입되는 건 중 현장면세된 건은 통계 확인 안됨
 자료 :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현황", 관세청,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현황을 보면,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실적 및 특송·국제우편을 통한 전체 수입 중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비중을 나타내며, 특송·우편물(A)는 특송화물 및 우편화물로 반입된 물품 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건수를 나타내며, 전자상거래(B)는 특송화물 및 우편화물로 반입된 디지털무역거래 물품 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비중은 건수 91%, 금액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물품 비중은 2017년 71%에서 2022년 91%로 매년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현황

단위 : 천건, 백만달러, %

	특송(목록통관 및 EDI 수입통관)						우편물(EDI 수입통관)					
	특송(A)		전자상거래(B)		비율(B/A)		우편물(A)		전자상거래(B)		비율(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42,107	19,508	32,255	2,755	77	14	40	123	3	4	8	3
2019	52,536	19,952	42,988	3,143	82	16	37	138	3	3	8	2
2020	73,066	22,216	63,575	3,754	87	17	29	115	2	3	7	3
2021	97,902	23,654	88,380	4,658	90	20	32	90	3	5	9	6
2022	105,088	24,491	96,120	4,725	91	19	39	116	4	5	10	4

주 : EDI 수입신고물품 기준이며 100달러 이하 목록통관 특송물품 및 600달러 이하 간이통관 우편물은 제외됨
 자료 :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현황, 관세청,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IV. 디지털 무역 통관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간편한 우편통관 절차를 악용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물품반입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으로 우범물품 선별과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관세청의 단속과정에서 건수의 전체 63%, 금액기준으로 약 24%가량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심재현, 2017). 또한 국제우편을 이용한 위법사례는 국제우편 또는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일반 상용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고 관세 및 부가세 등을 탈루하는 것이다. 중국과 홍콩 등에서 가짜 명품 시계, 가방 등을 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사례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기 힘든 고세율 품목이나 불법물품에 대한 주요 이동통로로 국제우편을 이용하고 있다(심재현, 2017). 또한 통관전문성이 부족한 특송업체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특송업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화물운송업 내지 선사 등으로 난립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들 특송업체들이 통관 상 혜택을 누리면서 불법물품을 반입하거나 정확한 신고 등 특송업체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어 매년 불법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조원길, 2022a).

따라서 국민안전이 최우선인 통관행정 정책방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통관행정 전 분야의 위험관리를 고도화하여 위해물품 적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이종욱, 2023).

첫째, 세관별 실정에 맞게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세관별 분석테마 설정 집중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안보위해물품 차단 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 전담조직 신설, 통합항만감시시스템(Integrated Port Surveillance System : IN-POSS) 고도화로 데이터 기반 해상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안전 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검사선별기준을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체 Central C/S(우범화물선별제도, Cargo Selectivity) 기준을 전면 정비하여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특성·우범정보 등을 반영하여 위해물품 선별기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편물사전전자 정보, 특송화물 적재화물목록, 이사회물 정보 선입수 등 화물 반입 전 선별 역량을 강화하도록 제도개편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편물을 통한 밀수 우범 국가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은 별도 분리검사하는 등 우범국발 화물에 대해 집중검사 실시,

여행자 통관에 있어서도 과세통관은 모바일로 자동처리하고 고위험 물품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범여행자와 개인화물간 정보연계분석으로 우범물품의 우회반입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장에서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적발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검색장비를 추가 배치해야 할 것이다. 마약·총기류 등 위해 물품 C/S 선별 건에 대한 개장·파괴검사 및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한 품목별 표준 검사방법을 마련하고,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한 위험물 컨테이너 검사, 대형화물 전용 X-ray 도입, 원목·냉동어류 등 검사곤란 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수행을 위해 단순 물품확인이 아닌 해체·절단·파괴 등 다양한 방식의 검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이종욱, 2023).

이와 더불어 수출입물품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보세구역 운영인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편물품 정보와 X-ray 판독 영상을 한 화면에 동시에 구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협업검사 분야·품목을 국민안전 밀접분야 중심으로 조정하기 위한 성과평가 기준 및 조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기획 협업검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장 직원들의 마약적발 등 업무성과 유인제공을 위해 활동비·포상금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우수직원에게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사상 혜택 부여로 현장 실무직원들의 성과창출을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 직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검사비용 지원·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하고, 밀수품 은닉수법 지능화에 대비하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첨단검사장비 배치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이종욱, 2023).

2. 통관행정 질서 확립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물류공급망을 정비하여 화물 통제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관행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종욱, 2023).

첫째, 보세화물 관리 및 검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법적 기능(장치)과 실무상 기능(장치+검사)이 상이한 지정장치장의 기능을 실무에 맞게 조정하고, 공개경쟁을 저해하는 재지정 절차폐지, 타 기관운영 지정장치장의 자발적 취소 신청절차 규정 및 화물관리인 관리

감독 절차 규정 등 지정보세구역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며, 보세구역 특허 취지를 훼손하는 공간 편법 분할행위 등의 차단을 위해 보세창고 운영현황 파악 및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환적화물 장치 및 이동구간 세관통제 강화를 위해 Sea&Air 및 수입·환적화물 혼재 컨테이너에 대한 컨테이너 검색기 검사, 보세운송 물품에 대해 도착지 검사 및 반입후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환적화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최종 적재지가 아닌 보세구역에서도 선(기)적반출을 허용하던 것을 최종 적재지에서만 가능하도록 정상화하는 등 화물 이동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화주·납세의무자 정보 및 선하증권검증을 지속 추진하고 적재화물목록 작성자 등에 대한 서류보관 의무 부여 및 LCL 화물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자 확대 등 포워더 제도 정비 및 이를 시스템화하여 수입선하증권 국내발행확인 시스템 구축,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정보항목 오류통보 기능 신설, 미등록 포워더에 대한 주기적 확인단속 등 포워더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유무역지역법에 비해 관세법 적용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법령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원료과세, 혼용승인,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 형벌 및 과태료 등 관세법과 일관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령개정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자유무역지역내 관세행정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송수출담배 등 밀수입 차단하기 위해 우범화물에 대한 보세운송 도착지 검사를 확대하고 보세운송 미등록 차량을 이용에 보세운송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보세운송 화물의 이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면세점협회가 운영하는 통합물류창고와 인도장의 시스템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국산 면세품의 국내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간 디지털무역 통관환경을 개선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거래정보 공유, 신고서 처리 및 대국민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통관과 고위험 물품의 집중관리를 위해 우범화물 선별 등 특송화물 통관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법규요건 미충족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등록기한을 설정하여 세관 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구매대행업자 등록요건을 정비하고 거래자료 입수 근거마련 및 개인통관고유번호 검증을 강화하여 명의도용 차단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출입공급망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022년 마련한 통관심사목록 중심의 표준품명 체계를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위해 핵심산업 원료·부품 등 경제안보 품목 중심으로 정비하도록 표준품명 체계를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에 추가·배포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에 탑재하여 범정부 공급망 관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통관분야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통관업 수행의 법규준수도 제고 및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의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정기 모니터링 및 직무보조자로 채용된 미등록 관세사 자격자의 통관업 수행여부, 수입제한 관세사 의무이행 여부 등의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판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밀수입사건 등에 대한 징계시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판·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재판결과 확정일부터 1년 내 징계가 가능하도록 기재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종욱, 2023).

3. 검사환경 등 인프라 확충

디지털 무역거래 물품급증 등 업무량 증가로 인한 세관검사 형식화를 방지하고,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적발율 향상 등 효과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전자심사율을 제고하고 통관현장의 우범화물 선별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심사실익이 적은 저위험건에 대한 전자통관 확대 및 세관자체 전자통관 운영비율 확대, 세관장확인 전자심사율 제고를 통해 감축된 업무량을 충분한 검사운영 시간에 할애하고, 세관통관정보과 현장선별 기능 강화 및 Local C/S 조정권한 확대, 검사계획 사전 보고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검사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검사장 신축 및 검사수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인천항 통합검사장 등 세관별 검사시설 개선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마약류 등 불법물품에 대한 집중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개선과 함께 검사장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보세구역 창고내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창고밖 검사시 검사구역 펜스

설치 등 명확한 검사기준을 명시하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효성 있는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첨단과학 검사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절단·파괴 등 적극 검사가 곤란한 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휴대용 X-ray, 내시경 카메라 등 과학 검사장비를 도입하고 전국세관 주요 통관검사 장비 배치현황 및 세관별 활용율을 고려하여 장비 재배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축되는 통합검사장·해송특송장, 증축되는 이사회물센터, 국제우편물통관센터 등 신규 도입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특송통관, 국제 우편물 관리 강화를 위한 통관 심사인력 등 소요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4. 통관체계의 개편

법·제도측면에서 전자상거래 수입의 문제는 배송대행업체 구분이 곤란하며, 통관관리에 모순이 발생하고, 오송 및 반송물품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다는 점, 전자상거래물품에 선물 및 개인용품을 혼재 배송한다는 점, 특송목록에 대한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점, 등록 코드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련법이 전무하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화주 요청에 따른 통관 편의에 대한 부분이 적다는 점을 들고 있다(곽병곤·송희영, 2009).

특히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폐지와 신고제 전환으로 비교적 신뢰가 가능하다는 것과 관리 가능한 성실 업체 외에 다양한 디지털무역업체들이 모두 목록통관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조직적인 관세탈루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목록통관 대상 확대 경우 허위신고에 따른 불법통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송물품의 목록신고 시 허위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는 한 목록신고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이수진, 2014).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에는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1).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정보교환 매개자(SNS, 블로그, 카페 등), 연결수단 제공자(가격 비교 사이트 등), 중개자

(오픈마켓 등)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2002년에 제정된 현행법에는 법 적용대상이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증개자로 구분되어 있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현행법상 증개자로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위해물품 거래를 방지할 의무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함으로써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거래중단, 관련 정보 공개 등의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플랫폼 사업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이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국외에서의 행위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엄도영, 2022).

기업 차원에서도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쿠팡과 관세청은 2021년 6월에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관세청과 공유함으로써 해외직구 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통관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 협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데이터 협업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판매자로부터 구매된 물품에 대해 세관검사를 최소화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위해 우려물품은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관세청, 2021a). 관세청은 네이버와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을 맺어 해외직구 상품정보에 관한 빅데이터를 통관절차에 활용하여 통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안전한 물품이 유입될 수 있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관세청, 2021b). 주요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통관 효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통관시스템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직구보다 기업 간 국제거래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향후 해외직구나 역직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정보망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5.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시스템 개선

해외직구물품은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에 해당하여 부과지 대상물품이나,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간이신고대상 특송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간이신고대상물품은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13조).

그러나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이지만 세관당국의 관리 목적으로 일반통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납세측면에서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부과지대상임에도 관세법령상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김종덕, 김울성, 2019). 또한, 관세의 납부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곤란하지 않다고 인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 물품의 정보를 수집하고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위해식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차단목록이 구매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구매하면서 확인하기가 불편하다. 그리고 위해물품을 판매해도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해물품의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가 위해식품 또는 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는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통관 단계에서도 위해물품을 차단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었다(엄도영, 2022). 특송물품 목록통관 시에는 통관목록만 제출하면 되고, 우편물도 발송인·수취인·중량·금액·품목 등의 정보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물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¹²⁾ 통관 이후 유통관리 단계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검사를 정기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부과지 대상품목의 제외대상을 '특송물품 중 간이신고 특송물품'에서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

12)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등의 정보가 확보되지 않았다.

러)를 초과하는 물품'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목록통관 배제물품으로 선정되어 일반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 부과지 대상으로 확정하고 사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또한 수입신고서에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물품신고 항목과 관세법 제38조에 의한 납세신고 항목이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총 6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항목에는 무역거래 조건과 관련하여 해외직구물품 거래와는 관련 없는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디지털무역거래를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용이하고,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개인이 수취하는 탁송품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해외직구물품에 적합한 일반수입신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송품장 등 다양한 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나, 디지털무역거래를 통한 해외직구물품 구매의 경우는 관련 있는 서류에 한정(송품장과 운송장 부분)하여 제출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글로벌 기업국내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제물류창고에 판매 재고를 두고 국내소비자가 해외직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통관검사 강화, 가이드북을 제작·배포 및 국민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해외직구 면세한도 상향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반도체용 원부자재, 차량용 요소수 등 수급불안 품목의 국내 적기 공급을 위한 24시간 통관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이종욱, 2023).

한편 해외 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는 2021년 약 7,700억 달러에서 2025년 2조 달러, 2030년 6조 달러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2년 8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200만 건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해외직구 경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종호, 2023). 다만,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한 해외직구 제도를 이용한 상업형 해외직구 등장과 지재권 침해물품의 불법 반입, 더욱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등 해외직구를 이용한 범죄로 진화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측면에서는 수요 집중시기에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한 불법수입·요건회피 행위에 대해 상시·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기존 탈세 위주 단속에서 건강·안전 위해물품, 명의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편취 등 다양한 위법행위로 단속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제도 측면에서는

해외직구 위반행위 계도대상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오픈마켓 등으로 확대하여 경미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홍보 영상·디지털 포스터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해외직구 규정을 잘 몰라 반복되는 법률 위반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데이터기반의 스마트통관시스템의 추진

2023년 10월 ‘혁신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이 새롭게 선포되었다. 이에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심사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한민, 2024).

첫째, 외국 AEO 화물의 국내수입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MRA) 체결 상대국의 AEO화물이 아국 도착 시 인식 방법을 자동화하여 수입자가 AEO화물임을 증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해외수출자-포워더-관세사-수입자 등 물류공급망의 AEO 구성 비율이 커질수록 세관 검사·서류 제출 면제의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관세평가 관련 정보를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하여 검색·활용하도록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관세평가 통합 DB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품목분류 난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e-가이드」를 제작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통합관세납부 전용계좌(관세계좌)」를 도입하고,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200만원 이하)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관세 납세증명서(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24 및 민간 앱을 통해 발급되도록 개선하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수출 시 자동환급 업체 지정 및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ACVA)¹³⁾의 신청·접수 등을 전산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납세협력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납세신고서와 고지서 서식을 개정하여 관세·내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세관에 신고·납부하도록 개선하여 관세국경 단계에

13) 이 제도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 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정하는 제도이다. 관세평가제도의 전문성에 비해 이해도가 부족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후 추징 및 경영안정성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특히 다국적 기업에 납세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징수기관인 세관에서도 안정적 세수확보와 사후심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상호 호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서의 세금신고납부 통관단일창구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타부처의 등록·인증을 요하는 수출입물품을 AEO 기업이 통관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ACVA 기업의 가격자료 확보 시점을 고려하여 ACVA 유효기간을 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시점으로 조정하고 ACVA 연례보고 검토 매뉴얼을 제작하여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입수되는 신고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HSK 2,400개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침'을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배포하고, 2020년 구축한 성실신고지원시스템에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예상오류를 통보해 주고 있다(이석문, 2021).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 및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휴대품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등 스마트 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800개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침을 신규로 작성하고, 주요 핵심사항을 성실신고지원시스템에 신고내역 검증 기준으로 지속 탑재해야 할 것이며, 적하목록 오류검증 알고리즘도 업데이트하여 신고인에게 배포함으로써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이석문, 2021).

이와 함께 신고오류 비율이 낮은 신고인과 오류 통보 건에 대한 정정 비율이 높은 신고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인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신성장산업, 2022년 HS 개정 등에 따른 주요품목을 무역통계 분류체계에 신설해야 할 것이다.

7.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관세법상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200만 원 이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의무가 없으며 목록통관의 경우 무역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수출실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목록통관 수출 후 반품 수입되는 경우 디지털 무역 물품을 판매한 디지털 무역업체는 수입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별도의 재수입 면세신청을 위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전자상거래 통관체제의 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출물품은 반품처리를 위해 다시 수입하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수입통관에 무리가 없지만 목록통관으로 수출한 물품은 판매확인서, 반품사유서, 계약서, 반출서류 등 추

가서류가 요구되며, 이러한 반품처리에 따른 각종 비용과 시간 발생으로 인해 오히려 현장에서 헐값으로 거래 또는 폐기되는 실정이다(코스모닝, 2020).

민간의 DX와 공공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모든 업무와 생활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40여년간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관세망을 운영하고 있는 관세청도 일부 현장에서는 종이서류나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행정 업무 단위별 DX 현황을 분석하고, 대내외의 DX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관세청만의 고유한 'DX'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종이 서류나 비정형 데이터로 처리하는 업무를 전산화하고, 이미 전산화되었던 업무라도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IoT, AI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유영한, 2023).

더불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을 통한 과학적 관세행정 수행을 위해 내외부 데이터의 추가활용 분야 발굴, 데이터 분석도구별 역할 정립 및 데이터 활용·공유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관세행정 데이터 활용 확대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은 업무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모델과 신기술 기반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하여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새로 개발하고 기존의 플랫폼도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8. 국경간 디지털무역거래에 최적화된 통관체계 구축

관세청에서는 기존의 기업 간 거래에 맞춰진 통관제도를 분리하여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통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개선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관세청내 전자상거래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설계, 제도·시스템 마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통관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목록과 일반수입신고로 이원화된 신고체계를 전용 수입신고서로 일원화하고, 전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업무체계·시스템구조·장비규격 등 세부계획 도출을 위한 정보화시스템마스터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 ISMP)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공급망

을 특별통관 대상 업체로 등록·관리하고, 보세구역 반입 전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석문, 2021).

특송회사·쇼핑몰을 대상으로 새로운 디지털무역거래 수출전용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다품목·소액물품·빈번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반품(재수입면세) 등 통관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제도개선이 미미했던 국제우편 통관과 관련하여 사전통관정보 제출 의무화, 우편물 사전발송정보(Pre-advice of despatch : PREDES) 등과 시스템 연계 등 국제우편 통관체계에 대한 혁신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연간 수백 회 이상 면세통관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내외부로부터 계속 되어 왔다. 이와 같이 자가소비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석문, 2021).

또한,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구매자에 대한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20년 제출 의무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제출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통관목록의 수하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일치여부를 검증하고, 허위제출 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제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여 해외직구 통관내역을 누적관리하는 등 빈번 반입자에 대한 정보분석과 사후심사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TFA는 WTO 설립 및 DDA 협상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통관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통관 관련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협정 이행 과정에서 통관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필요사항을 파악 후 적절한 지원을 통해 통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TFA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무역원활화 조치들이 이미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국가라도 구속력 있는 규정의

제정으로 이행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 통관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이미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협정국 간에 적용되는 TFA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다자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

TFA는 여타 WTO 협정과는 달리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협정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행능력이 충족될 때까지 이행 의무가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어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인바,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GATT/WTO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나 그동안 WTO 내에서의 역할은 미미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통관시스템과 기술,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TFA의 이행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자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통관시스템의 국제표준화와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산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비슷한 환경에서 고품질 통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해외 통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수입·특송·우편·여행자 등 다양한 통관경로별 수출입, 환적, 감시부서 등에서 적발한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성과를 뒷받침하고 위험관리업무가 원활히 환류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 적발 통계관리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민안전 보호'라는 통관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통관현장직원들에게 적극적인 단속의지 확산을 견인할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과는 별개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특송업체 및 관세사에 제공하는 구매대행업체를 직접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부 구매대행업체의 저가신고 등으로 해외직구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범규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송업체의 사업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송업체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송업체별 해외거래처, 신고 정확도, 취급화물, 적발실적 등을 종합분석하여 위험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효원. (2016).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정보 분석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17(3), 61-83.
- 곽병곤, 송희영. (2009).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0(3), 69-88.
- 곽은현. (2020). 특송물품 중 간이통관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해외직구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21(1), 183-199.
- 관세청. (2020).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관세청. (2021a). 관세청-쿠팡, 전자상거래 통관체제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보도자료.
- 관세청. (2021b). 관세청·네이버, 해외직구 활성화 위해 빅데이터 손잡는다. 관세청 보도자료.
- 김민성. (2018).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종권, 유광현. (2020). 수출입통관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증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1(4), 51-69.
- 김종덕, 김울성. (2019). 해외직구물품 급증에 따른 통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31(1), 181-206.
- 김종호. (2023). 조사행정운영방향. *제간관세사*, 신년호.
- 김충호. (2017).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8(1), 3-17.
- 김호철. (2023).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지정학과 통상협상 新의제 검토. *통상법률*, 158, 3-57.
- 라공우. (2022). 아세안 주요국의 인증제도와 통관절차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3(1), 169-190.
- 박성순, 조광섭. (2021). Digital Transformation의 성공적 시작. 삼성SDS.
- 손승표. (2021). 플랫폼 기반 SCM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 관세통관 분야 Digital Trade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향후 과제. *관세학회지*, 22(4), 143-165.
- 송선욱. (2020).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 방안. *관세학회지*, 21(2), 3-22.
- 심재현. (2017). 국제우편물통관제도 개선연구: 위험관리체계 재설계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 안태진, 김태환. (2020). 디지털 콘텐츠 수입의 관세 통관에 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21(2), 79-87.
- 엄도영. (2022).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직구의 통관 및 안전인증 이슈. 산업통상자원부·한국표준협회.
- 유영한. (2033). 정보데이터행정 운영방향. *제간관세사*, 신년호.
- 이명구, 이은재. (2018).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관세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9(1), 4.
- 이상진, 윤영삼. (2009).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 실태분석과 서비스 제고 전략-전통적 EDI와 인터넷 EDI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10(1), 49-76.
- 이석문. (2021). 통관행정 운영방향. *제간관세사*, 신년호.
- 이수진. (2014).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의 문제점 및 보완대책.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853.

- 이예림. (2019). 전자통관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가 전자통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3), 201-218.
- 이은재, 이지수.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4), 1-140.
- 이종욱. (2023). 통관행정 운영방향. *계간관세사*, 신년호.
- 이지수. (2021). 통관단일창구에서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방향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22(1), 51-75.
- 이한영. (2020). 디지털경제·통상과 국제규범 동향. 국립외교원.
- 이효영, 황세희. (2021). 디지털 무역 규범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 태재미래전략연구원.
- 이희훈. (2022). 디지털 FTA의 시대가 온다: 글로벌 데이터 허브가 될 것인가, 갈라파고스가 될 것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조원길. (2022a). 디지털무역 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3(1), 83-104.
- 조원길. (2022b). 통관행정 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3(4), 3-29.
- 최장우. (2006). B2C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7(1), 79-106.
- 최장우. (2009).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0(1), 229-253.
- 최준호. (2021). 통관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관세사제도 운영 방안. *관세학회지*, 22(2), 43-60.
- 최철호, 송인방. (2022). 주요 전자통관시스템의 분석을 통한 UNI-PASS 수출활성화 방안. *인문사회 21*, 13(4), 2539-2550.
- 한민. (2024). 심사행정 운영방향. *계간 관세사*, 신년호.
- 홍미선. (2015). 통관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활성화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KOTRA. (2020). 온라인 해외 직구·역직구 FTA 활용 tips. KOTRA 자료.
- Ganne, E. (2018). Can Blockchain Revolutionize International Trade?.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16). The Border Labyrinth: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rade in the Presence of Multiple Agencies. Washington, D.C.: IDB.
- ITC(2019). Trade impact for good. Annual Report 2019.
- Krotki, K. and P. Störbrock. (2020). The Impact of Digitalization on Customs Service Providers: An outlook into the future. Deloitte.
- OECD, WTO and IMF. (2020). Handbook on Measuring Digital Trade (Version 1).
- The World Bank. (2017). Trading Across Borders: Technology gains in trade facilitat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Group.
- UNCTAD. (2022). Digital trade: Opportunities and ac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UNCTAD Policy Brief, No.92.

- WEF. (2020). Mapping TradeTech: Trad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sight Report.
- WTO. (2018). The future of world trade: How digital technologies are transforming global commerce. World Trade Report 2018.
- WTO and WEF (2022). The promise of TradeTech: Policy approaches to harness trade digitalization. WTO and WCO.
- 코스모닝. (2020). “역직구실적 관세환급 가능해졌다”. <http://www.cosmorning.com>
- Forbes. (2018). “Digitization, Digitaliz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Confuse Them At Your Peril”. <https://www.forbes.com/sites/jasonbloomberg/2018/04/29/digitization-digitalization-and-digital-transformation-confuse-them-at-your-peril/?sh=6f89f2cb2f2c>.
- The World Bank. (2016). “Transport and Accessibility”. <https://www.worldbank.org/en/topic/transport/brief/transport-and-social-responsibility>
- WTO. (2023). “Trade facilitation measures most commonly needing implementation assistance spotlighted”.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adfa_e/tradfa_e.htm
- USTR. (2017). “Key Barriers to Digital Trade”.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17/march/key-barriers-digital-trade>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Clearance System for Digital Trad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Nak-Hyun Han

The primary purpose of the WTO is to open trade for the benefit of all, and the mission of the WCO i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customs authorities. And both organizations provide capacity-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aimed at facilitating trade and customs procedures. Due to COVID-19, the global economy is going through a period of upheaval called digital transformation. In particular, with the emergence of new digital technologies, even the aspects of trade are changing, and the trade environment centered on trade in goods and services is expanding to cross-border trade in digital products, services, and data that can be supplied through the Internet. As digital trade becomes active after COVID-19, the number of e-commerce transactions involving small quantities of various products is increasing. However, despite this increase, illegal customs clearance practices such as smuggling, customs evasion, and illegal import of hazardous goods are also occurring in digital trade by abusing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discusses problems occurring in digital trade customs clearance and then examines ways to improve the domestic digital trade customs clearance system.

| **Keywords** Digital Transformation, Trade Facilitation, Digital Trade, Customs Clearance System

국제법을 수용한 국내법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한상필*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관세법」 관세평가 조문 해석 사례 적용 연구
II. 「WTO 관세평가협정」의 조약 여부 고찰	V. 결론
III.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및 해석원칙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세평가에 관한 실체적 규정을 담고 있는 「WTO 관세평가협정」을 수용한 국내법인 「관세법」 조문에 규정된 문언을 해석할 때 「WTO 관세평가협정」에 규정된 정의 조항과 「관세법」 정의 조항 중 어느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검토·연구하였다.

외교부의 발표자료 및 사법당국의 결정·판례를 통하여 「WTO 관세평가협정」의 국내법적 지위는 조약인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인 다자간무역협정으로서 「헌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법과 조약인 국제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조약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비하여 특별법적 우선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해석에 있어 조약에 정의되지 않는 한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야 하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대상판례에 조약의 지위를 가진 「WTO 관세평가협정」과 이를 수용한 국내법인 「관세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첫째 조약의 적용방식 측면 고찰, 둘째 법률적용 우선원칙 고찰, 셋째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해석방법 적용 고찰, 넷째 적용 대상판례 국내법 정의조항 고찰 등 4가지를 통하여 조약의 우선 적용 및 해석원칙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대상판례가 국내법 정의 조항을 적용하여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조약의 우선적용을 통하여 관세당국의 일관성있는 해석원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추가하여 「WTO 관세평가협정」과 국내법 해석을 위한 조화방안으로서 조약의 특별법 지위를 부여한 국내법령을 소개하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Ⅰ 주제어 WTO 관세평가협정, 해석, 조약, 특별법 우선원칙

* 관세인재개발원 전문교수, E-Mail: cotas0809@hanmail.net

I. 문제의 제기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주요 행위자인 국가나 국제기구 사이에 수없이 많은 약속이 존재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화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이렇게 형성된 약속을 조약이라고 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¹⁾ 제2조제1항에서는 조약을 “단일의 문서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treaty’ means an international agreement concluded between States in written form and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whether embodied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two or more related instruments and whatever its particular designa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서처럼 조약은 전통적으로 둘 이상의 국가 간의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국제기구도 독립적인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와 조약을 체결함은 물론, 국제기구 간에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의 체결 주체는 국가와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법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조약은 ① 국제법 주체 간에 ② 권리·의무 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합의이다. 조약의 주요 유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약의 주요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조약(Treaty)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치적·외교적 기본 관계나 지위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기록 예) 한-러시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993)
규약(Covenant) 헌장(Charter) 규정(Statute)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제도를 규율하는 다자 간 국제합의에 가장 많이 사용 예) 국제연맹규약, 국제연합헌장,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등
협정(Agreement)	비정치적인 전문적·기술적 주제를 다루는 경우 예) 한-르완다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2023)

1) 국제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약이 어떻게 체결·적용·해석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가 간 통일된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1947년에 설립된 유엔 제6위원회 산하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서 조약법의 성문화 작업이 구체화되었고, 그 노력의 결실로 1969년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채택됨(1980.1.27. 발효)

* 외교부-외교정책-조약정보-다자조약. <https://treatyweb.mofa.go.kr/legsTreatyDetailInqyWinCall.do>
국회동의 1976.12.16., 우리나라 발효일 1980.1.27. 발효(조약 697)

구분	주요 내용
협약 (Convention)	- 특정분야나 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사용 예) 한-캄보디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2021) - 국제기구 주관하에 개최되는 국제회의 또는 외교회의에서 체결하는 다자조약에 사용 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1)
의정서 (Protocol)	주로 기본적인 문서를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성격의 조약에 사용 예)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의정서(2019),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1 추가의정서(2022)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한 국가의 대표가 제안하는 각서를 보내면 상대방 국가의 대표가 그에 회답하는 각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체결되며, 주로 기술적 성질의 사항에 사용 예) 한-이집트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교환각서(2015)

출처 : 알기쉬운 조약 및 기관간 약정 업무(외교부, 2023)

「헌법」 6조는 “이 헌법에 의해서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헌법」 제6조제1항은 문언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이 같은 조항의 의미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실행을 통해 확정되어질 것이다. 즉, 「헌법」 제6조제1항의 구체적 의미는 문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적 실행을 통해 확립될 대상이다(정인섭, 2015).

이 논문은 관세평가에 관한 실체적 규정을 담고 있는 「GATT1994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을 수용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관세평가 조문의 문언을 해석할 때 「WTO 관세평가협정」에 규정된 정의 조항과 「관세법」 정의 조항 중 어느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i) 무역거래사실을 확인하고, ii) 해석된 법령을 iii) 적용하는데 있어, 무역거래사실에 해석된 법령을 적용하는 부분에 관한 다툼은 존재할 수는 있으나, 조약을 수용한 법령을 해석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해석원칙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방법은 「WTO 관세평가협정」의 조약 여부 및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논문 등 문헌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을 고찰하여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령상 관세평가 규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타당한 해석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WTO 관세평가협정」의 조약 여부 고찰

1. 외교부 자료분석을 통한 조약 여부 검토

관세평가의 국제적인 표준의 필요성에 관한 최초의 공식 논의는 국제연맹 시절인 1920년대 말에 시작되었으며, 1945년 UN 창설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되고 1947.10.30. 제네바에서 GATT협정(GATT 1947)²⁾ 채택이라는 결실로 완성되었다. 즉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규범인 제7조가 포함된 GATT협정이 제정됨으로써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표준이 제정된 것이다. GATT협정 체결국이 자국의 관세평가 규정을 제7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함으로써 적어도 GATT 협정 체결국 간에는 관세평가에 관하여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GATT 제7조 자체는 집행력을 갖는 규범이 아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각 국의 평가규정이 통일되지 않는 이상 평가제도가 무역장벽이 된다는 종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GATT 제7조의 기준을 바탕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집행규범으로서의 국제표준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GATT 제7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 최초의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규범은 브뤼셀평가협약(BDV, Brussels Definition of Value)이다. 정식명칭은 「관세목적에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³⁾」(1953.7.28. 발효)으로, 유럽관세동맹(European Customs Union) 주도하에 1950년 브뤼셀에서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이후 1981.1.1. 발효된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⁴⁾」(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관세평가협정(GATT Customs Valuation Agreement)」이라 한다)이 등장하기까지 관세평가에 관한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규범이었으며, 증가세제하에서 CIF주의 과세가격 개념을 정립하였다. 브뤼셀평가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유럽·

2) 외교부-외교정책-조약정보-다자조약, <https://treatyweb.mofa.go.kr/legsTreatyDetailInqyWinCall.do>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Protocol for the Accession of Korea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국회동의 1967.3.10. 우리나라 발효일 1967.4.14.(조약 243)

3) 외교부-외교정책-조약정보-다자조약, <https://treatyweb.mofa.go.kr/legsTreatyDetailInqyWinCall.do>
국회동의 1968.4.16. 우리나라 발효일 1968.10.2.(조약 283)→1982.4.28. 외교부고시 제76호로 종료

4) 외교부-외교정책-조약정보-다자조약, <https://treatyweb.mofa.go.kr/legsTreatyDetailInqyWinCall.do>
국회동의 1980.12.5. 우리나라 발효일 1981.2.6.(조약 729)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평가규범으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으며, 협약의 시행을 CCC[관세 협력이사회, Customs Cooperation Organization, 실무명칭-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가 주관함에 따라 다수의 CCC 회원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이 되거나 비록 체약국은 아니지만 협약 내용을 각국의 국내법에 도입하여 사실상 시행하였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전통적으로 FOB주의를 채택해 온 국가는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브뤼셀평가협약에 의한 관세평가는 국제표준으로서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를 남긴 결과가 되었다.

1973년부터 시작된 GATT의 제7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쿄라운드에서 브뤼셀평가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평가협정 제정 추진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1979.4.12에 이른바 「GATT 관세평가협정」이 채택됨으로써 최종 타결을 보게 되었다. 「GATT 관세평가협정」은 그 정식 명칭인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서 알 수 있듯이 GATT 제7조 규정의 통일적 이행을 목표로 하는 브뤼셀평가협약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GATT 관세평가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종래 브뤼셀평가협약 시대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협정의 제정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은 사실이나, 협정 가입 자체가 각 나라의 재량에 달려 있어 모든 나라가 이 협정에 가입⁵⁾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여전히 국제표준으로서의 실효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GATT 관세평가협정」이 관세평가의 국제적인 표준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1986년~1994년)에서는 동 규정을 재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존 협정의 구성방식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며, 정식명칭은 「GATT1994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⁶⁾이나, 실무상 「WTO 관세평가협정」(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으로 불려진다. 이 협정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실체인 평가규칙(제1방법~제6방법)에서 종전의 「GATT 관세평가협정」과 동일하다. 그러나 「GATT 관세평가협정」이 독립된 개별협정인데 비해 「WTO 관세평가

5)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직전인 1994년도 현재 체약국은 35개(EC 포함)

6) 외교부-외교정책-조약정보-다자조약, <https://treatyweb.mofa.go.kr/legsTreatyDetailInqyWinCall.do>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nex1[국회동의 1994.12.16. 우리나라 발효일 1995.1.1.(조약 1265)]

협정」은 「WTO 설립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⁷⁾의 부속협정이라는 점에서 협정으로서의 지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GATT 관세평가협정」은 체약국에 한하여 이행의 책임을 지는데 반해 이 협정의 경우는 모든 WTO 회원국⁸⁾이 자동적으로 이행의무를 진다는 뜻이 된다.

「WTO 설립협정」은 WTO 설립에 관한 규정과 WTO협정 전반에 대한 총칙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설립협정 본문(16개 조항)과 부속서로서 WTO 전(全) 회원국에 적용되는 18개 다자간 무역협정(부속서 1,2,3)⁹⁾ 및 협정 수락국들에게만 적용되는 4개 복수국간 무역협정(부속서 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와 같다. 동 협정에 부속된 GATT협정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legally distinct) GATT1947과 GATT1994¹⁰⁾로 나누어진다. 「WTO 관세평가

7) 외교부 Website, <https://treatyweb.mofa.go.kr/legsTreatyDetailInqyWinCall.do>, 2024.1.30. 방문

상태 : 발효

분야 : 무역/통상/산업

조약명 :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채택일자 및 장소 : 1994년 04월 15일마라케쉬에서 작성

기탁처 :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발효일 : 1995년 01월 01일

국무회의심의 : 1994년 06월 20일 [26] 회

국회동의 : 완료 1994년 12월 16일 (제170회 국회 제19차 본회의)

기탁일 : 1994년 12월30일

우리나라 발효일 : 1995년 01월 01일 (조약 1265)

관보게재일 : 1994년 12월 31일

수록문헌 : 다자조약집 제12권

부속서 : 아래는 동협정의 부속서로서 동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됨.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농업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Agriculture)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선적선 검사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긴급수입 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afeguard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무역정책검토제도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8) WTO회원국은 1995년 말 115개국, 2023.12.31. 현재 164개국이다.

9) 현재는 2017.2 발효된 Agreement Trade Facilitation이 추가되어, 총 18개 다자간 협정이 있다.

협정」은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으로서, 외교부에 따르면 “동 협정의 부속서로서 1995.1.1.자로 우리나라에 발효(조약 1265)되었다”고 발표¹¹⁾하고 있다.

〈표 2〉 「WTO 설립협정」 부속서의 구성

<p>Annex 1</p> <p>Annex 1A 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p> <p>GATT 1994</p> <p>(a) GATT 1947</p> <p>(b) The provisions of the legal instruments set forth below</p> <p>(i) protocol and certifications relating to tariff concessions;</p> <p>(ii) protocol of accession;</p> <p>(iii) decisions on waivers granted under Article XXV of GATT 1947</p> <p>(iv) other decis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GATT 1947;</p> <p>(c) The Understandings set forth below</p> <p>(i) Other duties and charges (GATT Art. II : I(b)), Understanding</p> <p>(ii) State trading enterprises (GATT Art. XVII), Understanding</p> <p>(iii) Balance-of-payments, Understanding</p> <p>(iv) Regional trade agreements (GATT Art. XXIV)</p> <p>(v) Waivers of Obligations, Understanding</p> <p>(vi) Concession withdrawal (GATT Art. XXVIII), Understanding</p> <p>(d) Marrakesh Protocol to the GATT 1994</p> <p>Agreement on Agriculture</p> <p>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p> <p>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terminated on 1.1 2005)</p> <p>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p> <p>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p> <p>Agreement on Anti-dumping (Article VI of GATT 1994)</p> <p>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Article VII of GATT 1994)</p> <p>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p> <p>Agreement on Rules of Origin</p> <p>Agreement on Import Licensing</p> <p>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p> <p>Agreement on Safeguards</p> <p>Annex 1B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p> <p>Annex 1C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p> <p>Annex 2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p> <p>Annex 3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p> <p>Annex 4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p> <p>Annex 4(a)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p> <p>Annex 4(b)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p> <p>Annex 4(c) 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terminated end 1997)</p> <p>Annex 4(d) 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p>

출처 : WTO

10) WTO 출범과 함께 본래의 GATT(GATT1947)는 그동안의 개정사항을 묶어 GATT1994로 명칭을 바꾸어 WTO설립협정의 부속협정으로 수용되었다. 1994년도 GATT라고도 불리운다.

11) 주석 7) 참조

GATT1947은 1947.10.30. 성립된 원래의 GATT협정으로서 WTO 설립 이전에 개정(수정)된 규정이고, GATT1994는 GATT1947을 포함하여 WTO 설립 이전에 발효한 ‘관세양허와 관련한 의정서와 증명서’ 등 4개 법률문서의 규정, ‘기타의 관세 및 부담금에 관한 제2조 제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등 6개 양해(Understanding) 및 마라케시 의정서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GATT1994를 구성하는 (GATT1947을 제외한) 4개 법률문서, 6개 양해 및 마라케시 의정서는 GATT1947을 새로이 해석하거나 보완 또는 변경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국 간의 합의로서, 사실상 GATT1947 규정에 대한 개정의 효력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GATT1994는 앞의 4개 법률문서, 6개 양해 및 마라케시 의정서와 이들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남은 (아직도 유효한 조문으로 구성된) GATT1947 규정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ATT1947은 이들 4개 법률문서, 양해 등과 상충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관세평가에 대하여 정하는 제7조는 원래의 GATT 제7조이므로 GATT1947 규정의 일부이다. 그럼에도 이를 GATT1994 제7조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본대로 GATT1994를 구성하는 4개 법률문서, 양해 등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의 GATT1947 제7조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형식상 현재로는 GATT1947 제7조는 관세평가의 유효한 법원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GATT1994를 구성하는 4개 법률문서, 양해 등은 관세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GATT1994 제7조와 GATT1947 제7조간에 내용상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GATT1994와 「WTO 관세평가협정」은 그 자체로 독립된 개별협정이 아니고 각각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인 점이 서로 같다. 외교부에서 발표¹²⁾한 바와 같이 「WTO 설립협정」은 조약이므로 그 부속협정인 GATT1994 제7조와 「WTO 관세평가협정」도 조약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이 양자가 정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어느 쪽 규정이 우선하는지에 대하여 「WTO 설립협정」은 그 부속서 1A에 대한 일반주해에서 “GATT1994의 규정과 부속서 1A의 그 밖의 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충의 범위 내에서 그 밖의 협정 규정이 우선한다¹³⁾”라고 하여 「WTO 관세평가협정」의 우선적 효력을

12) 주석 7) 참조

13)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a provision of the GATT 1994 and a provision of another agreement in Annex 1A to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 the provision of the other agreement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conflict. (general interpretative note to Annex 1A) 1994년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규정과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협정(부속서 1가의 협정에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의 부속서 1가의 그 밖의 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 우선순위는 「WTO 관세평가협정」(GATT1994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GATT 관세평가협정」(GATT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¹⁴⁾ 순서로 적용하며,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인 「WTO 관세평가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GATT1947 틀 내에서 설립된 기구의 결정, 절차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⁵⁾.

「GATT 관세평가협정」은 1981.1.1. 발효되었으나, 개도국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5년간의 시행유보기간이 경과한 1986.1.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0.12.5.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81.2.6. 발효(조약 729)되었으며, 1983.12.29. 관세법 개정안(법률 제3666호)¹⁶⁾에 반영되어 1984.7.1.부터 시행되었다. 동 내용은 GATT체제가 1995.1.1. WTO라는 국제기구 신설로 이어져 「WTO 관세평가협정」으로 대체되었을 뿐 관세평가관련 실체규정은 현재의 관세법 규정과 동일하다.

그 밖의 협정 규정이 우선한다.

- 14) 과거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의 의정서」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3부속서에 의하여 조문의 구성방식만 바뀐 채 사실상 내용의 변경없이 수용되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8년, p288)
- 15) WTO 설립협정 제16조 기타조항 Article XVI Miscellaneous Provisions
1. 이 협정 또는 다자간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도 GATT 계약국단 및 1947년도 GATT의 틀 내에서 설립된 기구의 결정, 절차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or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the WTO shall be guided by the decisions, procedures and customary practices follow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to GATT 1947 and the bodies established in the framework of GATT 1947. Page 18
 2. 실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1947년도 GATT 사무국이 세계무역기구의 사무국이 되며 이 협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각료회의가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1947년도 GATT 사무총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된다.
 2. To the extent practicable, the Secretariat of GATT 1947 shall become the Secretariat of the WTO, and the Director-General to the CONTRACTING PARTIES to GATT 1947, until such time as the Ministerial Conference has appointed a Director-Genera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VI of this Agreement, shall serve as Director-General of the WTO.
 3. 이 협정의 규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3.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a provision of this Agreement and a provision of any of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the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conflict.
 4.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부속 협정에 규정된 자기나라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한다.
 4. Each Member shall ensure the conformity of its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with its obligations as provided in the annexed Agreements.
- 16) (개정이유)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국제협정에 맞추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신평가제도를 도입함.

1947년 GATT 협정이후 관세평가제도 국제표준의 변천 과정 및 국내법 수용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으며, 「WTO 관세평가협정」이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으로서 「헌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조약임은 분명하다.

〈표 3〉 관세평가제도 국제표준의 변천

구분	GATT협정 (제7조 관세목적의 평가) *Article VII Valuation for Customs Purpose	관세목적을 위한 물품 평가 협약 (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	GATT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1994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약칭	브뤼셀평가협약 (BDV, Brussels Definition of Value)	GATT 관세평가협정 (GATT Customs Valuation Agreement)	WTO 관세평가협정(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다자 조약	국회동의	1967. 3.10	1968. 4.16	1980.12. 5	1994.12.16
	우리나라 발효일	1967. 4.14	1968.10. 2	1981. 2. 6	1995. 1. 1
	조약번호	243	283	729	1265
	종료일		외무부고시 제76호 (1982.4.28.)		
관세법 수용			법률 제3666호 - 개정 : 1983.12.29. - 시행 : 1984.7.1.		

출처 : 연구자가 정리

「WTO 관세평가협정」은 총 4부 24조의 본문규정과 3개 부속서[부속서1(주해 Interpretative Note), 부속서2(관세평가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부속서3(1981년 발효한 협정의정서, Protocol to the Agree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령은 직접 「WTO 관세평가협정」에 포함된 관세평가 실체규정을 따짐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의 구체적인 평가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협정에 근거하여 관련 국내법령의 규정을 해석하거나 협정규정을 직접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방법별 원칙과 기준, 용어의 정의 등 관세평가의 실체적 규정을 정하고 있는 본문의 제1부 ‘관세평가규칙(Rules on Customs Valuation)’과 부속서1인 주해 및 부속서3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정정식, 2020).

2. 판례 등 사법부의 실행을 통해 본 조약 여부

헌법재판소 97헌바65(1998.11.16.) 결정에 의하면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라케쉬협정(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설립협정)도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거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가중된 처벌을 하게 된 구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나 농안법 제10조의3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WTO 설립협정」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부속협정인 「WTO 관세평가협정」도 조약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2004추10(2005.9.9.) 판례에서도 WTO 설립협정이 조약임을 확인 확인할 수 있는데, 동 판례에 의하면 “GATT는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WTO협정(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AGP’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7. 1. 3. 공포·시행된 조약(조약 1363호,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으로서 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하고 있다.

상기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WTO 설립협정」은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조약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협정의 부속협정으로서 다자간협정(Multilateral Agreement)인 「WTO 관세평가협정」도 조약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Ⅲ.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및 해석원칙에 관한 연구

1. 개요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다른 나라들과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해 왔다. 정부 수립 후 2023년 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505건(양자 2,763건, 다자 742건)이며, 이 중 1960년 이전 13년간 발효된 조약은 102건(양자 66건, 다자 36건)에 불과한 반면 2011~2023년까지 13년간 발효된 조약은 758건(양자 630건, 다자 128건)으로 2000년대 들어 조약 체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이종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 등은 경제·사회·사법 등 제반 분야에 있어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사법 분야 공조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외교부, 2024).

〈표 4〉 정부 수립 이후 조약 체결 건수 추이(발효 기준)

(건수)

연도	48-60	61-70	71-80	81-90	91-00	01-10	11-23	소계
양자	66	229	329	329	531	649	630	2,763
다자	36	63	93	116	135	171	128	742
계	102	292	422	445	666	820	758	3,505

출처 : 외교부 조약과(2023.12.31. 기준)

2.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및 해석원칙에 관한 연구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라는 주제하에 아주 오래전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제1항가목에서 “단일 문서에 또는 두 개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명칭이 어떠하든,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 합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¹⁷⁾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17)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

국내법과 같은 효력¹⁸⁾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해 헌법은 아무런 명시적인 언급도 하지 않으므로 해석을 통해 정해져야 할 사안이다(남복현, 2008). 「헌법」 제6조제1항의 구체적 의미 역시 문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적 실행을 통해 확립될 대상이다. 「헌법」 제6조제1항은 조약의 효력을 우리 국내법과 같이 인정하겠다는 ‘국제법 존중주의’를 천명한 조항으로, 그 자체로 국제법인 조약과 국내법을 상호 조화롭게 해석·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외교부, 2023).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첫째, 조약이 국내 법원에서 직접 재판의 근거로 적용될 수 있는가? 둘째, 직접 적용되는 경우 조약은 국내법상 어떠한 위계에 속하는가?에 대하여 검토되어진다.

조약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하며(외교부, 2023), 조약이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크게 수용과 변형 2가지로 설명된다. 수용(incorporation)은 조약이 조약의 자격 그대로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법원은 조약을 근거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를 흔히 일원론 국가라고 한다. 반면 변형(transformation)이란 조약이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같은 내용의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국내법의 자격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입장을 통상 이원론 국가라고 부른다. 한국 사법부에서는 조약 내용이 수용이나 변형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헌법」 제6조제1항의 해석상 조약이 수용의 방식으로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정인섭, 2015). 조약이 국내 법원에서 직접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도 오래 전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다.¹⁹⁾ 국내 사법부에서 국내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조약을 직접 근거로 판결을 내린 사례는 적지 않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18) 국내법과 같은 효력에 대하여 판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97헌바65, 1998.11.26. /2004헌마889, 2004.12.14.) /2010헌마111, 2010.10.28. /2006헌마788, 2011.8.30. /2010헌마606, 2014.5.29./대법89후1479, 1990.7.24), 법률과 같은 효력(대법 82다카1372, 1986.7.22. /대법2005다30184, 2006.4.28. /고법96나37321, 1998.8.27.), 법률적 효력(2012헌마166, 2013.11.28. /2002헌마611, 2003.4.24), 법률에 준하는 효력(2000헌바20, 2001.9.27.),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대법 2004추10, 2005.9.9.)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인다.
- 19) 정인섭,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국내 판례와 학설의 검토(2015.6.20.), p29

〈표 5〉 조약을 직접 근거로 판결을 내린 사례

판례번호	판결내용
대법 82다카1372 (1986.7.2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정부도 가입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조약 제259호, 1967.10.11)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고법 96나37321 (1998.8.27.) *확정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하여 우리 나라 헌법은 전문에서 “... 우리 대한민국은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라고 선언하고, 나아가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을 우리 나라 국내법의 일부로 수용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에 대하여 국내 법률인 민법과 국제법(조약)인 협약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면서 함께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국내법과 국제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우열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인데,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민법보다 신법임은 역수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협약은 그 규율 대상을 국제항공운송 및 그 관련자에 한정하고 있어 민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이 되므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바르샤바협약이나 헤이그의정서는 국제항공운송의 증대와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사법(사법) 원칙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유효한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고(제26조 ²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제27조 ²¹⁾), 조약은 당사국의 전체 영역에 관하여 당사국을 구속하는 것(제29조 ²²⁾)이므로, 비록 항공기의 출발지인 미국이 바르샤바협약에만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이 내국인들에 대하여 우리 나라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한 조약인 협약을 그대로 적용함은 당연하고, 결국 민법과 서로 충돌하는 한도에서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1983. 9. 1. 구 소련령 사할린 앞바다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007기의 운항에 있어서 승객인 사망자들의 운송에 관하여는 민법과 충돌하는 한도에서 특별법인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고 승무원인 사망자들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97헌바65 (1998.11.26.)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라케쉬협정도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거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가중된 처벌을 하게 된 구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나 농안법 제10조의3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법 2001나11385 (2001.7.24.) *확정	우리 나라가 “1929. 10. 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에 1967. 1. 28. 가입하고 1967. 10. 11. 조약 제259호로 이를 공포함으로써 “1929. 10. 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1955.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0헌바20 (2001.9.27.)	가. 조약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법률”에는 “조약”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대상이 된다고 전제하여 그에 관한 분안판단을 한 바 있다(헌재 1999. 4. 29. 97헌가14, 판례집 11-1, 273 참조). 이 사건 조항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의 정도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라고 이해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 2002다32523 (2002.10.22.)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이고 원고는 계약운송인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에 관하여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요해나 변론주의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번호	판결내용
대법 2001다67164 (2004.7.2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는데,
대법 2004추10 ²³⁾ (2005.9.9.)	GATT는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WTO협정(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AGP'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7. 1. 3. 공포·시행된 조약(조약 1363호,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으로서 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 2005다30184 (2006.4.28.)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고 한다)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고법 2009누8016 ²⁴⁾ (2010.2.12.) (대법2010두5950 (2012.1.27.))	<p>(가)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관계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나아가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p> <p>한편, 조세조약은 체결국 사이의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체결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바,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하게 되며,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용어는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국내 세법의 규정에 내포된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p> <p>(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약 엄격해석의 원칙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이나 면세요건 등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제27조, 제31조는 "조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되며, 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의 일종인 조세조약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p>
고법 2017누70931 (2018.8.29.)	1994년도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협정)은 1994.12.16.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1994.12.31. 공포됨으로써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바, WTO협정의 일부로서 WTO 관세평가협약의 기초가 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7조에 의하더라도 '관세목적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품(product 또는 merchandi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WTO 관세평가협약의 '물품(goods)' 역시 원칙적으로 '물리적 실체를 가진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출처 : 연구자 발췌, 정리(헌법재판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Website)

- 20)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발효 중인 모든 조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 21)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당사자는 자신의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자신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이 규칙은 제46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22)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9조(조약의 영역적 적용범위) 다른 의사가 조약에 나타나거나 달리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은 각 당사자의 전체 영역에서 그 당사자를 구속한다.
- 23) 같은 내용의 판결 내용 : 대법 2004추72(2008.12.24.)
- 24) 같은 내용의 판결 내용 : 고법2010누755(2010.10.28.)(대법2010두25466, 2012.10.25.)), 고법2010누762(2011.2.17.), 지법2007구합43419(2009.5.29.)

상기 판례 및 결정례들을 통하여 「헌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사법부의 실행을 분석·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관련 사법당국의 판단 분석

구분	사법당국 판단	결정·판례
1	헌법이 조약보다 상위 규범이라는 점에 헌법재판소는 일관된 지지를 표하고 있음	2000헌바20(2001.9.27.)
2	조약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사법부는 조약을 직접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음	97헌바65(1998.11.26.) 고법96나37321(1998.8.27.)
3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이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법률의 효력)을 지닌다는 점	2000헌바20(2001.9.27.) 대법2004추10(2005.9.9.) 고법 2017누70931(2018.8.29.)
4	국내법과 국제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조약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비하여 특별법적 우선 지위를 가지고 있음	대법82다카1372(1986.7.22.) 고법96나37321(1998.8.27.) 고법2001나11385(2001.7.24.) 대법2002다32523(2002.12.22.) 대법2005다30184(2006.4.28.) 고법2009누8016(2010.2.12.)
5	해석에 있어 조약에 정의되지 않는 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제3절 조약의 해석 ²⁵⁾)에 따르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적용되지 않음	고법2009누8016(2010.2.12.) *주석 32 고법2010누755(2010.10.28.) 고법2010누762(2011.2.17.) 지법2007구합43419(2009.5.29.)

출처 : 연구자가 정리

25) 제3절 조약의 해석

제31조(해석의 일반 규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에서 그리고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 해석의 목적상, 문맥은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 조약문에 추가하여 다음으로 구성된다.
 - 가. 조약 체결과 연계되어 모든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 나. 조약 체결과 연계되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작성하고, 다른 당사자가 모두 그 조약에 관련된 문서로 수락한 문서
3. 문맥과 함께 다음이 고려된다.
 - 가. 조약 해석 또는 조약 규정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 후속 합의
 - 나. 조약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증명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후속 관행
 - 다. 당사자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 규칙
4. 당사자가 특정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32조(해석의 보충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거나, 제31조에 따른 해석 시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준비작업 및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 가.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 또는
- 나. 명백히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33조(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로 정본인증된 조약의 해석)

3. 시사점

외교부 발표 및 사법당국의 실행을 통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WTO 관세평가협정」이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인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은 분명하며,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결정 및 판례에서도 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법과 조약인 국제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조약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비하여 특별법적 우선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석에 있어 조약에 정의되지 않는 한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야 하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
1. 조약의 정본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로 인증되었을 경우, 차이가 있다면 특정 조약문이 우선함을 그 조약이 규정하고 있거나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언어본의 조약문은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2. 정본인증된 조약문 상 언어 중 하나의 언어 이외의 언어로 된 조약본은 조약이 이를 정본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한 경우에만 정본으로 간주된다.
 3. 조약의 용어는 각 정본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추정된다.
 4. 제1항에 따라 특정 조약문이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본의 비교에서 제31조 및 제32조의 적용으로 해소되지 않는 의미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고려하여 각 조약문과 최대한 조화되는 의미를 채택한다.

IV. 「관세법」 관세평가 조문 해석 사례 적용 연구

1. 개요

「헌법」 제38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바, 관세법에는 4대 과세요건인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를 조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며, 조세법에는 4가지를 반드시 규정하고 있다. 4대 과세요건에서 관세법 제15조 관세의 과세표준 중 가격 즉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에 조약인 「WTO 관세평가협정」을 수용하여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표 7〉 관세법에 규정된 4대 과세요건 관련규정

구분	관세법
과세물건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과세표준 (종가세)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세율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납세의무자	제19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출처 : 연구자가 관세법 조문에서 발췌

〈표 5〉의 고법 2009누8016(2010.2.12.)에 의하면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하게 되며,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국내 세법의 규정에 내포된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로 판결하고 있다.

동 판결을 관세평가 실체규정에 적용하여 보면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표준 중 가격(중가세) 즉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WTO 관세평가협정」을 수용하여 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이하 ‘관세평가 실체규정’이라 한다)에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법인 「관세법」의 관세평가 규정과 국제법인 조약으로서 「WTO 관세평가협정」과 해석 및 적용상 충돌시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를 II 장 및 III장의 연구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²⁶⁾[2020두51242, 2021.2.4.(서울고등법원 2019누53961, 2020.9.23.)](이하 ‘대상판례’라 한다)에 적용함으로써 동 대상판례의 해석적용 방법이 문제가 있음을 고찰한다.

〈표 8〉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 관세평가 조문 비교표

WTO 관세평가협정	관세법
제1조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2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4조	제33조 단서
제5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6조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8조	제30조 제1항

출처 : 연구자가 정리

2. 적용 대상판례에 대한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적용 연구

1) 적용 대상판례

적용 대상판례는 판매자(수출자)가 구매자(수입자)가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형태(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조건, 보세창고도 조건)의 거래에 대하여, 동 거래에서의 판매가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의 그 물품에 대하여²⁷⁾’ 및 이를 수용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대법 2020두51242(2021.2.4.)에 대하여 고찰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심리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동 법 제5조(판결의 특례)에 의거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 내용으로 함.

27) for the goods when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하고자 한다. 동 대법원 판례는 심리 불속행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일단 원심 판결의 내용을 수긍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고법 2019누53961, 2020.9.23.)²⁸⁾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라. 판단

1)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증개료(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등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정하는 방법(제1방법)을 가장 원칙적이고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하 ‘수출판매 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하고 있다.
- (2) 한편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조약 제243호)(위 규정은 WTO체제로 대체 편입된 ‘GATT 1994’의 해당 내용과 동일하다.) 제7조 제2항 (a) 및 (b)는 ‘수입상품의 관세상 가액은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실제가격에 따라야 하며, 실제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 상품 또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1994.12.30.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속하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 (3)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규정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7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WTO 관세평가협정의 해석기준으로서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평가기술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의견(이하 ‘이 사건 권고의견’이라 한다)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권고의견은 1.1.Ⅲ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수입 후 물품을 판매하는 중개인이 수입하는 물품’ 규정에서 ‘공급자와 고객 간에(때로는 대리인과 고객 간에 명목상) 이미 체결된 판매계약에 따른 공급을 위한 대행수입은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따른 평가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는 거래를 구성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14.1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표현의 의미’ 규정에서는 ‘수출판매에 해당하기 위해 그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으나,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involving an actual international transfer of goods)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 - (중략) - - -

나. 판단

(1) ‘수입’의 의미

먼저, 피고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하는 물품’은 국내(보세구역 포함)에 반입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의 물품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를 넘어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야 비로소 ‘수입하는 물품’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수입’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살펴건대, 위와 같은 관세법과 조약 및 관계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수입하는 물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된 단계의 물품을 의미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단계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8) 원심 판결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수입'에 관하여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은 제2조 제5호 (가)목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참조). 그런데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수출판매 물품'에서 제외하여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또한 관세법에 의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대한민국 내의 보세구역 내에 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수입자인 원고의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됨으로써 비로소 수출자나 그 대리인이 아닌 원고에 의해 수입된 물품이 된다고 할 것인 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보관되는 상태에 있을 동안의 이 사건 물품을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관세법은 제7장 제3절에서 '특히보세구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83조 제1항에서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외국물품 등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관세법 제188조는 보세공장의 제품과세에 관하여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수입된 물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세법 전체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지 않는 한, '수입된 물품'이 아닌 단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이에 관하여 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수입'의 의미는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인 반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관하여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라는 취지로 규정한 이 사건 권고의견에서의 '수입'의 의미는 관세법 제30조에 규정한 가격의 판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관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서의 '수입'의 의미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는 해당 법률에 정의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도2615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의 법률 및 시행령에서 같은 문언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수입' 및 '외국물품'에 관하여 정의한 관세법 규정 및 관세 법령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입'의 의미가 내국물품에 관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단계와 가격의 판정 기준 단계로 구분되어 달리 해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권고의견' 14.1이 '수입'을 '어떤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가져오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가 있고, 수입자가 검토 중에 있는 판매가 수출할 목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것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관세영역"이란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는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관세영역'에 대하여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은 제외된다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기도 한바, 이러한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영역'이 어느 경우이나 반드시 보세구역을 포함한 국내 전(全)영역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관세영역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 또한 관세의 부과 대상인지, 수입통관을 거쳤는지, 거래 전반을 통해 물품의 국제적인 이동이 이루어졌는지와 해당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나 해당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 등과 무관하게, 오로지 국경선만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물품이 수출판매 물품에서 제외되는지

- - - (중략) - - -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수입물품’ 및 ‘수출판매 물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 (이하생략) - - -

상기 판례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를 먼저 검토(①,②)하고, 이후에 관세법 제30조제1항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조문만을 검토한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인 세관의 적용 조문과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적용 조문 그리고 이를 판단한 사법당국의 인용 판단을 적용한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세관은 「WTO 관세평가협정」과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지침인 권고의견 14.1²⁹⁾을 적용하여 주장하고, 원고 및 사법당국은 관세법 제2조 제1호(수입) 및 제4호(내국물품), 제5호(외국물품)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조항과 관련 판례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29) WCO 권고의견 14.1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표현의 의미

(1986.3.8. 제9차 회의에서 채택, 1986.3.7. 제11차 회의에서 6개 예시 추가)

1. 협정 제1조의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이란 표현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관세협력이사회의 국제관세용어사전에서 수입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가져오는 행위”로, 수출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품을 관세영역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가를 위하여 물품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해당 물품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해당 물품의 수출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 하나 남은 요건은 그와 관련된 거래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수입자가 검토 중에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매(the immediate sale under consideration)가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1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involving an actual international transfer of goods)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 방법으로 물품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고법 2019누53961 판례에 나타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분석

구분	피고	원고	사법당국	
			적용 법령 및 인용 판례	판단
수입 정의	-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 WCO 권고의견 14.1	관세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제5호	- 관세법 제2조 - 대법 2019도6588 (2019.9.9.) - 대법 2018도2615 (2018.6.15.)	-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는 해당 법률에 정의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 '수입'의 의미가 내국물품에 관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단계와 가격의 판정 기준 단계로 구분되어 달리 해석된다도 보기도 어렵다.
관세영역 정의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표현의 의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입법례 등에 비추어보면, '관세영역'이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보세구역을 포함한 국내 전(全)영역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국경선만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 연구자가 정리

따라서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 어떤 조항은 관세법상 정의 규정에 따라, 또 다른 조항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 즉, 「WTO 관세평가협정」을 국내법령으로 수용한 관세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 규정으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대상판례에 대한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적용 방안 검토

대상판례에 대하여 상기에서 설명한 제Ⅲ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적용함에 있어, 첫째 조약의 적용방식측면 고찰, 둘째 법률적용 우선원칙 고찰, 셋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해석방법 적용 고찰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이를 대상판례에 실시된 국내법 정의 조항의 적용상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조약의 적용방식측면 고찰

조약이 국내적으로 작용되는 방식은 크게 수용과 변형 2가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6조제1항의 해석상 조약이 수용의 방식으로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관세법에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서 제8조의 관세평가실체규정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WTO 관세평가협정」을 조약의 자격 그대로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국내 법원은 조약을 근거로 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또한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인 GATT1994에 포함된 GATT1947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체약국들은 이 조 다음 각 항에 명시된 평가의 일반원칙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가격에 기초하거나 어떠한 방식이든 가격에 의하여 규율되는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관세, 그 밖의 과징금 또는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동 원칙을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목적의 가격에 관련된 자신의 어떠한 법률 및 규정의 운영도 동 원칙에 비추어 검토한다. 체약국단은 개별 체약국에 이 조의 규정 에 따라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³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관세법」 관세평가 실체규정은 법률 제3666호로 개정(1983.12.29.) 신설되어 1984.7.1.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WTO 관세평가협정」은 조약 1265로 1995.1.1.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의 관세평가 실체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약인 「WTO 관세평가협정」을 우선하여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나. 법률적용 우선원칙 고찰

국제법 규범이 국내법질서로 수용됨에 따라 국제법규범은 국내법체계상 위상을 설정받게 된다. 그에 따라 규범 상호간의 충돌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한다(남복현, 2008). 「헌법」 제6조 제1항에는 구체적으로 국내법으로 수용된 국제법과 조약들이 법의 상하관계 안에서 어느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조약이 바로 국내법 질서의 일부를 형성하는 체계에서는 조약과 국내법 간에 내용상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충돌은 법 적용의 일반원칙인 상위법 우선 원칙과 특별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 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도경옥, 2014). 이러한 원칙 중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원칙은 규범 상호간의 대등한 위상을 전제로 한다. <표 5>의 82다카1372(1986.7.22.)등 여러 판례는 물론, 고

30) 1.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valuation set forth in the following paragraphs of this Article, and they undertake to give effect to such principles, in respect of all products subject to duties or other charges or restrictions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based upon or regulated in any manner by value. **Moreover, they shall, upon a request by another contracting party review the operation of any of their laws or regulations relating to value for customs purposes in the light of these principles.** The CONTRACTING PARTIES may request from contracting parties reports on steps taken by them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법2006토13³¹⁾(2006.7.27.)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첫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에도 일정한 단계가 존재하기에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한 나라의 법체계는 근본법으로는 헌법이 있으며, 헌법의 규정 및 위임으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부나 대통령 및 행정부가 제정하는 명령이 있고, 그 밑으로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즉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의 순서로 적용되므로 만약 어떤 국제법이나 조약이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면 이는 하위인 기타 법령보다는 우선시되지만 헌법과 충돌시에는 상위법인 헌법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후법(신법) 우선의 원칙은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그 내용이 바뀐다면 이전에 적용되는 구법이 아니라 새롭게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그 전제는 신법과 구법이 동일한 형태의 법률일 때 가능하다. 셋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은 그 법의 적용이 모든 사항과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법은 일반법과는 다르게 적용 영역이 한정되어서 적용되는데, 특수한 사정이 발생시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 우선원칙은 별론으로 하고, 「WTO 관세평가협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후법(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찰해본다.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의 지위를 가지므로 설사 국내법률을 정비하지 않더라도 조약이 특별법 또는 후법의 자격으로 우선 적용될 수 있다(정인섭, 2015). <표 5>의 고법96나37321(1998.8.27.)에 따르면 “우리 국민에 대하여 국내 법률인 민법과 국제법(조약)인 협약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면서 함께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국내법과 국제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우열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인데,”라고 설시하고 있다. 조약이 특별법에 해당하는 기준을 택함으로써 조약을 우선시키는 것이 국제법 존중주의에 부합한다는 견해도 있다(양건, 2007).

이에 대하여 신법 우선의 원칙을 먼저 살펴본다. 1981.1.1. 「GATT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GATT 관세평가협정」)이 발효되고 우리나라는 1981.1.6. 동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31)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사이에 2003. 9. 15. 체결하여 2005. 4. 19. 발효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법률해석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위 인도조약이 범죄인인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개도국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5년간의 시행유보기간이 경과한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1983.12.29. 관세법 개정시 개정안(법률 제3666호)에 반영되어 1984.7.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1995.1.1. WTO가 설립되어 「GATT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은 「GATT1994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WTO 관세평가협정」)으로 개정되었고, 「WTO 관세평가협정」은 현재의 「관세법」보다 후법으로서 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서도 「WTO 관세평가협정」이 국내법인 「관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WTO 관세평가협정」은 조약으로서 관세법에 규정된 내용에 비추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국내 사법부에서 국내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조약을 직접 근거로 판결을 내린 <표 5>의 대법원 2005다30184(2006.4.28.)의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의 판결³²⁾과 고법 2009누8016(2010.2.12.)³³⁾의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나아가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을 보면 특별법 우선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TO 관세평가협정」은 「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 규정된 관세평가규정과 상충될 때에는 「WTO 관세평가협정」이 특별법적인 지위에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해석방법 적용 고찰

대상판례에 따르면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규정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7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WTO 관세평가협정의 해석기준으로서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평가기술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의견(이하 ‘이 사건 권고의견’이라 한다)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³⁴⁾”고 실시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정」

32) 현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항공운송”에 관한 국내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33) 같은 판결 내용 : 대법82다카1372(1986.7.22.), 고법96나37321(1998.8.27.), 고법2001나11385(2001.7.24.), 대법2002다32523(2002.12.22.)

34) 같은 판결 내용 : 고법 2015누20312(2015.7.3.)<대법 2015두49320(2017.4.7.) 확정>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orld

제18조(기구)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관세평가위원회(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를,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실무명칭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의 주도로 관세평가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³⁵⁾하고 있으며, 동 협정 부속서 II는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³⁶⁾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한다)의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를, 관세법 시행령 제17조는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1을 그대로 국내법에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관세법 시행령 제17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WTO가 WTO 관세평가협정의 해석기준으로 제시한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5) PART II ADMINISTRATION, CONSULT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Article 18 Institutions

1. There is hereby established a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the Committe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of the Members.

1. 이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관세평가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2.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Technical Committee”) under the auspices of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the CCC”), which shall carry out the responsibilities described in Annex II to this Agreement and shall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contained therein.

2. 관세협력이사회(이 협정에서는 “CCC”라 한다)의 주도로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이 협정에서는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기술위원회는 이 협정 부속서 II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고 부속서 II에 포함된 절차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36) ANNEX II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부속서 II 관세평가 기술위원회

1.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is Agreement, the Technical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CCC with a view to ensuring, at the technical level, uniformity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1. 이 협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적 차원에서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협력이사회(CCC) 주도로 기술위원회를 설치한다.

2. The responsibilities of the Technical Committe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2. 기술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to examine specific technical problems arising in the day-to-day administration of the customs valuation systems of Members a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appropriate solutions based upon the facts presented;

(a) 회원국 관세평가 제도의 일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기술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시된 사실에 근거한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한 권고의견 제공.

(b) to study, as requested, valuation laws, procedures and practices as they relate to this Agreement and to prepare reports on the results of such studies;

(b)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과 관련이 있는 평가법령, 절차 및 관행을 연구하고 그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 to prepare and circulate annual reports on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operation and status of this Agreement;

© 이 협정의 운영 및 지위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 관한 연례보고서 작성 및 배포.

(d) to furnish such information and advice on any matters concerning the valuation of imported goods for customs purposes as may be requested by any Member or the Committee. Such information and advice may take the form of advisory opinions, commentaries or explanatory notes;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제14조는 “이 협정 부속서 I의 주해는 이 협정을 구성하는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정의 해당 조항은 각각의 주해와 연관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부속서 II와 III도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³⁷⁾.”고 규정하여 부속서도 협정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WTO 관세평가위원회가 채택한 ‘결정(Decision)’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수용화하여 법령화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대법 98두1512(1998.9.4.)에 따르면 “관세와 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 (b),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항 (b), 1984. 9. 24. 제10차 GATT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4.1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 제1항, 제2항, 제3항,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제9조의4 제1항, 구 관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제2항, 제3조의6 제1항, 제2항(현행 제3조의8 제1항, 제2항), 1993. 12. 31. 개정된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 제16조 제1항, 제2항 등의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이라고 실시하고 있어,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WTO ‘결정’을 관계법령이라고 밝힌 것은 WTO ‘결정’을 재판규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
- (d)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목적 상의 평가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회원국 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와 조언의 제공, 이러한 정보와 권고는 권고의견, 예해 또는 해설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e) to facilitate, as requested, technical assistance to Members with a view to furthering the international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 (e)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의 국제적인 수용을 보다 증진할 목적으로 회원국들에 대한 기술지원 촉진
 - (f) to carry out an examination of a matter referred to it by a panel under Article 19 of this Agreement; and
 - (f) 이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패널에서 회부된 사안에 대한 조사의 수행
 - (g) to exercise such other responsibilities as the Committee may assign to it.
 - (g) 위원회가 부여하는 기타 임무의 수행

37) Article 14. The notes at Annex I to this Agreement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the Articles of this Agreement are to be read and applied in conjunction with their respective notes. Annexes II and III also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기술문서[권고의견(Advisory Opinions), 예해(Commentaries), 해설(Explanatory Notes), 사례연구(Case Studies), 연구(Studies)]들도 국제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평가협정 부속서 I에 포함된 평가협정 주해와는 달리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이 회원국의 국내법에 구체화되지 않는 한 회원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내용도 「WTO 관세평가협정」에는 없다. 즉,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기술문서들은 회원국이 국내법적으로 수용하여 법령화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기술문서들은 평가협정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평가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³⁸⁾. 참고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권고의견이나 예해 등을 수용하여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조항들은 (관세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한 사항이 아닌) 한 대외적 구속력(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관세평가 고시의 법규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세평가 고시 규정 중에서 상위 법령(관세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율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해당 관세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박영기, 2021). (대법 90누5054, 91누10763)

그러나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각 지침들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규정된 관세평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동 협정 부속서 II 제1항(주석 36 참조)의 내용처럼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관세평가 실체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WTO 관세평가협정」 본문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에 의거 해석의 보충수단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적용 대상판례 국내법 정의조항 고찰

상기에서 설명한 가, 나, 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대상판례에 적용하여 검토하여 본다. 법을 해석·적용하는데 있어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는 해당 법률에 정의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살피는 외에 그것이 해당 법률에서 어떠한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계적, 논리적으로

38) 주석 36) 참조

파악하여야 한다.”[대법 2018도2615 (2018.6.15.)]³⁹⁾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조약(또는 조약을 수용한 국내법령도 포함)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표 5>의 고법 2009누8016(2010.2.12.)[대법 2020두5950 (2012.1.27.) 확정]에 따르면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국내 세법의 규정에 내포된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제27조, 제31조는 조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되며, 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의 일종인 조세 조약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에 조문의 해석을 위한 정의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절⁴⁰⁾에 의한 해석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동법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의 의거 ‘통상적 의미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동법 제32조에 의거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또는 명백히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준비작업 및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으며, 동법 제33조에 의거 ‘조약의 용어는 각 정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추정되며,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화되는 의미를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WTO 설립협정 제16조(기타 조항)제1항은 “이 협정 또는 다자간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도 GATT 체약국단 및 1947년도 GATT의 틀 내에서 설립된 기구의 결정, 절차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이 협정의 규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세법령의 관세평가 실체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약인 「WTO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함에 있어,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인 「WTO 관세평가협정」의 해석에 영

39) 같은 내용 판결 : 대법 2013도841(2016.8.24.)

40) 주석 25) 참조

향을 주는 정의 조항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WTO 설립협정」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해석 및 정의조항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며, 마지막으로 GATT1947에 규정된 틀 내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례에 대하여 분석해보면, 판매자(수출자)의 책임으로 우리나라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보세창고도거래조건,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에 대하여 구매자(수입자)를 찾아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①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에 해당하는지, ②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의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②)의 경우는 관세법 제30조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적 사례⁴¹⁾일 뿐으로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검토해본다.

관세법 시행령의 상위법인 관세법 규정인 전자(①)에 해당된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다만,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여러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로 전제), 전자(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의 그 물품에 대하여(for the goods when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를 수용한 것이다.

첫째,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수출’과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수출’의 개념은 같으며, 관세법 제2조 정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이 아닌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둘째,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우리나라’와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수입국’의 개념은 같으며, 「관세법」 제2조 정의 조항에 ‘수입국’의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약 우선 원칙에 의하여(가. 조약의 우선 적용 고찰 참조) ‘수입국’에 대한 정의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5조제1항(b)호의 “수입국은 수입국 또는 수입 관세영역을 말한다.(‘country of importation’ means country or customs territory of importation)”라는 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41) 관세법 시행령 제17조는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지침인 권고의견 1.1(협정에서의 “판매”의 개념)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서, 동 내용에 의하면 ‘이 권고의견에 따라 준비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목록은 다음에 한정되지 않으며 경험을 고려하여 추가될 것이다.(The list prepared pursuant to this opinion is appended. It is not exhaustive and will be added to in the light of experience.)’라고 하여 7개 사례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

첫째, ‘수입국’의 정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2조의 ‘수입’의 정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수입’의 의미가 내국물품에 대한 법적지위를 취득하는 단계와 가격의 판정 기준 단계로 구분되어 달리 해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의 관세 평가 실체규정 보다 조약의 지위를 가진 「WTO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이유를 간과한 것이다.

둘째,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이 “‘수입’을 ‘어떤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가져오는 행위’로 정의한 것에 대하여 “관세영역의 정의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관세영역’이란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는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관세영역’에 대하여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은 제외된다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기도 한 바, 이러한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영역’이 어느 경우이나 반드시 보세구역을 포함한 국내 전(全)영역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로지 국경선만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이는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인 GATT(1947) 제24조에 규정된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⁴²⁾”의 정의

42) GATT 1947 제24조

영문	국문
<p>GATT: Article XXIV</p> <p><i>Territorial Application — Frontier Traffic — Customs Unions and Free-trade Areas</i></p> <p>1.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metropolitan customs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o any other customs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this Agreement has been accepted under Article XXVI or is being applied under Article XXXIII or pursuant to the 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Each such customs territory shall,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the territorial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e treated as though it were a contracting party; <i>Provided that</i>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be construed to create any rights or obligations as between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respect of which this Agreement has been accepted under Article XXVI or is being applied under Article XXXIII or pursuant to the 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by a single contracting party.</p> <p>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ustoms territory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ny territory with respect to which separate tariffs or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are maintained for a substantial part of the trade of such territory with other territories.</p>	<p>GATT 제24조</p> <p>적용영역,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 지역</p> <p>1. 본 협정의 규정은 체결국의 본토 관세영역에, 그리고 제26조에 따라 본 협정이 수락되었거나 제33조 또는 잠정적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본 협정이 적용되고 있는 기타의 관세용역에 적용된다. 이러한 관세영역은, 오직 본 협정의 영역적 적용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각기 1개의 체결국으로 취급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은 단일체약국이 제26조에 의하여 본 협정을 수락하였거나 제33조 또는 잠정적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본 협정을 적용하고 있는 2개이상의 관세영역간에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p> <p>2.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관세영역은 해당영역과 기타 영역간의 무역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독립관세 또는 기타 통상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양해한다.</p>

조항을 간과한 것이다. 동 내용에 의하면 “관세영역”은 ‘해당영역과 기타 영역간의 무역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독립관세 또는 기타 통상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영역은 자유무역지역은 물론 보세구역을 포함한 국내 전(全)영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출자의 책임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 구매자를 찾아 판매계약이 이루어진 거래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국내거래’로 판단하는 관세당국의 결정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WTO 관세평가협정과 국내법 해석을 위한 조화방안 연구 제시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을 적용하여 관세평가를 하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조약의 우선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개정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법에는 “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 조약 내용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조약 우선 국내법령

법	조문
FTA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선박안전법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3조(조약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영문	국문
3.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a) Advantages accord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djacent countries in order to facilitate frontier traffic; (b) Advantages accorded to the trade with the Free Territory of Trieste by countries contiguous to that territory, provided that such advantages are not in conflict with the Treaties of Peace arising out of the Second World War.	3. 본 협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a) 체약국이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부여하는 이익 ; (b) 트리에스트 자유영역의 인접국이 동 영역과의 무역에 부여하는 이익. 다만, 이 이익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체결된 평화조약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출처: 외교부 Website <https://treatyweb.mofa.go.kr/legsTreatyDetailInqyWinCall.do> 2024.1.15. 방문
(외교정책-조약 국제법-조약정보-다자조약)

법	조문
국제수형자 이송법	제3조(조약과의 관계) 국제수형자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과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적용한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7장 보칙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⑨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중재법	제2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發效) 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범죄인인도법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출처 : 연구자가 정리

상기 <표 10>의 조항들은 국내법률에 대한 조약의 특별법적 지위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조약과 다른 내용의 국내법률이 후법으로 제정되더라도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양자가 동등한 법원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자가 상하관계라면 특별법 우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조약과 법률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조약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의 법체계상 조약과 대등한 관계임을 표시하고 있다⁴³⁾.

「WTO 관세평가협정」은 관세평가 실제규정에 관한 한 국내법인 「관세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결정 및 판례를 통하여서도 명확하나, 이를 분명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표 10>과 같은 개정안도 필요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3) 이상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법제연구 제16호(1999년), pp189-190

V. 결 론

조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날의 한국이 단시간 내에 경제적 도약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활발한 대외교류였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안정적인 국제관계의 유지와 국제법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누구보다도 크다. 유럽에서도 대한민국과 유사한 지정학적 상황이 유사한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 같은 국가는 유독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적으로 헌법 이상의 효력도 인정한다. 이들은 역사적 체험을 통해 대외적 준수가 국가발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운영의 모든 면에 있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한국은 통상적인 국가보다 국제법의 활용과 의존에 더욱 유의해야 하며,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범세계적으로도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 해질수록 국제법에 대한 존중이 강화되는 추세이다(정인섭, 2012).

관세평가에 관한 실체적 규정을 담고 있는 「WTO 관세평가협정」을 수용한 국내법인 「관세법」 조문에 규정된 문언을 해석할 때 「WTO 관세평가협정」에 규정된 정의 조항과 「관세법」 정의 조항 중 어느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검토·연구하였다.

외교부의 발표자료 및 사법당국의 결정·판례를 통하여 「WTO 관세평가협정」의 국내법적 지위는 조약인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인 다자간무역협정으로서 「헌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법과 조약인 국제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조약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비하여 특별법적 우선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해석에 있어 조약에 정의되지 않는 한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야 하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대상판례에 적용함으로써 조약의 지위를 가진 「WTO 관세평가협정」과 이를 수용한 국내법인 「관세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첫째 조약의 적용방식측면 고찰, 둘째 법률적용 우선원칙 고찰, 셋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해석방법 적용 고찰, 넷째 판례적용 국내법 정의조항 고찰 등 4가지를 통하여 조약의 우선 적용 및 해석원칙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대상판례가 국내법 정의 조항을 적용하여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조약의 우선 적용을 통하여 관세당국의 일관성있는 해석원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추가하여

「WTO 관세평가협정」과 국내법 해석을 위한 조화방안으로서 조약에 특별법 지위를 부여한 국내법령을 소개하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WTO 관세평가협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내법과 동일한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조항과 여러 형태의 협의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해석조항, 사법절차를 통하여 확립된 법률 우선원칙의 관행을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관세평가분류원. (2021). 「WTO 관세평가협정」. 세인북스.
- 관세청. (2023). 「관세법령집」.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권현호. (2014). 국제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5(3), 209-234.
- 김대순. (2005). 「국제법론」. 삼영사.
- 남복현. (2008). 헌법 제6조 제1항의 구체적 의미. *한양법학*, 23, 191-228.
- 도경옥. (2014). 입법 조치를 통한 조약의 이행. *국제법학회논총*, 59(2), 35-63.
- 박영기. (2021). 「관세평가법」. 삼일인포마인.
- 심인혜. (2015). 조약의 발전적 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 건. (2007). 「헌법강의 I」. 법문사.
- 외교부. (2023). 「알기쉬운 조약 및 기관간 약정업무」.
- 이상철. (1999).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법제연구*, 16.
- 이진우·박언경. (2018). WTO반덤핑판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해석과 적용. *국제경제법연구*, 16(3), 39-74.
- 정인섭. (2012).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일조각.
- 정인섭. (2015).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22(1), 27-63.
- 정정식. (2020). 「관세평가」. 관세인재개발원.
- 주진열. (2009). 한국 대법원의 WTO협정 직접효력 부인. *서울국제법연구*, 16(1), 223-235.
- 주진열. (2005). GATT/WTO 협정에 위반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의 효력. *서울국제법연구*, 12(2), 21-48.
- 대법원.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외교부. <https://treatyweb.mofa.go.kr/legsTreatyDetailInqyWinCall.do>
- 조세심판원. <https://www.tt.go.kr/mUser/dem/searchDemList.do>
- 헌법재판소. <https://isearch.ccourt.go.kr/search.do?category=00>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domestic law that accepts international law

Sang-Pil Han

When interpreting the legal text prescribed in the provisions of the 「Customs Act」, a domestic law that has accepted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containing substantive provisions on customs valuation, the study reviewed and studied which of the provisions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first in the definition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nd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the 「Customs Act」.

Through the announcement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decisions and precedents of the judicial authorities, the domestic legal status of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is a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that is a subsidiary agreement of the 「WTO Establishment Agreement」, which is a treaty, and is subject to domestic law pursuant to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It has the same effect as. In addition, in case of conflict between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law, which is a treaty, the 'principle of priority of new law' or 'principle of priority of special law' is applied,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reaties, as international law, have a special legal priority status over domestic law, and are subject to interpretation. Therefore, it can be derived that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must be followed unless it is defined in the treaty.

In interpreting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which has the status of a treaty in the target case precedents, and the 「Customs Act」, a domestic law that accepted it, that was possible to derive the principles of preferenti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through four factors, first, a consideration of the application method of the treaty, second, a consideration of the priority principles of legal application, and third, a review of the application of the interpret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fourthly, a review of definitions of domestic law in the applicable target case precedents. The legitimacy of the consistent interpretation principle of the Customs Authorities was secured through preferential application of the treaty to the parts established by applying the domestic law definition provisions in the target case law. In addition, as a harmonization

plan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nd domestic law, domestic laws granting the treaty special law status were introduced and improvement measures to clarify this were also presented.

| **Keywords**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interpretation, treaty, principle of priority of special law

온라인 해외직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상만*

목 차

- | | |
|-----------------------|--------------------|
| I. 서론 | IV. 온라인 해외직구의 개선방안 |
| II. 온라인 해외직구의 의의 및 동향 | V. 결론 |
| III. 온라인 해외직구의 주요 문제점 | 참고문헌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결제시스템의 발달, 스마트폰의 대중화, 쇼핑몰의 확대, 배송 업체의 물류혁신 등으로 전자상거래(e-commerce) 및 국경간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의 확장과 모바일을 통한 구매방식 선진화로 온라인 해외직구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에서는 소비자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되고, 전자상거래업체(이커머스업체)가 거래정보를 보유하며, 소량다건(少量多件)의 거래라는 특징이 있다.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 해외구매대행업도 성행하고 있다.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소액면세,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 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 등의 편의제도가 적용된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해외직구 편의제도 악용, 전자상거래의 오용, 해외직구 쇼핑몰 이용자의 불만, 전자상거래업체의 갑질,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과 관세 환급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직구에서 국민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고, 해외직구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직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구매대행,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e-Commerce), 해외직구, 해외직접구매

I. 서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결제시스템의 발달, 온라인 쇼핑몰의 혁신, 배송업체의 물류 혁신,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발달하고, 전자상거래(e-commerce) 및 국경간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조원길, 2022).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50억 명이 넘는 등 글로벌 인터넷 액세스 및 채택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구매자가 증가하고 있고(Koen van Gelder, 2023), 전자상거래는 글로벌 소매거래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의 확장과 모바일을 통한 구매방식 선진화로 온라인 해외직구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물류·유통시스템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업체(이커머스업체)의 서비스 확대가 더해져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관세청, 2024). 소비자들은 온라인 해외직구를 통하여 낮은 가격으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되고,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정보를 보유하며, 소량다건(少量多件) 거래라는 특징이 있다.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 해외구매대행업도 성행하고 있다.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해외직구에서 국민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고, 해외직구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직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해외직구의 의미, 특징,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해외직구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온라인 해외직구의 의미 및 동향

1. 온라인 해외직구의 의미 및 유형

1) 해외직구의 의미 및 특징

현행 법령상 “온라인 해외직구” 또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은 없다. 다만, 현행 「관세법」¹⁾의 규정을 통하여 “온라인 해외직구” 또는 “해외직구(전자상

거래)의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 현행 「관세법」 제2조 제19호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통하여 “온라인 해외직구(또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거래’를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대체로 “온라인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만을 전자적 처리라고 말하기도 한다(정다운 외 2인).

한편, 현행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²⁾에서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체”란,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i)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 ii)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하는 자) iii) 구매대행업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자) iv) 배송대행업자(화주가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1호).

해외직구는 i) 소비자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되고 ii)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정보를 보유하며 iii) 소량다건(少量多件) 거래이고 iv) 해외직구 편의제도가 적용되며 v) 환율변화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관세청, 2022). 해외직구에 대하여는 i) 물품가격³⁾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소액면세⁴⁾ ii) 자가사용 물품은 원칙적 요건면제 iii) 물품가격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⁵⁾(신고생략) iv)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초과 ~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 간이신고 등이 적용된다(전자상거래물품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 [관세청고시 제2023-42호, 2023. 6. 26., 전부개정.].

3)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4)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된다.

5)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제5조).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가 적용되고,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가 적용되며,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물품가격이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특송 물품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특송물품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한다(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2) 해외직구의 유형 및 진행 과정

해외직구 유형은 구매대행, 직접구매(직접배송), 배송대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이병준, 2013), “구매대행”은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이고, “배송대행”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송대행지 입력하고,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이며, “직접구매(직접배송)”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이다(관세청, 2023).

구매대행은 쇼핑몰형 구매대행과 위임형 구매대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쇼핑몰형 구매대행”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위임형 구매대행”은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19조 제5항제1호 다목). 쇼핑몰형 구매대행에서는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고, 위임형 구매대행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한다. “직접구매(직접배송)”에서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로부터 직접 물품을 결제하여 주문하고, 해외 판매자에게 배송을 직접 요청하며, 국내소비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아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수령한다. 이 경우 특송 또는 국제우편으로 배송된다. “배송대행”에서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결제하지만, 해외 판매자가 국내까지 직접배송을 하지 않는 등의 제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유형별 해외직구 과정을 보면, “직접배송”은 ①해외쇼핑몰 주문 및 결제 → ②국제운송 → ③통관절차 → ④국내배송 → ⑤제품수령 순이고, “배송대행”은 ①해외쇼핑몰 주문 및 결제 → ②배송대행신청 → ③배송대행지로 이동 및 검수 → ④배송대행지 결제 → ⑤국제운송 및 통관 → ⑥국내배송 및 제품 수령 순이며, “구매대행”은 ①해외쇼핑몰 주문 및 결제 → ②국제운송 → ③통관절차 → ④국내배송 → ⑤제품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해외직구 유형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배송”은 무료배송이 된다면 가장 저렴(수수료 등이 절감)할 수 있지만, 피해발생 시 해결이 어렵고, 국제배송비가 비싼 경우가 많다. 둘째, “배송대행”은 국내로 직접 배송되지 않는 제품도 구입이 가능하고, 배송대행지에서 검수, 검품 서비스가 있어 직접배송보다 교환 또는 반품이 용이하지만, 제품종류, 배송대행지, 배송 대행업체별로 수수료 책정기준이 차이가 있어 비교가 필요하다. 셋째, “구매대행”은 복잡한 해외직구를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가장 비싼 편이고, 반품 수수료 및 조건이 업체별로 상이하고 반품 수수료가 과다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 온라인 해외직구 동향

글로벌 온라인 쇼핑물 확장, 배송업체의 물류혁신과 모바일을 통한 구매방식 선진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B2C 전자상거래(e-commerce)에 종사하는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규모는 급증하고, 국경간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OECD/EUIPO, 2021).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의 급증에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이 크게 작용했고, 2020년과 2021년의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 급증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크게 작용했다. 참고로 2023년에는 스마트폰이 전 세계 모든 소매 웹사이트 방문의 70% 이상을 차지했다(Koen van Gelder, 2023).

전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 비중은 2015년 7.5%에서 2020년 17.8%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그 비중은 2019년 13.8%에서 2020년 17.8%로 2020년에 급증하였는데, 여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크게 작용했다. 2022년에는 18.9%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2023년에는 19.5%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2027년에는 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tatista, 2024).

〈표 1〉 전 세계 총 소매 매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율(2015~2027)

(단위 :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비중	7.4	8.6	10.4	12.2	13.8	17.8	18.9	18.9	19.5	20.3	21.2	22.2	23

(자료 : Statista)

전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규모를 보면, 2014년 1조 3,360억 달러에서 2019년 3조 3,510억 달러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4조 2,48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8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Statista, 2024).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이 급증하였는데, 여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와 비대면 문화 확산이 크게 작용했다.

〈표 2〉 전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2014~2026)

(단위 : 10억 달러)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매출액	1,336	1,548	1,845	2,382	2,982	3,351	4,248	5,211	5,717	6,310	6,913	7,528	8,148

(자료 : Statista)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직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2018~2022) 해외직구 동향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 2018년 3,225만 건에서 2022년 9,612만 건으로 3.0배 증가하였고, 금액 기준으로 2018년 2,755 백만 달러에서 2022년 4,725백만 달러로 1.7배 증가하였다. 특히 해외직구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외직구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 최근 5년간 온라인 해외직구 동향(2018~2022)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구 분	일반신고		간이신고		목록통관		합 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18년	12,817	1,493	280	83	19,158	1,179	32,255	2,755
2019년	17,121	1,757	329	94	25,538	1,292	42,988	3,143
2020년	22,568	2,095	285	84	40,722	1,575	63,575	3,754
2021년	29,527	2,597	300	86	58,553	1,975	88,380	4,658
2022년	31,444	2,551	176	58	64,500	2,116	96,120	4,725
누 계	113,477	10,493	1,370	405	208,471	8,137	323,318	19,035

(자료 : 관세청)

해외직구는 신고방법에 따라 일반신고, 목록통관, 간이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⁶⁾

“일반신고”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하는 제도이고, “목록통관”은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제도이며, “간이신고”는 일반 수입신고 항목의 일부를 생략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2018~2022) 간 신고방법별(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현황을 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목록통관이 208,471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반신고로 113,477백만 달러이며, 간이신고는 1,370백만 달러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건수 기준으로는 일반신고가 10,493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목록통관으로 8,137건이며, 간이신고는 405건으로 가장 적었다.

품목별 해외직구 현황(2022년)을 보면, 건강식품⁷⁾이 가장 많이 수입되었고(16.3%), 그 다음으로 가전제품⁸⁾(13%), 의류(11.9%), 기타 식품⁹⁾(10%), 신발류(5.9%), 화장품·향수(4.9%), 완구·인형(4.4%), 핸드백·가방(3.4%) 등이다. 건강식품과 화장품·향수는 주로 미국에서 구매하였고, 가전제품은 주로 중국에서 구매하였다.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해외직구의 약 6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해외직구는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시사한다(관세청, 2023).

연령별 해외직구 현황(2022)을 보면, 40대의 구매 비중이 전체의 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29.6%) → 50대 이상(22.6%) → 20대(14.6%) → 10대(1.2%) 순이다. 연령대 별 1순위 구매품목을 보면, 10대에서는 의류(16%), 20대·30대·50대 이상에서는 건강식품(각각 20%, 18%, 18%), 그리고 40대에서는 가전제품(15%)이었다. 특히 건강식품은 40대에서도 2순위로 20대 이상의 전 연령층에서 우선 순위를 보였다. 그러나 10대에서는 의류(16%) → 가전제품(12%) → 완구·인형(9%) → 기타식품(8%) 순이며, 건강식품은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직구는 주로 실수요자가 직접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6) 자가사용 물품 중 물품가격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신고생략) 대상이고,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초과 ~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은 간이신고 대상이다. 물품 가격이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특송물품도 일반수입신고 대상이고, 「특송물품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도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다(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제6조).

7) 비타민, 오메가3, 단백질보충제, 마그네슘 등

8) 헤드셋, 스피커, 태블릿, 컴퓨터 주변기기 등

9) 커피, 주류, 과자류 등

〈표 4〉 연령대별 해외직구 현황(2022)

구 분	1순위(비중)	2순위(비중)	3순위(비중)	4순위(비중)
10대	의류(16%)	가전제품(12%)	완구·인형(9%)	기타식품(8%)
20대	건강식품(20%)	의류(13%)	가전제품(10%)	기타식품(9%)
30대	건강식품(18%)	의류(12%)	가전제품(11%)	기타식품(10%)
40대	가전제품(15%)	건강식품(14%)	의류(12%)	기타식품(8%)
50대 이상	건강식품(18%)	가전제품(17%)	의류(11%)	기타식품(7%)

(자료 : 관세청)

해외직구는 환율변화에 민감하여 원/달러 환율의 상승기에는 감소하고 안정화 시기에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던 2022년 상반기는 해외직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증가¹⁰⁾하였으나, 환율이 상승했던 2022년 하반기에는 약 5% 증가¹¹⁾에 그쳤다. 참고로 2020년~2022년 환율에 따른 해외직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 1% 상승 시 해외직구 건수는 0.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해외직구 추이(2022년)

(단위: 천 건)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달러 환율	1,194	1,198	1,221	1,232	1,269	1,277	1,307	1,318	1,391	1,426	1,364	1,296
수입 건수	7,591	6,687	7,705	7,881	8,383	8,151	8,308	7,964	7,558	7,740	8,758	9,394

(자료 : 관세청)

III. 온라인 해외직구의 주요 문제점

1. 해외직구 편의제도 악용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글로벌 쇼핑물, 배송업체 등의 물류혁신과 모바일을 통한 구매방식 선진화 등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우리나라의 온라인 해외직구도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i)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소액면세 ii) 자가사용 물품은 원칙적 요건면제 iii) 물품가격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신고생략) 등의 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10) 2021년 상반기 4,108만건 → 2022년 상반기 4,640만건

11) 2021년 하반기 4,730만건 → 2022년 하반기 4,972만건

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기간 (2021.9.27.~11.30.)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악용 유형은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지식재산권침해 등이다(관세청, 2021).

〈표 6〉 해외직구 국민편의제도 악용 유형

유형	내용
밀수입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31건, 556만점, 약 149억원)
관세포탈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구매대행업자 등이 관세와 부가세 등 편취(6건, 17,701점, 18억원)
부정수입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12건, 52,448점, 약 11억원)
지식재산권침해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5건, 2,523점, 약 9억원)

한편, 관세청은 2023. 10. 30. 터 11. 28.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는데,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i)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ii)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iii)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iv) 중국발(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었다.¹²⁾

2. 전자상거래의 오용

전 세계적으로 B2C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 2020년의 기간에 주요 국가에서 전체 소매 판매 증가는 1%도 미만인 반면, B2C 온라인 소매 판매는 41%나 증가하였다(OECD/EUIPO, 2021).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상점 방문을 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B2C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다.

12) 2023. 12. 28.자 관세청 보도자료(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특히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11번가, 네이버, 쿠팡,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카카오, 롯데쇼핑,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헬로마켓),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는데,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3,198건에 대하여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한편,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환경은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되었는데, 각국 사법 당국에 의하면, 위조품, 저질 의약품, 검사 키트, 기타 COVID-19 관련 물품을 포함하여 불법상품 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상거래 범죄의 양이 증가했다고 한다. 전자상거래는 위조상품 거래, 불량·불법 상품 거래의 주요 플랫폼이 되었고, 전자상거래 오용 문제를 초래하였다. 여기에는 불량 의약품, 검사 키트, 보호 장비, 기타 COVID-19 관련 제품이 포함되었다. 위조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위조품을 팔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중 일부는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반면, 다른 소비자들은 저가의 위조품을 적극적으로 찾는 경우도 있다.

3. 해외직구 쇼핑물 이용자 불만과 전자상거래업체의 갑질

해외직구 쇼핑물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해외직구 쇼핑물 이용자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서보원, 2018). 해외직구 쇼핑물 이용자들의 불만은 3가지 해외직구 유형(구매대행, 배송대행, 직접구매) 모두에서 나타났지만, 불만 이유는 해외직구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자료(2015~2017년)에 의하면, 1) 구매대행에서는 ‘취소·환불·교환지연 및 거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위약금·수수료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제품하자·품질AS’ 순이고, 2) 배송대행에서는 ‘배송관련(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파송)’ 불만이 가장 많고, ‘위약금·수수료부당청구 및 가격불만’이 그 다음이며, 3) 직접구매에서는 ‘제품하자·품질·AS’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배송관련(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파송)’이다(서보원, 2018).

한편, 전자상거래업체의 갑질과 높은 수수료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점유율 높이기엔 집중하는 ‘계획된 적자’ 전략과 무료 배송 등 압도적인 서비스를 통한 충성도 높은 유료 회원 확보 등의 전략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특정 전자상거래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면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여 판매자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¹³⁾

13) 참고로 아마존에 올라오는 상품은 판매자의 상품과 아마존 직매입 상품으로 구분되는데, 아마존 전체 상품 매출에서 판매자의 매출은 절반 이상이다. 판매자들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아마존은 수수료와 광고비 물류 서비스 이용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판매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점점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 종합몰과 오픈마켓을 비교해 보면, 오픈마켓은 입점하기 쉽고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점하기 쉽기 때문에 겹치는 상품이 많아서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광고가 필수적이며 광고비 지출이 높고, 구매자와의 각종 문제도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 판매자가 해당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자리를 잡은 후에 전자상거래 업체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과 관세 환급 문제

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해외직구에서도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기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환급이 필요하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장 납부세액의 환급심사에 따라 각 환급요건(과오납/계약내용상이물품/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 등)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물품가격이 200만원 이하¹⁴⁾인 경우에는 수출신고 없이 환급이 가능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후 6개월 이내에 반품하지 않거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관세청, 2023).

해외직구 반품 환급 요건을 정리하면,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어야 하고, 한국에서 외국의 원판매자에게 물품이 반송되어야 하며, 반품 물품가격의 합이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 구매했던 판매자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반송된 경우 환급이 불가하거나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반품 환급에는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구매확인서류에는 구매한 물품의 정보(물품 모델명, 가격, 수량, 원산지 등)와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송장 또는 구매내역서가 있고, 반품확인서류에는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물품명, 가격, 수량 등)와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반품송장 또는 반품확인서가 있고, 반송확인서류에는 발송인, 수령인의 정보가 기재되고 물품정보(무게, 수량 등)가 기재된 운송서류(B/L 등) 또는 반송운송장, EMS 반송서류 등이 있으며, 환불증빙자료에는

14) 2022. 1. 1. 적재분부터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 없이 환급 가능.

반품승인 후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페이팔 등)에서 발행하는 취소영수증 또는 매출취소 전표가 있다(관세청, 2023).

IV. 온라인 해외직구의 개선방안

1. 해외직구 특별통관 개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해외직구는 급증하고 있다. 2023년도 해외직구 수입 건수는 9,612만건으로 일반 수입신고 건수 4,068만건의 두 배가 넘는다. 온라인 해외직구는 대부분 소비자가 구매자가 되고, 소액거래가 많기 때문에 특별통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관세법에서는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통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54조)¹⁵⁾,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제258조), 이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특별통관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해외직구에 대한 특별통관의 세부 내용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편의를 위하여 특히 특별통관 관련 다음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관세 등의 납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제1항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온라인 해외직구 포함)의 특별통관으로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납부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의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본다.

둘째, 일반수입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목록통관이나 간이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18~2022) 간 신고방법별(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현황을 보면, 일반수입신고가 10,493천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목록통관으로 8,137천건이며, 간이신고는 405천건으로 가장 적다. 목록통관이나 간이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제고

15)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00. 12. 관세법 전부개정(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하고 행정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2. 해외직구 편의제도 운영 개선(악용 방지)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편의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해외직구의 급증에 따라 국민 편의, 국민 안전 등의 대책이 필요하여 2022. 10월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수립하였다. 이 방안 수립은 전자상거래 급증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의 소비자 편의 증대, 안전 강화, 수출 지원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 편의, 국민 안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해외직구 편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외직구 편의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편의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직구 편의제도의 악용은 편의제도 운영상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편의제도를 엄격하게 관리·운영하고, 편의제도 악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악용 사례를 적발하였다. 또한, 2021년에 광군제(2021.11.11.), 블랙프라이데이(2021.11.26.)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하여 많은 악용 사례를 적발하였다. 특히 온라인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업체와의 합동 집중 감시를 실시했는데, 온라인 해외직구에서 편의제도 악용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해당 전자상거래업체에는 부담이 되며,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에게 협업을 강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업체의 자발적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오용 개선

국경간 전자상거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제적 규제가 필요한데, 국내법(전자상거래법 등)의 역외적용에 의한 규제보다는 국가 간 공조나 국제규범의 도입에 의한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각국의 개별

적 규제는 규제의 중첩성 문제와 규제의 비통일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1. 3. 5.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¹⁶⁾ 동 법률(안) 역외적용 규정 신설(제5조17))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해외직구·구매대행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 부재로 해외플랫폼에 대한 법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¹⁸⁾ 그리고 2021. 5. 25. 자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77)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개정 목적은 동일하다. 참고로 관세청에서는 2014년 업무계획에서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을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검증·처벌 강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 등의 통관관리 강화¹⁹⁾, 인터넷 쇼핑몰 거래정보 입수·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해외직구 쇼핑몰 이용자의 불만 개선

해외직구 쇼핑몰 이용자 불만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다음의 방안을 강구하였고, 일부는 시행되고 있다(서보원, 2018). 첫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²⁰⁾ 둘째,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자율개선을 촉구하고, 반품수수료 고지를 강화한다. 반품비용 외에 추가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는 반품수수료 내용을 ‘상품 판매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고지·안내하도록 자율개선을 촉구한다. 셋째, 배송지연 사유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한다. 배송대행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중에는 배송지연 시 배송지연 사유에 대한 안내 부족

16)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4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17) 제5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18)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4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참조.

19) 현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으나,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 적용

20) 참고로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총 16,608건으로 전년 14,086건 대비 17.9% 증가하였다. ‘온라인 국제거래’ 상담은 16,520건으로 전년 14,029건 대비 17.8% 증가, ‘오프라인 국제거래’ 상담은 88건으로 전년 57건 대비 54.4% 증가하였다.

이 지적되었는데, 통상적인 배송 기간으로 안내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개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배송기간을 경과하여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 합당한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배송 중 상품 분실·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배송 중 파손된 물품에 대해 몰테일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없이 보상을 회피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배송 중 물품 파손 시 배송대행업자가 '배송과정에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함으로써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²¹⁾ 및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²²⁾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구매대행에서 총 판매가격 구성내역 표시를 강화한다. 구매대행에서 해외구매대행의 취지와 달리 총 판매 가격이 구매금액과 배송비로만 표시되어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²³⁾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구매금액과 배송비로만 표시될 경우 소비자가 총 판매가격의 구성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판매자가 해외 구매대행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소비자가 직접 해외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5조(상품가의 구성)에서는 “몰”²⁴⁾에 표시된 재화 등의 판매 가격은 [해외사업자로부터의 해당 재화 등 구매가격, 해외사업자로부터 회사의 해외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료, 해외 현지 세금, 해외 구매 계약 체결 수수료, 해외 현지 수령 장소(해외 물류센터) 이용료, 국제운송료와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국내운송료, 기타세금 등(이하 “관·부가세 등”)]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의 취지를 반영하여 총 판매가격의 구성내역을 구분하여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의 물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1)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4호, 2016. 10. 14. 제정) 제14조 제1항에서는 회사의 배송대행지로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구간에서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용자에게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6호, 2016. 10. 14. 제정.

24) “몰”은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2조).

5.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과 관세 환급 문제 개선

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기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환급이 필요한데, 물품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 없이 환급이 가능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수입신고 수리후 6개월 이내에 반품하지 않거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 반품 환급 규정은 일반 수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반품 환급요건이 엄격하여 해외직구에서 소비자가 반품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용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환급에 대해서는 환급요건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신고 없이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은 현행 2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금액은 전체 해외직구에서 200만원 초과 ~ 상향 금액의 해외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기타 온라인 해외직구 제도 개선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i)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소액면세 ii) 자가사용 물품은 원칙적 요건면제 iii) 물품가격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신고생략) 등의 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 관세법 전부개정²⁵⁾에서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였고(관세법 제254조²⁶⁾),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건전한 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²⁷⁾를 제정하였다. 현재 온라인 해외직구에 대한 특별통관제도의 세부 내용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²⁸⁾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외직구 관련 통관 절차와 규제로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이 누적되고, 과세기준, 세금납부방식, 통관정보 등 국내 온라인거래와 상이한 부분에서 민원이 집중되고,

25)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6)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기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7) [관세청고시 제2004-51호, 2004. 12. 20., 제정.]

28) [관세청고시 제2023-42호, 2023. 6. 26., 전부개정.]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유해 식·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국민 안전과 권익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반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편의 증진과 국민 안전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2022. 10월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수립하였다. 이 제고방안은 전자상거래 급증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의 소비자 편의 증대, 안전 강화, 수출 지원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 편의, 국민 안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20대 추진과제 및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20대 추진과제는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i) 국민편의 제고에는 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②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③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④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가 있고, ii) 소비자 보호에는 ⑤ 명의도용 피해 방지 ⑥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⑦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⑧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⑨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이 있고, iii)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에는 ⑩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 혁신 ⑪ 주요 인접 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 ⑫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⑬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⑭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⑮ 한-중 복합운송 활성화가 있으며, iv) 제도·인프라 정비에는 ⑯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 ⑰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 ⑱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 ⑲ 첨단 검사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 ⑳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이 있다.

V. 결론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 해외 구매대행업도 성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해외직구를 통하여 다양한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다. 온라인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소비자 편의 증대·안전 강화, 수출 지원 관련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직구 편의제도 악용, 전자상거래의 오용, 해외직구 쇼핑몰 이용자의 불만,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과 관세 환급 문제, 전자상거래업체의 갑질과 높은 수수료율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에서 국민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고, 해외직구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직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온라인 해외직구는 대부분 소비자가 구매자가 되고, 소액거래가 많기 때문에 특별통관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특별통관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편의를 위하여 관세 등의 납부방법, 목록통관이나 간이신고 대상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직구 편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외직구 편의제도를 엄격하게 관리·운영하고, 전자상거래업체의 자발적 협업 유도하여 합동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제적 규제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국가 간 공조나 국제규범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 해외직구 쇼핑몰 이용자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기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환급이 필요한데, 현행 반품 환급 규정은 일반 수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반품 환급요건이 엄격하여 해외직구에서 소비자가 반품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용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환급에 대해서는 환급요건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해외직구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동시에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오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 연구는 해외직구 이용자나 해외직구 업계의 설문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외직구 이용자 및 해외직구 업계의 설문,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관세청. (2022).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KDI 경제정보센터.
- 관세청. (2023a). 알기 쉬운 해외직구 + 반품 환급 가이드. 서울본부세관.
- 관세청. (2023b).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 김상만. (2022). 관세법상 해외직구 및 해외구매대행 관련 최근 판결의 주요 쟁점 분석(관세등부과 처분, 밀수입죄, 후발적 경정청구 등). *관세학회지*, 23(3), 3-18.
- 서보원. (2018). 해외직구 소비자불만 현황 및 개선방안 (피해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국 소비자원, 1-59.
- 오선영. (2023).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성실 납세 확보 방안 연구. *무역상무연구*, 98, 133-152.
- 이병준. (2014).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성균관법학*, 26(4), 417-446.
- 이예림. (2019).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만족도, 충성도와 구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1(3), 3-22.
- 정다운, 이재선, 김미정. (2020). 19-02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분석.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 조원길. (2022). 디지털무역 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3(1), 83-104.
- Daniela Coppola. (2023). Annual retail e-commerce sales growth worldwide from 2017 to 2027. Statista.
- Koen van Gelder. (2023). E-commerce worldwide - statistics & facts. Statista.
- OECD/EUIPO. (2021). Misuse of E-Commerce for Trade in Counterfeits. Illicit Trade. Statista. (2024). Retail e-commerce sales worldwide from 2014 to 2026. Statista.
- Statista. (2024). E-commerce as percentage of total retail sales worldwide from 2015 to 2027. Statista.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5&cntntsId=827>.
-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2975>.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03>.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K1S0T5N2W5Y1K7P2V4W5V5Q3V6Z6.
- 한국소비자원.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03>.

ABSTRACT

A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Online Overseas Direct Purchase

Sang-Man Kim

E-commerce and cross-border e-commerce are growing rapidly due to the development of ICT, smartphones, expansion of shopping malls, logistics innovation, etc. In addition, online overseas direct purchases are also increasing rapidly due to expansion of global online shopping malls and advancement of purchasing methods through mobile. In particular, the growth of e-commerce has been accelerated due to the recent COVID pandemic and home economy.

Online overseas direct purchase types are classified into purchase agency, delivery agency, and direct purchase. With the increase in overseas direct purchases, e-commerce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overseas purchase agency services, and individual overseas purchase agencies are also flourishing. Convenience systems such as tax exemption for self-used goods under \$150 and customs clearance for goods under \$150 (not more than \$200 for goods from the U. S.) will be applied to overseas direct purchases.

Looking at global e-commerce retail sales, it more than doubled in five years from \$1.336 trillion in 2014 to \$3.351 trillion in 2019, and more than tripled to \$4.248 trillion in 2020. It is expected to exceed \$8 trillion in 2026.

Major issues (or problems) related to overseas direct purchase include abuse of the convenience programmes for overseas direct purchase, misuse of e-commerce, complaints from users of overseas direct purchase shopping malls, return of overseas direct purchase, etc.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problems of overseas direct purchases for the convenience and safety of the customers and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overseas direct purchases.

| **Keywords** e-commerce, cross-border e-commerce, online platform, online overseas direct purchase, overseas direct purchase

주요국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장효은*·손명희**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주요국 소액물품면세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
| II.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의
의의 및 고찰 | IV. 결론 |
| | 참고문헌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액·소량의 물품에 대해서까지 모두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행정상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94조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의 관세법규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소액물품은 일반 수입물품, 특송물품,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며 별도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통상 반입경로와 무관하게 모두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관세법제상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통관간소화제도는 반입경로와 무관하게 보다 간소화된 통관절차에 따라 신속한 통관을 진행하도록 규정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간이통관·목록통관·우편통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나아가 관련 국내 관세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면세대상 소액물품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완성도 높은 정책 환경을 구축하자는 시사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저어 소액물품면세제도, 통관간소화제도, 통관제도, 목록통관, 해외직구

* 주저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 E-Mail: jhe621@kctdi.or.kr

** 교신저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선임연구원, E-Mail: smh0402@kctdi.or.kr

I. 서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액·소량의 물품에 대해서까지 모두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통관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94조에서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해외 주요국의 관세법규에서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서는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액물품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화물(탁송품 포함),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게 되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반입되든 그 경로와 무관하게 모두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 관세법제상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통관간소화 제도는 반입경로와 무관하게 보다 간소화된 통관절차에 따라 신속한 통관을 진행하도록 규정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반입되는 물품의 반입(운송)경로 및 형태에 따라 각 제도상의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간이통관·목록통관·우편통관을 중심으로 통관간소화제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관세법규상 소액물품면세제도와 통관간소화제도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영국, 유럽연합(EU)의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의 의의 및 고찰

1.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관세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이나 수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는 경우, 즉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관세 감면이란 납세의무의 경감과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상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강성훈 외 3명). 이러한 관세감면 제도 중 하나가 소액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소액면세제도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수입하려는 자가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중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해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하는 물품의 총 가격이 소액일 경우 간이통관 절차가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국내 관세법규에서 정하는 소액물품면세제도와 통관간소화제도의 관련 규정 및 그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법상의 관련 규정

(1) 소액물품면세제도 관련 규정

「관세법」 제94조에서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호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세부내용을 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1호의 내용에서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

1) 「관세법」 제94조 제4호

하고 있으며,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고시 [별표 11]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²⁾ 또한, 선물용 여부를 불문한다.

한편,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하는 우편물품의 경우 현장면세와 통관대상으로 구분되는데, 통관대상물품은 현장과세물품, 간이통관물품, 일반수입통관 대상 물품으로 세분화된다. 이 중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등 X-ray 검사 결과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현품검사 없이 현장에서 면세 처리하게 된다.

(2) 통관간소화제도 관련 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 및 제71조에서는 각각 수입신고의 생략과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수입신고 생략을 규정하고 있는 동 고시 제70조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의 물품은 선하증권(B/L)만 제시하면 물품 보관장소에서 즉시 인도되며³⁾,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방식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만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 다음으로,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동 고시 제71조에 따르면 제70조 제1항 각호의 물품 중 과세 되는 물품을 비롯해 i)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150달러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ii) 해당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iii)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iv)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 해당하는 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송물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물품의 가격 및 특성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된다(김종덕 외 1명). 이중 목록통관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대상 상용견품 중 미화 150달러(단, 한-미 FTA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3)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 제2항

4)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 제3항

신고 절차 없이 통관목록의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절차를 의미한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단, 한-미 FTA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며 미화 2,0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일반적인 수입신고) 방법으로 간이신고를 진행한다. 한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 배제물품에 해당하는 통관제한 물품이나,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출입 또는 반송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에서는 각각 3호와 5호의 규정을 통해 우편물⁵⁾과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⁶⁾을 신고 생략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⁷⁾」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7조(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신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신고는 ①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와 특별통관 대상업체 신고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제7조 1호), ② 특급탁송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장, 송품장, 통관목록에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를 기재하며(제7조 2호), ③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를 사전에 통보(제7조 3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우편물과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258조(우편물 통관에 관한 결정) 및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관세법 시행령」 제260조 내지 제263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처리하고 있다. 동 고시 제2조(정의) 규정에 따르면,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①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동조

5)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3호

6)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5호

7) 「관세청고시 제2020-44호, 2020. 11. 27., 일부개정

4호 가목), 또는 ②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동조 4호 나목)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통관간소화제도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종류 및 운송방법에 따라 통관 기준이 개별 고시에 산재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Ⅲ. 주요국 소액물품 수입통관제도

1. 미국

(1) 개설

미국의 수입통관과 관련된 기본 내용은 미국 관세법(United States Code Title 19 Customs Duties Chapter 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세법의 하위규정에 해당하는 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9 Customs Duties)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입물품 통관유형은 일반통관·약식통관·소액통관으로 구분되며, 과세가격에 따라 물품신고방식이 구분되게 된다. 세부적으로 2,500달러 초과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통관, 2,500달러 이하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통관, 그리고 800달러 이하 소액물품은 소액통관이 적용되게 된다.

이중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소액통관과 약식통관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액통관은 목록통관(de minimis entry)이라고도 불리며, 800달러 이하에 물품의 경우 적하목록 방식인 Section 321 또는 ACE 전자통관 방식에 해당하는 Entry Type 86을 통해 목록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1인당 1일 수출국 소비자가격의 합이 8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묶음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⁸⁾,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약식통관의 경우 수입될 상품의 가치가 2,500달러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간소한 통관절차(informal entry)를 의미한다.

8) Entry Type 86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수출국에서 총 공정 소매가격의 합이 \$8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이하의 내용에서 미 관세법과 연방규칙에서 정하는 소액물품면세제도와 통관간소화제도에 해당하는 비공적인 통관절차(Merchandise eligible for informal entry)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액물품면세제도

관세법 §1321조에서는 “세금 및 관세 징수에 있어 사소한 불일치를 무시하는 것, 또는 무관세품에 대한 입장, 면제금액의 제한에 대해 재무장관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징수되는 수입액에 비례하지 않는 정부 비용과 이에 따른 불편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 권한을 부여받는다⁹⁾”고 정함으로써 행정상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2호에서는 수입품에 대하여 또는 수입을 이유로 부과되는 세금 및 무관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일 1인이 수입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의 선적국 내 공정소매가격의 합계는 규정에 의해 장관이 지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며 각 목에서 세부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마지막 (C)목에서 기타의 경우 \$800달러 이하에 해당하면 행정상 관세가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본 고의 논의 대상은 이에 해당하는 바이다. 이는 종전 2015년까지 200달러로 적용되던 면세한도를 상향조정된 것으로, 이후 전자상거래 통관이 급증함에 따라 우범화물 선별검사 강화를 위한 정확한 신고데이터 확보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강연호, 2019).

또한, 위 조문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는 미국 연방규칙 §10.151에서는 수입 물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¹⁰⁾, §10.153의 조건에 따라 항만 책임자는 본 장의 §101.1에 정의된 대로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한 공정한 소매가격이 입증된 상품의 선적에 대해 면세 및 과세를 통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선의의 선물(Bona-fide gifts)을 규정하고 있는 §10.152조에서는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가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선의의 목적으로 보낸 선물용 물품에 대해 한 당사자가 하루에 받은 물품의 총 고정 소매 가치가 해당 물품의 선적 국가에서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버진 아일랜드, 괌 및 아메리칸 사모아의 당사자로부터 발송된 물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세 및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

9) § 1321. Administrative exemptions

10) 19 CFR 10.151

11) 19 CFR 10.152

또한, §10.153조 면제조건에서는 세관원은 물품이나 소포가 위에서 언급한 §10.151조와 §10.152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조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추가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²⁾.

(3) 통관간소화제도

한편, 미국 연방규칙 §143.21조에서는 비공식적인 통관절차(Merchandise eligible for informal entry)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¹³⁾ 해당 내용에 따르면 2,5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비롯해 다음의 물품에 대해 간소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a) 2,500달러 이하의 물품 또는, (b) 이를 초과하지 않는 분할선적의 일부 또는, (c)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 (d) 면세대상인 가사용품과 개인 휴대품 또는 운송용구, (e) 면세대상을 불문하고 구매계약 또는 판매를 위한 용도가 아닌 중고 가사용품과 개인휴대품, (f) 면세대상을 불문하고 제9802.00.40호에 해당하는 비상업용 가사용품과 개인휴대품으로 2,500달러 이하의 수리 또는 대체물품, (g) 외국에서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2,500달러 이하의 개인 휴대품, (h) 도서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에 의해 수입되는 도서류, 19 CFR 10.68에 명시된 무대장치, 소품, 상업용 여행 장비 등, (j) 별도 서면 신청에 의해 디자인이 독특하여 상업용으로 판매될 수 없음이 판정된 물품, (k) 미국산 물품으로서 10,000달러 이하의 수리 또는 반품된 물품, (l) 19 U.S.C. 1321(a)(2)에 따른 행정 면제 대상이며 각호 사항에 해당하는 상품 발송물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l)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 U.S.C. 1321(a)(2)에 따른 행정 면제 대상이며 각호 사항에 해당하는 상품 발송물”은 앞서 살펴본 소액면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¹⁴⁾.

2,500달러 초과에 해당해 공식적인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상품의 경우 파트 142 이하의 입국절차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¹⁵⁾.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는 §142.2조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품 도착 후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서 착륙한 후 15일 이내 또는 채권으로 운송된 상품의 경우 도착지 항구에 도착한 후 입국이 필요한 상품은 15일 이내로 세부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¹⁶⁾.

12) 19 CFR 10.153

13) 19 CFR 143.21

14) 19 CFR 143.21(l)

15) 19 CFR Part 142

16) 19 CFR 142.2(a)

같은 조 (b)항에 내용에서는 상품 도착 전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142.3(a)에서 요구하는 입국 서류는 입국이 이루어지는 항구의 제한 범위 내에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고¹⁷⁾, 사전 신고내용이 반입신고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반입신고와 사전 신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반입 시에 제출되는 사전 신고는 § 142.3(b)에 규정된 바와 같이 § 141.63(a) 및 § 142.12(a)(2)에 따라 예비 검토를 위해 제출될 수 있다¹⁸⁾. § 14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반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통관 서류로는 CBP 3461 양식 또는 전자적 제출물¹⁹⁾, § 141.63(a)조에 따른 수입허가증,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CBP 또는 기타 연방, 주 또는 지방 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문서, 신분증 등이 요구된다²⁰⁾.

한편,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관세법 32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입 품목 중 하루 1인당 80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해 디지털 방식으로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Entry Type 86을 신설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강연호, 2019). 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최소한도(800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발송물 제출 및 전자발송을 위한 자발적인 신고 절차에 해당하며, Entry Type 86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Entry Type 86에 대한 절차에 있어 소유자, 구매자 또는 지정된 관세사는 화물의 도착 전 또는 도착 이후 15일 이내에 전자포털에 해당하는 ACE 프로그램을 통해 CBP 양식을 작성하게 된다.

2. 중국

(1) 개설

중국은 1987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²¹⁾」에 근거해 해외개방 및 항구, 세관의 감독 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17) 19 CFR 142.2(b)(1)

18) 19 CFR 142.2(b)(2)

19) 단, CBP 7533 양식 또는 그 전자적 제출물의 경우 인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한해 CBP 3461 양식 대신 중복으로 사용될 수 있음(19 CFR 142.3(a)(1) 규정 참조)

20) 19 CFR 142.3

21) 주석령[2021] 제81호, 이와 관련해 법제처 산하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번역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라고 번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법령이 '해관법(海關法)'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세 분야에서 중국 관세법을 해관법이라 통칭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해관법이라 부르기로 함.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역에서 수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물품의 관세 징수에 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에 근거해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세를 징수하고 있다.

관세를 규정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제5장 이하에 따르면, 수출입화물·출입국 물품의 비준·허가에 대하여 세관은 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또한, 수입화물의 수신인, 수출화물의 발송인, 출입국 물품의 소유주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동법 제54조), 수출입화물의 세후가격은 세관이 해당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하여 확정하며,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후가격을 세관이 법에 따라 고정한 정한다(동법 제55조).

또한, 동법 제56조에 따르면 해당 조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관에 해당하는 수출입물품·출입국 물품의 경우 관세를 감액하거나 그 징수를 면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관에서 “규정된 액수 이내의 물품”을 제시하며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할 관세의 감액 또는 면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는 ‘국경을 넘는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좌징(跨境), 즉 보세구 이용방식의 무역이 존재하는데 이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이 해외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보세물류 센터에 보관하다가 중국 소비자에게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과 그 하위규정을 중심으로 소액면세 기준과 중국 법제상 국경 간 전자상거래 유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액물품면세제도

중국의 관세 감면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제56조 또는 제58조에 근거한 법정 감면, 특정 감면, 임시 감면으로 구분된다(김성훈 외 3인, 2016). 여기서 법정 감면이란, 별도의 감면 신청 및 화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감면을 의미하며(정재현 외 2인, 2018),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제45조에서는 (1) 발송물 당 관세가 50위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2) 상업적 가치가 없는 홍보물과 샘플, (3) 관세가 면제되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물품, (4) 통관 전 분실된 물품, (5) 입국 및 출국 운송 차량에

2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제53조

적재하는 데 필요한 연료, 자재 및 식품 공급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관 전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판단하는 파손 정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²³⁾ 이에 더해 WTO 자료에 따르면, 자가사용으로 수입되어 1인당 1일 8,000위안 미만으로 평가되는 물품²⁴⁾에 대해서도 법정 감면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WTO, 2021).

여기서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발송물 당 관세가 50위안(약 9,250원²⁵⁾)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행우세 즉, 수입세 부과가 면제되는 징수 최저세액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가사용으로 수입되어 1인당 1일 8,000위안(약 148만 원²⁶⁾) 미만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중국 소액면세의 기준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제5장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조례 제57조에서는 개인용으로 수입한 물품은 관세청이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수입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 용도로 수입한 물품이 관세청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수량 내에 있는 경우, 수입 물품 납세자는 수입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된 사용 수량을 초과하는 합리적 범위 내 수입 물품의 경우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고로, “개인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화물로서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화물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사용 수량 제한”을 초과할 경우 별도 수입세가 부과된다. 홍콩/마카오발 개인용 우편물은 그 가치가 800위안, 기타 해외지역은 1,000위안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참고로 개인 물품 사용량 제한 초과 시에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다.²⁷⁾

중국 관세감면 물품의 통관행정 절차에 관해서는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 제 5장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세금 감면 대상 수출입화물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감

23)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제45조

24) (vi) goods imported for daily use and valued at less than CNY 8,000 per person per day

25) 2024년 2월 14일 고시환율 기준

26) 2024년 2월 14일 고시환율 기준

27) - 서적, 신문/잡지, 교육용 동영상, 컴퓨터, 촬영기기,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 식품, 음료, 귀금속, 완구, 게임, 오락제품, 약품 등: 13%
 - 스포츠용품(골프용품 제외), 낚시도구, 섬유제품, TV 촬영기기, 자전거 등: 20%
 - 담배, 주류, 주얼리, 골프용품, 고급 시계, 고급 화장품: 50%

면 심사 승인 수속 없이 수출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인 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통관간소화제도

중국 내 수출입 물량 급증에 따라 신속한 통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통관제도에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정재현 외 2명).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어떤 도시에서 통관절차를 진행하든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식과 기준을 적용하는 전국통관일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통관일체화 이후 수입통관 절차상 가장 큰 변화는 선통관·후심사 방식의 진행을 통해 물품을 먼저 통관시키고 이로써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이뤄냈다는 점이다.

중국 법제상 국경 간 전자상거래 유형은 보세수입, 직구 수입, 일반 수출, 특수구역 내 수출 4가지 모델로 분류된다(관세청, 2019). 이 중 본 논문의 논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통관 간소화제도와 관련해 직구수입 통관절차와 보세수입 통관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보세수입 통관절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14년부터 중국은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Cross-border E-commerce)”를 도입해 정부가 지정하는 보세구역에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는 과징(跨境)을 이용한 방식의 무역방식이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벤더가 보세수입 상품을 특수관리구역 또는 지정된 보세물류센터로 운송한 뒤 세관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절차에서 각 주체들은 전자주문서, 결제증명서, 전자운송서 등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납세 수속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다. 세관에서는 해당 서류에 근거해 상품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직구수입의 경우 전자상거래 직후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지불 서비스 기업·물류 기업들이 해관총서에 거래·지불·운송에 관한 전자적 정보를 전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확인을 진행한다. 이후 물품은 관리 장소에 운송된 후 포워드나 대리인이 세관신고서 또는 명세서를 제출하게 된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 리스트(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에 포함된 품목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개인 소비자의 해외직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재정부, 해관총서 등 주무부처가 중국 소

비자의 해외 소비품 소비 수요, HS 코드 조정 상황에 따라 리스트를 조정하고 리스트의 비교란에 수입조건을 명시했으며 2016년 4월 1차 리스트 발표 이래 2016년, 2018년, 2019년, 2022년 4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현재 시행 중인 2022년판 리스트는 식품, 의류, 가전, 화장품, 기저귀, 주류, 가정용 식기세척기 등 1441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해외 수입세 감면 한도액을 1회 5000위안, 1인당 연간 2만 6000위안으로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시 일반 화물로 간주해 수입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부과한다.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해외직구 (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전자상거래 기업 및 개인은 수출입 업무처리를 위해 각각 통관, 검역, 외환관리, 세수, 물류, 금융 등 관련부서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현재는 물류 전상망과 해관총서 전상망이 연동돼 단일 창구로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19년 1월, 국가 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으로 「전자상무법(电子商务法)」²⁸⁾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징에 부합되는 관리제도를 구축했다. 세부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맞는 관세 징수, 수출입검역 등 종합적인 관리 감독 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되는바(관세청, 2019), 이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관세행정 당국이 주목할만한 점이라 여겨진다.

3. 일본

(1) 개설

일본 통관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령으로는 「관세법(関税法)」²⁹⁾, 「관세정율법」 및 「관세잡정조치법(關稅暫定措置法)」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일본 관세법제의 주요한 특징은 관세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세금에 관계되는 법률과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관세법」에서는 동법 제1조에서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부와 화물의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세관절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정율법」의 경우 동법 제1조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관세율, 관세부과시의 과세기준, 그리고 관세의 감면·

28) 2018년 8월, 전국인민대회에서 정식 가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9) 1954년 제정(법률 제61호), 최종 개정 2023.06.14.

면제 및 기타 관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 수출입물품의 경우 수출입항만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이하 'NACCS')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관세 납부절차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품 거래 등에 관한 준칙³⁰⁾」이 존재하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 구매 물품 통관에 관한 내용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이하의 내용에서 일본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소액물품면세제도와 통관간소화제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액물품면세제도

일본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관세, 내국소비세, 지방소비세가 과세되며, 이중 내국소비세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에 해당한다(류승범, 2017). 「관세정율법」 제14조에서는 무조건적 면세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동조 각호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내각령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동조 18호에서는 총 세관 신고액이 10,000엔(약 8만 8,560원³¹⁾) 이하인 물품(국내 산업 또는 기타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세 면제에 부적절하다고 내각령에 명시된 물품은 제외)은 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하고 있는 10,000엔의 금액이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소액물품면세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과세 가격격의 합계액이 10,000엔 이하인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및 소비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소비세 이외 기타 내국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 면세가 되지 않으며,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0,000엔 이하에 해당할지라도 일본 국내 산업에 미치는 기타 사정을 감안할 때 특별히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³²⁾

30) 2011년 6월 개정, 경제산업성

31) 2024년 2월 15일 고시환율 기준

32) 이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가죽가방, 핸드백, 장갑, 편물제 의류, 가죽제 신발류 제품 등은 면세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참고로 소량 수입품에 대한 간이세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세정율법」 제3조의3 제3조(과세표준 및 세율)에서는 소액수입화물에 대한 간이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에서 정하는 화물로서 합계액이 200,000엔 이하의 수입화물(일본에 입국하는 자가 그 입국 시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전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송하여 수입하는 화물 제외)에 대한 관세 비율은 이와 관련한 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부칙2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수입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해당 수입화물이 우편물인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신인)가 해당 수입화물의 전부에 대하여 같은 표에 따르는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뜻을 세관에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관간소화제도

일본 「관세법」 제67조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기타 필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NACCS를 활용해 대다수의 수출입 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이상엽 외 2인, 2014). 일본의 경우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특송화물 수입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간이통관 및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김종성, 2008).

200,000엔 이하 소액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화물에 비해 간단한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세가격이 200,000엔 이하의 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도 항공화물운송장(AWB) 또는 상업송장(Invoice)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³³⁾ 단, 수입승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관세정률법」 제14조(무조건적 면세), 제16조(외교관용물품)에서 정하는 면세규정 이외의 세금 감면 규정 적용 대상 물품, 「관세잠정조치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는 경우 간이통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10,000엔 이하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되는데³⁴⁾, 서류·신문·잡지·카탈로그 등이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된 경우 이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³⁵⁾, 이 경우 전용 신고서상에 해당 물품의 품명·수입자·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적하목록을 첨부해 각 품목별 과세가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하게 된다.³⁶⁾

33) 「관세법 기본통달」 67-4-3(소액물품 간이통관 처리 화물의 세번 등의 처리)

34)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8호

35) 「관세법 기본통달」 67-4-6(적하목록 등에 의한 수입신고)

36) 「관세법 기본통달」 67-4-6(적하목록 등에 의한 신고 절차)

또한, 「관세법」 제8절에서는 ‘우편물 등에 관한 특칙’을 정하고 있으며, 우편물의 경우에도 서신을 제외하고는 수입 통관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성질상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구별하여 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관세법」 제76조에서는 우편물 수출입의 간이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우편물 가격이 200,000엔을 초과하는 경우 동법 67조에서부터 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 수출입 신고 특례, 제출서류 및 검사 절차 등의 규정을 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³⁷⁾ 단, 이 경우에도 예외 규정은 존재한다. 일본 우편물 수입통관 절차에 있어 물품이 무세 또는 면세에 해당할 경우 국제우편물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우편사업주식회사가 수취인에게 직접 물품을 배송하게 된다. 이외 세금합계액이 10,000엔 이하에 해당하거나, 1만엔 초과 200,000엔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수취인이 배송을 희망하는 경우 우편사업주식회사 세금납부 위탁을 신청한 후 세금 및 취급수수료를 납부하면 세관에서 일본우편주식회사를 경유해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와 함께 우편물을 직접 배송한다. 한편, 과세가격이 200,000엔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의 경우 수입신고를 통해 관세 등을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된다.

4. 호주

(1) 개설

호주는 이민국경보호부(DIBP)와 국경수비대(ABF)에서 통관을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ABF는 DIBP 산하의 운영 집행기관으로서 2015년 7월에 신설되어 여행자나 화물 관리 등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관세와 관련된 주요 법규로는 관세법(Customs Act 1901), 수입금지물품에 관한 규정(Customs (Prohibited Imports) Regulations 1956),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95) 등이 있으며, 소액물품 면세와 통관간소화 관련 규정은 관세법과 관세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소액물품 면세제도는 1,000호주달러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 금액은 관세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으로서 해외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FOB 가격을 의미한다. 이 금액은 통관과 관련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2005년에 250호주달러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37) 「관세법」 제76조

2010년 12월에 생산성 본부에서 실시한 ‘소액면세 한도 조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타 국가 대비 면세기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재호 외 2인).

한편 호주는 2018년 7월부터 1,000호주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물품 수입으로 면제되는 세금은 관세뿐이다.

(2) 소액물품 면세기준

호주 관세법³⁸⁾ 제68조에서는 수입물품의 반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그 적용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동 조항 제(e)호에서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i) 개인이 발송하는 우편물과 (ii) 물품의 가치가 1,000호주달러 또는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다르게 규정된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호주 관세율법³⁹⁾ 별표 4에서는 면세품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소액물품(Goods of low value)은 26번 항목과 27번 항목에 열거되어 있다. 26번 항목에서는 가치가 없는 물품(Goods of insubstantial value)을 규정하고 있으며 트로피, 장식품, 메달, 증서 및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물품은 그 가치가 1,000.01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① 담배와 그 제품 또는 주류, ② 호주 밖에서 호주로 들어오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객이나 승무원이 수입하는 물품, ③ 대량으로 주문한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은 그 가치가 1,000.01호주달러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 중 담배와 주류는 같은 법 별표 4의 15번 항목의 개인 소지품(Accompanied personal effects) 면세 규정에 따라 별도로 면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한 경우, 담배는 미개봉된 담배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제품 25그램 그리고 개봉된 담배 한 갑까지 면세하며, 술은 2.25리터까지 면세한다.

한편 27번 항목에서는 가치가 미미한 샘플(Samples of negligible value)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시연용을 제외한 물품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 또는, 특정한 물품을 훼손하여 사용

38) Customs Act 1901, Compilation No. 178, 2023.11.28. 개정.

39) Customs Tariff Act 1995, Compilation No. 90, 2023.09.15. 개정.

할 수 없도록 만든 경우, 예를 들어 신발의 밑창이 신발을 더 이상 착용할 수 없도록 천공되어 있으나 시연용으로는 적합한 경우, ② 의류용 악세사리나 장식품은 그 크기가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카드에 부착되어 있거나 상업용 거래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샘플로 제시된 경우, ③ 절단되지 않은 비소모성 물품으로서 어떠한 라인 중 한 가지 샘플로 수입되었고 그 가치가 2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④ 소비재로서 먹거나 마시거나 시험하거나 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훼손되어 그 가치가 2호주달러 이하인 물품, ⑤ 수집가가 서면으로 승인한 종류와 수량 내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소비세 부과대상인 아닌 물품, ⑥ 원산지가 국외이며 인쇄물로 되어 있고 대표 상품의 수입을 권유하고자 견본 도서에 들어가 있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통관 간소화 제도

호주는 통관제도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일반통관·간이통관·특별통관으로 구분되며 1,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일반 수입신고서를 해야 한다. 일반 수입신고서는 수입자 또는 위임받은 관세사가 작성할 수 있으며, 수입자·물품명세·운송방법·품목분류·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동 신고서는 호주의 통합화물관리시스템인 ICS(Integrated Cargo System)에 제출되거나 국경수비대 카운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해상이나 항공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N10 양식을,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인 N10(POST) 양식을 사용한다.

한편 1,000호주달러 이하의 수입물품은 간이신고(Self Assessed Clearance: SAC)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동 제도는 관세법 제71AAAF조 내지 제71AAAI조 및 제71AAAAO조 내지 제71AAAT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품이 해상이나 항공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우편으로 수입되거나 카르네(Carnet)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간이신고서는 화물신고인, 관세사나 ICS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⁴⁰⁾을 통해 ICS에 제출해야 한다.

간이통관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화물신고(Cargo report SAC Declaration), 약식신고(Short format SAC Declaration) 그리고 정식신고(Long format SAC Declaration)로 구분된다. 먼저 화물신고는 화물신고인(Cargo Reporter)⁴¹⁾이 물품의 명세, 특히 수입 제한

40) 수입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ICS에 접근권한을 신청할 수 있다.

및 허가, 검역, 술·담배 해당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거나 물품명세에 SAC 유의어 사전(SAC Thesaurus)⁴²⁾ 속 단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약식신고나 정식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정식신고는 관세 감면이나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입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 이용하면 더 신속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항공으로 수입되는 대량의 소액물품은 특별통관제도인 약식 화물신고(Abbreviated cargo report), 이른바 HVLV(High Volume Low Value)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약식 화물신고는 관세법 제63A조에 따르면 특정한 종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 특별신고인(Special reporter)이 법적 요건에 따라 작성한 전자 화물신고를 말한다. 여기서 특정한 종류의 소액물품은 특정 통신판매업체(Mail-order House)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이나 위탁품 각각의 가치가 1,000호주달러 미만으로서 관세법 제68조의 일반 통관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화물을 말한다. 또한 특별신고인은 매달 최소 1,000건 이상의 화물신고를 할 수 있을 만큼 대량의 화물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Austrian Custom Notice, 2007). 이러한 약식 화물신고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공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며 물품 명세에는 “HVLV” 또는 “mail order” 표시가 요구된다.

5. 영국

(1) 개설

영국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국세관세청(Her Majesty Revenue and Customs; HMRC)에서 통관을 관할하고 있으며 소액물품 면세와 통관 간소화 제도는 관세법(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⁴³⁾), 관세감면 규정(The Customs (Reliefs from a Liability to Import Duty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EU Exit) Regulations 2020⁴⁴⁾)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41)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송인(용선자 포함)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호주 관세법 제64AAC조(Report to Department of persons engaged to unload cargo)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자를 말함.

42) 화물신고인이 물품 명세와 대조해야 하는 단어나 설명을 표시하는 목록이며 이 목록에는 Drug, Tobacco, Alcohol과 같이 수입금지/제한 품목, 담배, 주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ABF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2021.06.30. 개정.

영국의 소액물품 면세규정은 일반 수입물품과 선물용 수입물품인 경우를 구분하여 면세 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수입물품은 물품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기준으로 135파운드 이하인 경우에 소액면세가 적용된다. 물품의 내재가치는 상업용 물품의 경우에는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 물품의 가격을 의미하며 운송비와 보험료(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서에 별도로 표시된 경우) 그리고 기타 세금 및 부과금(관련 서류를 통해 세관 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은 제외한다. 한편 비상업용 물품의 내재가치는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 물품에 대하여 지급되었을 가격을 의미한다.

(2) 소액물품 면세기준

영국 관세법 제19조에서는 감면(Reliefs)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르면 재무부는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고 그러한 근거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가령 물품의 성격이나 원산지, 관세율을 결정짓는 요소, 물품을 수입하는 목적,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 그리고 물품이 수입되는 상황을 참조하여 규정된다. 한편 소액물품 면세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관세감면 규정의 참조 서류인 「United Kingdom Customs Tariff: Reliefs from Import Duty⁴⁵⁾」 Section 5에서 영국으로 수입된 가치가 미미한 물품(goods of negligible value)에 대해서 관세가 전부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① 탁송품(consignment)이 영국에 소재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② 탁송품이 영국 외 국가에서 영국에 있는 한 명 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되어야 하고 ③ 물품의 내재가치가 135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선물용으로 수입하는 39파운드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물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품이 (i) 세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ii) 영국 외부의 개인이 영국에 있는 개인이나 사람들에게 발송해야 하고, (iii) 영국 내 어떤 사람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iv) 생일, 크리스마스나 기념일처럼 가끔씩만 제공되어야 한다.

44) 2020.12.31. 개정.

45) UK Reliefs Document, Version 1.7, 31 January 2024.

39파운드 이하의 선물용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되나 일반 소액물품은 관세만 면제된다. 15파운드 이하의 일반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2020년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2021년 1월부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표 1〉 영국의 소액물품 면세기준

구분	물품 가치	면제 세금
일반 수입물품	135파운드 이하	관세 면제, VAT 부과
	135파운드 초과	관세 부과, VAT 부과
선물용	39파운드 이하	관세, VAT 면제
	39파운드 초과 135파운드 이하	관세 면제, VAT 부과
	135파운드 초과	관세 부과, VAT 부과

자료: 정재호 외,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재작성

한편 술이나 담배가 선물용으로 수입되고 각 물품의 내재가치가 39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량제한이 있다. 술은 1리터(스틸 와인은 2리터), 담배는 껌련형인 경우 50개비 등의 수량 한도 내에서 면세되며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된다. 별도로 술과 담배는 선물용인 경우에도 소비세(excise duty)를 납부해야 한다. 향수와 화장수도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중량 500밀리그램(화장수의 경우 0.25리터) 한도 내에서 면세되며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관세청, 2020).

〈표 2〉 영국의 별도면세범위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증류주(알코올의 용량이 22%를 초과하는 것,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80% 이상인 것)	1리터	
	증류주, 식전주(와인이나 알코올을 베이스로 한 것), 태피아(tafia), 청주(saké)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알코올의 용량이 22% 이하인 것), 스파클링 와인, 강화 와인(fortified wine)	1리터	
	스틸 와인(still wine)	2리터	
담배	껌련(cigaret)	50개비	
	시가릴로(cigarillo)	25개비	시가의 최대 무게는 각각 3그램으로 한정함
	시가(cigar)	10개비	
	흡연용 담배(smoking tobacco)	50그램	
향수	향수(perfume)	50그램	
	화장수(toilet water)	0.25리터	

(3) 통관 간소화 제도

영국의 통관제도는 물품의 종류 및 운송방법에 따라 정식통관·약식통관·우편통관·특별통관으로 구분된다. 정식통관(Standard customs declaration)은 영국 외 국가에서 영국으로 물품이 수입된 때 C1600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고 주로 전자적으로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C88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한다. C88 양식은 도착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 허가(authorisation)의 증거로 사용된다. 해당 양식에는 송하인/수하인 정보, 물품 명세, 상품코드, 선적지/도착지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약식통관(Simplified Customs Declarations)는 관세법⁴⁶⁾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약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관세청(HMR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관세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세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했어야 한다. 또한 허가신청일로부터 4년 동안 신고 사항을 기록하고 요청 시 세관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는 C&E48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해당 양식에는 신청인 정보,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인증 여부, 관세 납부유예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우편통관은 물품이 Royal Mail 또는 Parcelforce Worldwide를 통해서 영국으로 수입된 경우에 적용되며 우편물에는 발송인이 작성한 세관신고서(CN22 또는 CN23)가 부착되어야 한다. 세관신고서 양식은 물품 가격에 따라 구분되며 물품 가격이 27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CN22 양식을, 27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N23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두 가지 양식은 공통적으로 발송인 정보, 물품 명세, 수량, 무게, 가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CN23 양식은 추가적으로 수취인 정보와 (상업용 물품인 경우) HS코드와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통관은 BIRDS(Bulk Import Reduced Data Set)라고 불리며 대량의 소액물품을 한 번에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기존의 LVBI(Low Value Bulking of Imports) 통관을 대신하여 만들어졌으며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은 LVBI는 운송서류(House Air Waybill) 1개당 최대 99개의 품목만 일괄하여 통관할 수 있었으나 BIRDS는 한번에 통관할 수 있는 품목 수의 제한이 없다. 또한 BIRDS는 다음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① 각 우편물(postal packet)은 영국 외 국가에서 영국에 있는 수취인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② 수입 시 각 우편물은 수취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세 감면 물품을

46)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2021.06.30. 개정.

포함해야 한다. 또한 ③ 우편물은 국세관세청 공지에 명시된 방식으로 수입되고 ④ 각 우편물의 가치가 135파운드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⑤ 각 우편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아닌 영국 공급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다만 물품이 ① 소비세 부과 대상, ② 금지 또는 제한 물품, ③ 만국우편조약(Universal Postal Convention)에 따라 발송된 물품, ④ BIRDS 통관이 이루어질 때 공동 및 연합 운송 절차에 따라 운송이 해제된 경우, ⑤ 가치가 135 파운드를 초과하는 물품, ⑥ 면허가 필요한 물품은 BIRDS를 이용할 수 없다.

6. EU

(1) 개설

EU는 관세 및 통관과 관련하여 전속 권한을 가지나 실제 통관은 각 회원국별로 별도의 관세행정기관을 두어 각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EU 집행위원회는 관세 및 통관절차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EU 전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통관절차를 시행하고자 2023년 5월에 EU 관세당국(EU Customs Authority)의 신설과 EU 공동 데이터 허브(EU Customs Data Hub)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관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2025년까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액물품 면세와 통관 간소화 제도는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⁴⁷⁾, 그 위임규정(UCC-DA)⁴⁸⁾과 관세감면규정(Duty Relief Regulation; DRR)⁴⁹⁾에 규정되어 있다. EU의 소액물품 면세기준은 일반 물품과 선물용 물품인 경우로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물품은 내재가치(intrinsic value)가 150유로 이하인 경우에 관세를 면제한다. EU는 2021년도 6월까지의 22유로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했으나 같은 해 7월부터는 동 면세한도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또한

47)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October 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48)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5/2446 of 28 July 2015 supplementing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detailed rules concerning certain provisions of the Union Customs Code.

49)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of 16 November 2009 setting up a Community system of reliefs from customs duty(codified version).

같은 날부터 150유로 이하의 B2C 물품의 통관과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간소화하기 위한 신규 플랫폼인 수입원스톱샵(Import One Stop Shop; IOSS)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이미영, 2021).

(2) 소액물품 면세기준

관세감면규정 제23조에서는 가치가 미미한 물품(goods of negligible value)으로서 물품의 내재가치가 150유로 이하인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내재가치의 정의는 UCC 위임규정 제1조 제4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재가치는 물품을 EU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하며 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다.

한편 선물 등 개인 간에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그 가치가 45유로 이하인 물품은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는 경우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⁵⁰⁾ 가끔 발생하는 경우, 물품의 성격이나 수량으로 보아 수취인이나 그 가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무료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상업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본다.⁵¹⁾

EU는 전자상거래 확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액 수입물품이 급증하면서 2021년 7월부터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VAT De Minimis)를 폐지하고 22유로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다만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45유로 이하의 소액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유지된다(European Commission, 2022). 따라서 일반 소액물품은 관세에 한정하여 면제되며 선물용 소액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된다.

한편 위 소액물품 면세기준은 술, 담배, 향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 제품의 면세기준은 관세감면규정 제27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표 3〉 EU의 별도면세범위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증류주(알코올의 용량이 22%를 초과하는 것),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80% 이상인 것)	1리터
	증류주, 식전주(와인이나 알코올을 베이스로 한 것), 태피아(tafia), 청주(saké)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알코올의 용량이 22% 이하인 것), 스파클링 와인, 리큐르(liqueur) 와인	1리터
	스틸 와인(still wine)	2리터

50) 관세 감면 규정, 제26조.

51) 위의 규정, 제25조 2항.

구분	면세한도		비고
담배	궐련(cigaret)	50개비	시가의 최대 무게는 각각 3그램으로 한정함
	시가릴로(cigarillo)	25개비	
	시가(cigar)	10개비	
	흡연용 담배(smoking tobacco)	50그램	
향수	향수(perfume)	50그램	
	화장수(toilet water)	0.25리터	

(3) 통관 간소화 제도

통관 간소화와 관련된 EU의 통관제도는 제출되는 증빙서류(Dataset)에 따라 SRDS통관·표준통관·간이통관·우편통관으로 구분된다. 먼저 SRDS(Super Reduced Dataset)통관은 UCC 위임규정 제143a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감면규정 제23조제1항(소액물품) 또는 제25조제1항(개인 간 거래)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는 경우, 수입금지 및 제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특정 데이터세트(UCC-DA 부속서 B의 H7)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H7 declaration). 특정 데이터세트는 이른바 ‘대폭 감소된 데이터세트(SRDS)’이며 관세 면제 대상인 경우, 즉 B2C, B2B 또는 C2C 거래에서 물품의 내재가치가 150유로 이하인 경우 또는 C2C 거래에서 물품의 내재가치가 45유로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SRDS는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가 폐지되면서 가중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표준신고서의 3분의 1 수준의 데이터를 요구한다.

한편 표준통관(Standard customs declaration)도 소액물품의 수입통관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가령 소비세(excise)가 부과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및 제한 물품 등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된다(H1 declaration). H1 데이터세트는 H7보다 데이터를 3배 더 많이 요구한다.⁵²⁾ 신관세법 제166조에 따르면 표준신고서에는 통관 절차상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full dataset)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이통관(Simplified declaration)는 신관세법 제1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62조의 표준신고서의 특정 항목이나 제163조의 증빙서류를 생략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I1 declaration). 간이신고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관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2) European Commissi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LOW VALUE CONSIGNMENTS-VAT E-COMMERCE PACKAGE, Guidance for Member States and Trade”, 2022.09.15., p.32.

우편통관은 UCC-DA 제144조에 따라 물품의 가치가 1,000유로 이하이고 수입금지 및 제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우편사업 운영자가 축소된 데이터세트(reduced data set; H6)를 제출함으로써 신고할 수 있다(H6 declaration). H6은 EU의 수입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물품에 CN22 또는 CN23 신고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표 4〉 EU 소액물품의 통관제도

종류	데이터세트	적용 대상	근거 규정
SRDS통관	H7 (Super Reduced Dataset)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 - 150유로 이하의 물품 - 45유로 이하의 C2C 거래 물품	UCC-DA 제143a조
표준통관	H1 (Full Dataset)	모든 물품	UCC 제162조
간이통관	I1	모든 물품	UCC 제166조
우편물통관	H6	1,000유로 이하의 물품	UCC-DA 제144조

출처: European Commissi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LOW VALUE CONSIGNMENTS-VAT E-COMMERCE PACKAGE, Guidance for Member States and Trade", 2022.09.15., p.69.

7. 소결

상술한 내용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주요국에서는 소액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여 부가가치세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세원칙은 반입경로가 해상이나 육상, 항공 중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또한 그 형태가 일반화물이거나 특송화물, 혹은 우편물인지를 불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존 200달러를 기준으로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해오던 것을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내국소비세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한 데 대한 세액 손실의 우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호주의 경우 2018년경, 1,000호주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한 바 있으며, 이에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 있어서도 10%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되었다(중소기업신문, 2021).

영국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15파운드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던 정책을 폐지하여 모든 판매자는 주기적으로 영국 국세관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2021년 7월부터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개정법」을 시행하며, 기존 22유로 이하의 소액 역외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특히 배송비를 포함해 150유로 이하의 상품은 IOSS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정 개정 추세를 살펴볼 때, 각국 규정 개정에 따른 현지 세무 리스크 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입법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 국내 관련 법령 또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표 5〉 주요국 소액면세 및 통관 간소화 제도 비교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영국	EU
관세당국	관세국경보호총(CBP)	해관총서(海關總署)	관세국	이민국경보총부(DIBP) 및 국경수비대(ABF)	국세관세청(HMRC)	각 회원국별 상이
면세기준	USD 800 이하	주문당 RMB 5,000/ 1인당 연 RMB 26,000 제한	JPY 10,000 이하	AUD 1,000 이하	GBP 135 이하 (선물용: GBP 39 이하)	EUR 150 이하 (선물용: EUR 45 이하)
수입세 부과	부가세 없음	세금 부과	부가세, 소비세 면세	관세 면제, 부가치세 부과	관세 면제, 부가치세 부과 (단, 선물용인 경우에는 부가치세 면제)	관세 면제, 부가치세 부과 (단, 선물용인 경우에는 부가치세 면제)
배제대상	담배, 주류, 향수	인가품목(포지티브)리스트	담배, 주류, 향수, 미국	담배, 주류	담배, 주류, 향수	담배, 주류, 향수
근거법령	「관세법」 및 「연방규칙」	해외직구 리스트	「관세정률법」 제14조 무조건적 면세 및 「관세정률법 시행령」	관세율법 별표 4	관세감면규정 참조서류	EC No 1186/2009
간이통관	USD 800 초과 USD 2500 이하	-	JPY 200,000 이하	AUD 1,000 이하	-	-
목록통관	USD 800 이하	-	JPY 10,000 이하	AUD 1,000 미만	GBP 135 이하	EUR 150 이하 (C2C 거래: EUR 45 이하)
우편통관	-	총 세액 RMB 50 이하 (주문 당 RMB 1,000 제한)	JPY 200,000 이하	-	GBP 270 이하(CN22) GBP 270 초과(CN23)	EUR 1,000 이하
근거법령	「관세법」 및 「연방규칙」	해외직구 리스트	「관세법」, 「통관업법」, 「NACCS법」	관세법	관세법 별표 1	UCC, UCC-DA
소액면세 통관 간소화 제도 적용대상						

IV. 개선방안

1. 소액면세 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마련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이래로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의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해 오고 있으며, 이는 조세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의 과다 및 납세자 편의의 측면을 고려한 부분으로 이해된다(정다운 외 2인, 2020).

앞서 해외 주요국 비교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액면세제도와 관련한 해외 주요국들의 관련 제도 기준은 각 국가마다 큰 상이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에 이르렀고,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가 소비용 수입물품의 재판에 따른 탈세 행위 등이 발생함에 따라 그 규모가 당초 입법 당시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호주,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입법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 국내 관련 법령 또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2. 통관간소화제도 관련 규정 재정비

국내 통관간소화제도의 경우 신고특례제도로 특송물품의 경우 간이통관 및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편물 통관의 경우 간이신고 및 현장면세제도의 운영을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수입신고의 경우 「관세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납부와 동법 제241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 수입신고를 통합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직구의 경우 그 절차에 있어 일반적인 국제거래 절차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고,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프로세스에 맞는 적절한 신고 프로세스 마련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소액 면세물품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간이신고 절차 신설로 전자적 형태의 신고내역 확보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우범화물 선별검사 등 위험관리의 측면에서도 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요건확인 물품에 대한 간소화된 통관절차 적용을 통해 신고자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측면도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의 경우에도 지난 2019년부터 국가 간 전자상거래 관련한 「전자상무법(电子商务法)」을 시행해 전자상거래 특징에 부합되는 관리제도를 구축했으며, 세부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맞는 관세 징수, 수출입검역 등 종합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되는바, 이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관세행정 당국이 주목할만한 점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 관세법 및 통관제도 또한 적절한 절차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한편, 미국 수출입 통관체계에서는 미국 관세법(United States Code Title 19 Customs Duties Chapter 4), 그리고 그 하위규정 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9 Customs Duties)에서 대부분의 간소화된 통관절차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 또한 「관세법」 이하 각 수입 형태별 관련 고시에 따라 그 기준이 산재되어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 관세법 체계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과 다수의 고시에 따라 그 기준이 산재되어 제시되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혼란이 제기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한 규정 또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이래로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의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해 오고 있는데,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가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면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통관 행정 측면에서 물량 과부하가 유발되고 이에 따라 통관, 리스크 관리, 세금징수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통관 간소화제도와 관련한 내용도 함께 고찰해 보았다.

해외 주요국 소액물품면세제도의 경우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소액의 수입물품에 해당할 지라도 기준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은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통관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생산 재화와 동일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과세상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GATT의 소비지국 과세원칙⁵³⁾에 부합되는 법률 구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관련 제도 또한 이러한 취지를 국내법화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면세대상 소액물품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일지라도 해당 물품의 관세 면세는 인정하되 부가가치세는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관간소화제도와 관련해서도 전자상거래 확대와 함께 각국에서는 해외직구 등 해당 무역거래의 특성에 맞는 관련 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관세행정 당국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완성도 높은 정책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3) 「부가가치세법 조문별 해설」

참고문헌

- 강성훈, 이재선, 노영예, 김미정. (2016). 주요국의 통관제도-일본Ⅱ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강성훈, 김다량, 노영예, 양지영. (2016).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비교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연호. (2019).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변경(321 entry) 관련 동향. 주미대사관.
- 관세청. (2019). 주요 관세당국 전자상거래. 연구용역.
-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2020).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영국편).
- 김종성. (2008). 일본의 통관제도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11(4), 5-25.
- 김종덕, 김울성. (2019). 해외직구물품 급증에 따른 통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31(1), 181-206.
- 류승범. (2017). 통관제도 효율성 제고에 따른 통관 활성화 방안 연구 : -주요국 통관제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영. (2021). 독일, 강화되는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제도. KOTRA.
- 이상엽, 김미영, 김수영. (2014). 주요국의 통관제도-일본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다운, 이형민, 이성현. (2020).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해외사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재호, 김수영, 김미영. (2012).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2018). 중국, 전자상거래 법률인 전자상무법 제정. *글로벌 물류기술 주간동향*, 제591호.
- Australian Customs Notice. (2007). Cargo reporting procedure for high volume low value consignments. 2007/10.
- UK Reliefs Document. (2024). Version 1.7.
- WTO. (2021). Trade Policy Review: China.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https://www.cbp.gov/trade/trade-enforcement/tfea/section-321-programs/entry-type-86-frequently-asked-questions>
- 중소기업신문.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17>.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euTradeNewsDetail.do?no=1833494>.
- ABF. CURRENT TARIFF CLASSIFICATION – Schedule 4.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current-tariff/schedule-4-by-law>.
- ABF. Definition of cargo reporter.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cargo-reporting-and-transhipped-goods/cargo-reports>.
- ABF. HOW TO IMPORT-Declarations for imported goods.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importing/how-to-import/import-declaration>.
- ABF. <https://www.abf.gov.au/>.
- Australian Government(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au/>.

-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Customs formalities for low value consignments".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procedures-import-and-export-0/customs-procedures/customs-formalities-low-value-consignments_en.
- European Commission. https://commission.europa.eu/index_en.
- EUR-Lex. <https://eur-lex.europa.eu/homepage.html>.
- Global Compliance News. "European Union: Creation of an EU Customs Agency and an EU Customs Data Hub?". https://www.globalcompliancenews.com/2023/05/18/https-www-internationaltradecomplianceupdate-com-2023-05-15-creation-of-an-eu-customs-agency-and-an-eu-customs-data-hub-_05152023/.
- GOV.UK. "Apply to use simplified declarations for imports". <https://www.gov.uk/guidance/using-simplified-declarations-for-imports>.
- GOV.UK. "Apply to import multiple low value parcels on one declaration". <https://www.gov.uk/guidance/apply-to-import-multiple-low-value-parcels-on-one-declaration>.
- GOV.UK. "Changes to VAT treatment of overseas goods sold to customers from 1 January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nges-to-vat-treatment-of-overseas-goods-sold-to-customers-from-1-january-2021/changes-to-vat-treatment-of-overseas-goods-sold-to-customers-from-1-january-2021>.
- GOV.UK. <https://www.gov.uk/>.
- GOV.UK. "Import VAT and Customs Duty on gifts". <https://www.gov.uk/guidance/import-vat-and-customs-duty-on-gifts>.
- GOV.UK.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C88 (statu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mport-and-export-single-administrative-document-c88-status>.
- Hemisphere. "LVBI Authorisation - What Has Changed?". <https://www.hemisphere-freight.com/lvbi-accreditation/>.
-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
- Royal Mail. <https://www.royalmail.com/business>.
- Your Europe. https://europa.eu/youreurope/index_en.h

ABSTRACT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Duty Exemption and Customs Procedures Simplification for the Consignments below De Minimis Thresholds

Hyo-Eun Jang·Myeong-Hee Son

Generally, value-added tax and customs duties are levied on goods imported into a country. However, there is concern that the imposition of customs duties on low-value goods or goods imported in small quantities can cause an excessive administrative burden. Therefore, the Customs Law of Korea provides for customs duty exemption for consignments below the de minimis threshold, and such an exemption can also be found in the customs regulations of various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customs duty exemption for consignments below the de minimis threshold stipulated in Korean law and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major countries that have adopted similar exemptions to understand the direction in which the Korean customs duty exemption should be developed. Of particular note regarding the countries studied is that, with respect to consignments below the respective de minimis thresholds that are subject to customs duty exemption, value-added tax is levied at the time of sale if the total value of the amount imported is less than a prescribed level, while it is levied at the customs clearance like other imported goods if the total value exceeds a prescribed level. This trend in legislation can be considered to be in alignment with the destination principle⁵⁴⁾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the purpose of which is to maintain tax equity between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and protect the domestic industries of importing countries by enabling importing countries to impose on imported goods the same burden levied on like domestic products. Therefore,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major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said system, the relevant regulations in Korea should be amended so that value-added tax can still be levied on consignments below the de minimis threshold that are subject to customs duty exemption.

| **Keywords** Duty Exemption De Minimis Thresholds, Simplification of Customs Procedures, On-line Overseas Shopping, List Clearance, Customs Clearance System

54) Commentary on the Value-Added Tax Act.

「관세무역연구」 투고 안내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논문투고 방법

□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 투고 자격

관세·무역 분야의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제출 자료

① 논문 원고 ② 논문투고 신청서 ③ 연구 윤리 확인서

□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 일반 사항

- 국내의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게재가 예정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논문투고요령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논문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원고 분량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원고의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어로 된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논문작성 방법

□ 논문 구성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목차, 국문 초록, 주제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순으로 작성

□ 편집 규격

「관세무역연구」 논문 편집 샘플 활용

□ 인용·각주·표와 그림·참고문헌 작성 요령

-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본문의 괄호 속에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쉼표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성(Last name)과 연도를 표기한다.
- 저자가 2인인 경우 항상 모든 저자를 표기한다.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인용할 때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1저자 다음에 OOO 외, OOO et al. 로 표기한다. 단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항상 1저자만 표기한다.
- 각주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설명이나 법령, 판례 등의 표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주 번호는 1), 2), 3)를 사용한다.
-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쪽에 넣고, <표 1>, <그림 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 참고문헌은 표기 언어를 기준으로 국문, 외국어 순서로 배치하되, 1저자명을 기준으로 국문은 가나다순, 외국어는 알파벳 순서대로 작성한다.

항목	예시
본문 내 인용	기술의 발전이 국제무역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김민구, 2023). 수입금지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Kim, 2007).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민하, 김소영, 2009).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이근호 외, 2017). 합리적 가격결정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Stewart et al., 2007).
각주의 표기	1) 관세법 제226조 제1항 참조 2) 대법원 2017. 4. 7. 2015두49320 판결
표와 그림	<표 1> 관세감면제도 유형 <그림 1> 특송물품 수입 개관
참고문헌	단행본 김준호. (2005). 「관세무역제도」. 무역 출판. Jason M. C. (2002). Customs Procedures. Trade Publishing.
	저널논문 박민우. (2007). FTA 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i>관세무역연구</i> , 15(1), 12-13. Murphy C. W. (2003).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Incoterms 2010. <i>Trade Research Society</i> , 11(3), 24-25.
	학위논문 이진아. (2003). 수입물품 가격신고제도 분석. 관세무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문, 잡지 등 KITA. (2020. 12). 2020년 수출입 평가 및 2021년 전망. <i>Trade Focus</i> , 71-73.
	인터넷 자료 연합뉴스. (2024.2.12.).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26일 정식 개장...국내 4번째". Available at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8103700055?input=1195m)

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1호·통권 제1호(2024년 3월)

Korea Customs Review

Vol. 1, No. 1 March 2024

발행처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이소영
발행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7층(마곡동)
등록번호 강서 바00055
전화 02 3416 5168
팩스 02 3416 5025
홈페이지 www.kctdi.or.kr
ISSN 3022-7569
인쇄처 경성문화사
인쇄일 2024년 3월 30일
발행일 2024년 3월 31일

※ 본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Korea Customs Review

Vol. 1 No. 1 March 2024

ARTICLES

A Study on the Disposition of Anti-Dumping Tariffs Regulations

Chen-Sik Choi

A Study on Improvement of Clearance System for Digital Trad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Nak-Hyun Han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Domestic Law that Accepts International Law

Sang-Pil Han

A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Online Overseas Direct Purchase

Sang-Man Kim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Duty Exemption and Customs Procedures Simplification
for the Consignments below De Minimis Thresholds

Hyo-Eun Jang · Myeong-Hee Son